

연구보고 97-9

慣行·慣習法 調査·研究(6)

漁村社會의 法律關係

- 東海南部·西海南部 所有慣習을 中心으로 -

1997. 12.

研究者 : 全在慶(首席研究員)
李鍾吉(招請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發 刊 辭

바다는 地球村 생산자원의 마지막 보고입니다. 漁村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어촌은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습니다. 어촌이 海洋水産 발전의 전진기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어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촌의 복원에는 정책적·법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종래 法民俗學的 基礎調査 없는 제도정비는 정책의 실패를 재촉하였을 뿐입니다.

어촌 사회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관습이 존재합니다. 어촌 사회의 법률관계는 慣習法關係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慣習調査는 어촌의 다양한 法俗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실정법과의 조화를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관습조사는 단순히 사라져가는 민족의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관습조사는 과거 오랫동안 어촌 공동체를 움직여 왔고 현재에도 그러한 '살아 있는 법질서'를 발견하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한국은 언필칭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海洋國家이면서도 그 바다의 생산관계와 어촌의 독특한 규범체계에 주목하지 못하여 葛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법정책을 그르치는 관습의 일실과 왜곡이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어촌사회는 더욱 분열됩니다.

본원에서는 1990년 개원 이후 慣行과 慣習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예비조사와 문헌연구 및 도시지역 연구 등에 힘입어 原始와 現代가 공존하는 어촌사회의 법속을 탐색하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원에서는 앞으로 歷史民俗學界의 협력을 받아 慣習法 및 法意識 조사와 같은 기초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현지조사를 지도하여 주신 鄉土史學者 여러분과 면담주선과 자료조사에 협력해 주신 斯界의 人士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면담에 응해주신 現地住民 여러분들의 환대와 성원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당장의 성과를 재촉하지 않고 基礎法學을 장려
해 주신 학계와 당국의 성원은 바로 한국 法文化 發展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韓國法制研究院長
法學博士 朴松圭

調查參加者 名單

調 查 團

- 전 재 경 (韓國法制研究院 社會文化法制研究室長)
- 이 중 길 (韓國法制研究院 招請研究員)
- 이 중 영 (韓國法制研究院 先任研究員)
- 송 영 선 (韓國法制研究院 研究員)
- 최 들 속 (韓國法制研究院 研究助員)

調 查 協 力

- 이 상 준 (大邱地方檢察廳 慶州支廳)
- 이 완 (삼포 水産業協同組合)
- 김 성 욱 (포항 水産業協同組合 仲買人)
- 임 성 수 (포항 水産業協同組合 監事)
- 김 중 윤 (포항 協業水産 代表)
- 박 영 도 (韓國法制研究院 行政法制室長)
- 박 태 수 (浦項 대동배漁村契)
- 고 운 학 (대보 廢棄物埋立場對策委員長)
- 이 성 환 (浦項 廢棄物埋立場對策副委員長)
- 윤 중 근 (浦項 水産業協同組合 常務)
- 이 시 우 (경주 大韓印刷株式會社 常務)
- 이 근 식 (慶州專門大學 講師·國史學)
- 박 주 복 (蔚山鄉校 典教)
- 김 동 윤 (黑山島 水産業協同組合 代議員)
- 김 완 식 (黑山島 多物島里 里長)
- 진 위 향 (社團法人 한살림 副會長)
- 강 동 희 (果民研 運營委員)
- 안 은 숙 (生命會議 有司)

提 報 者

- 서 영 만 (포 항 구만리)
- 서 용 전 (포 항 구만리)

윤 태 용 (포 항 구만리)
김 해 용 (포 항 대동배)
서 원 수 (포 항 대보리)
정 성 태 (포 항 삼정리)
권 혁 기 (포 항 삼정리)
김 용 방 (포 항 하정리)
이 옥 자 (구룡포 장길리)
부 제 화 (구룡포 장길리)
정 순 남 (구룡포 장길리)
정 옥 선 (구룡포 장길리)
이 상 호 (감 포 전촌리)
박 봉 수 (울 주 구유리)
박 빙 옥 (흑산도 다물도)
박 기 성 (흑산도 다물도)
김 정 혁 (흑산도 다물도)
김 종 기 (흑산도 다물도)
김 명 인 (흑산도 다물도)
문 상 금 (흑산도 다물도)
안 육 림 (흑산도 다물도)
박 남 순 (흑산도 다물도)
김 정 옥 (흑산도 수 리)
김 충 일 (흑산도 수 리)

翻譯

최 연 숙 (韓國法制研究院 先任研究員)

校閱 · 編輯 · 컴퓨터그래픽

조 경 숙 (韓國法制研究院 出版課長)

장 민 기 (韓國法制研究院 編修員)

이 권 열 (韓國法制研究院 編修員)

사 진

전 재 경 (韓國法制研究院 社會文化法制研究室長)

目次

調査方法論	11
-------------	----

第1章 漁村社會

1. 定義	15
2. 特性	17
(1) 불안정성 · 자연의존성	18
(2) 離村性	20
(3) 疎外意識	20
(4) 構造的 矛盾	21
(5) 信賴關係의 解體	22
(6) 漁村政策의 漂流	24
(7) 漁村社會의 危機	25

第2章 調査概要

1. 地域選定 背景	27
(1) 東海南部 : 영일만 · 감포 · 울주	27
(2) 西海南部 : 黑山島	28
2. 調査方法	28
(1) 事前調査	28
(2) 調査範圍	29
(3) 資料蒐集	29

第3章 미역밭의 法律關係

1. 미역 · 미역밭	31
2. 所有關係의 變遷	31
(1) 權利關係의 設定	31
(2) 茶山의 지역별 藪田支配 형태	32
(3) 慣行의 形成	36
(4) 紛爭의 發生	37

3. 宗中藪田	38
(1) 沿革	38
(2) 權利的 逸失	38
(3) 大統領의 認證	39
(4) 採巖碑에 의한 公示와 生産·管理契約	39
4. 現行法制的 變遷과 構造	40
(1) 入漁慣行의 確認	40
(2) 漁村契의 越權과 入漁慣行의 動搖	40
(3) 入漁慣行의 再確認	41
(4) 入漁慣行의 自律的 制限	42
(5) 入漁慣行의 廢止와 葛藤	42
5. 法律關係 分析	43
(1) 法の 逆機能	43
(2) 慣行의 尊重	43
(3) 實定法の 限界	44
(4) 社會經濟的 土臺의 變化	44
(5) 紛爭樣相의 變化	45
(6) 共同所有關係	45
(7) 慣習法上的 物權	46

第4章 미역밭 紛爭實態

1. 藪田主의 所有權 主張	47
(1) 所有過程	47
(2) 所有의 內容	48
2. 1963년의 水産業法 개정과 藪田紛爭	48
(1) 葛藤의 激化	48
(2) 管理者들의 收奪	49
(3) 藪田主들의 組織的 反撥	49
(4) 司法的 對應	50
(5) 葛藤의 內面化	50
3. 慣行權의 認諾	51

(1) 認諾調書	51
(2) 未完의 紛爭解決	51
4. 藪田의 관리작업과 분쟁이후의 지배유형	52
(1) 藪田의 관리작업	52
(2) 藪田紛爭 이후의 支配類型	53

第5章 結論

1. 假說의 檢證	57
(1) 水産業法의 人間像	57
(2) 公示慣行	57
(3) 物權法定主義의 例外	57
(4) 所有權의 實體와 限界	58
(5) 살아 있는 法	58
2. 關聯問題	59
(1) 調査所感	59
(2) 調査上의 隘路	59
(3) 調査의 限界	59
(4) 被害意識	59
(5) 所有觀念의 後退	60
(6) 法執行機關의 限界	60
(7) 水産業法·漁船法의 改善點	60

調査資料

1. 東海 南部 : 浦項·慶州	61
(1) 구만리 : 서영만	62
(2) 구만리 : 윤태용	73
(3) 구만리 : 서용전	76
(4) 삼정리 : 정성태	85
(5) 삼정리 : 권혁기	86
(6) 하정리 : 김용방	89
(7) 浦項水協 : 윤중근	93
(8) 장길리 : 부제화	95

(9) 장길리 : 정순남	98
(10) 장길리 : 이옥자	99
(11) 장길리 : 정옥선	102
(12) 대보리 : 서원수	105
(13) 대동배 : 박태수·김해용	108
(14) 浦項水協 : 放談	111
(15) 감 포 : 이 완	112
(16) 감 포 : 이상호	114
(17) 慶 州 : 이근식	119
2. 東海 南部 : 蔚山·蔚州	121
(1) 蔚山鄉校 : 박주복	121
(2) 蔚州강동 : 박봉수	133
3. 西海南部 : 新安 黑山島(豫備調査)	135
(1) 黑山水協 : 放 談	135
(2) 黑山水協 : 김동운	140
(3) 黑山水協 : 박기성	146
(4) 多物島 漁村契 : 김정혁	147
(5) 多物島里 : 金鐘起	149
(6) 水 里 : 김충일	167
(7) 多物島里 : 김완식	172
(8) 多物島里 : 박빙옥	177
(9) 多物島里 : 문상금	180
(10) 多物島里 : 金明仁	185
(11) 多物島里 : 박남순	188
(12) 多物島里 : 안육림	193
4. 참조판례	19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인락조서	19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약식명령	200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1	20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2	204
5. 어장관리규약	206

調査方法論

1. 조사·연구의 목적

한국 사회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어촌의 법문화·법률관계 조사
전통규범의 체계적 조사·정리
농촌 및 도시와 다른 관행·관습의 조사
현행 어촌·어업 관련 법제에 대한 사회경제적·역사적 이해의 증진

2. 조사·연구의 내용

어촌 사회의 법문화·법감정
현행 어촌·어업 관련 법제의 실효성
어촌의 자치규범〔洞法〕
어장·해산물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
사라져 가는 관습
생성중인 관행
실정법제 개선의견

3. 추진방법

- 1) 선행연구〔慣習法 豫備調査研究 I : 1991(本院)〕의 후속사업으로 추진
- 2) 어촌조사가 궤도에 오를 경우 조사범위를 농촌·산촌·도시 권역으로 확대
- 3) 法意識 조사와 병행
법의식 조사는 '국민'의식 조사에서 '개별'법률관계 의식조사로 전환
특정 조사권역에서 관습조사와 법의식 조사를 동시에 수행
분석 및 보고서 간행은 격년제
- 4) 대상지역 선정 : 다음의 후보지역중에서 1 권역을 선정
강원 : 삼척·속초권
경북 : 울진·영덕권
포항·울산·경주권 - 1997년 本調査지역
경남 : 거제(구조라)·총무권(산양면)

- 전남 : 완도(장좌리) · 해남 · 진도(조도)권
 흑산(대흑산도 · 소흑산도)권 - 1997년 豫備調査지역
- 전북 : 부안권(위도)
- 충청 : 태안권
- 경기 : 강화권(내가면/황청리)
- 제주 : 부속도서권(우도/마라도/가파도)
 본도권(제주내륙)
- 5) 문헌조사
- 6) 현지답사 · 제보자면담 등을 통한 실태조사
- 7) 행태관찰 및 규범분석
- 8) 제도개선 의견조사

4. 현지조사방법 : 조사지침 및 전수조사표 작성

- 1) 조사지침
- (1) 제보자선정
 - (2) 제안설명
 - (3) 질문방식
 - (4) 조사단위의 구분
 - (5) 실정법과 관습의 구분
 - (6) 시대구분
 - (7) 출처구분
 - (8) 기록원칙 : 조사자 직접기록
 - (9) 수집대상자료
 - (10) 지역개관 및 조사소감 기록
- 2) 전수조사
- (1) 사전조사항목
 - 조사지역 · 일자 · 기록자
 - 제보자 신상명세
 - 조사대상지역의 특성 및 현황개관
 - (2) 기초조사항목
 - 인지도

전거 및 해석

의존도

효 력

실효성의 원천

개 폐

변천사

제 언

(3) 일반조사항목

지역 또는 단체의 조직

제재 · 사법

섭외 · 교류

사회 · 경제 : 민사/가사/사회부조/공동노동/시장

문화 · 민속〔禁忌〕

(4) 관련지역 · 제보자명단

(5) 참고자료 · 관계문헌목록

(6) 조사소감

5. 조사연구기간 및 추진일정

1) 조사연구기간

1998년 2월~1998년 12월

2) 추진일정

2월~3월 기초조사(조사지역선정 · 조사방법수립)

4월~5월 예비조사(현지답사 · 문헌수집 · 제보자발굴)

6월~8월 본조사(관계자면담 · 인문지리연구 · 자료정리)

9월~10월 평가분석 · 보고서작성 · 중간연구심의회

11월~12월 최종연구심의회 · 수정보완

6. 기대효과

촌락공동체의 지배구조와 자치규범 정립

전통규범의 발굴과 그의 현재적 가치 모색

채권·물권 등 재산 법제의 연원 및 변천사 정리
어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어촌사회의 각종 분쟁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

7. 기존연구현황

전재경·정금식外 관습법조사연구 I : 예비조사편(한국법제연구원 : 1992)
김인걸, 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서울대박사논문 : 1991)
이원진, 탐라지[효종4년:1653년](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 1991)
島嶼文化 제7집 : 西南海 島嶼地方의 文化的性格(新安郡)(木浦大 도서관문화연구소 : 1990·4)
島嶼文化 제6집 : 黑山島 調查報告(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 1988·12)
新安郡郷土誌(在京新安郡資料編纂委員會 : 1990)
'黑山面 多物島里 소재 堂山 주변 환경과 堂집 정비계획'(신안군 : 1996)
1997년도 多物島(흑산면 : 1997)
이종길, 역사속의 진도, 「우리바다」(수협중앙회), 1996.8.
고광민, "바다밭, 그 뿌리를 찾아서(3) : 黑山 홍어가 살던 곳, 多物島"(月刊남시1997·3)
이종길, 조선후기 어촌사회의 소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법학박사논문, 1997.

第1章 漁村社會

일단의 사회집단내지 영역을 대상으로 법률관련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그 기본된 범주의 확정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본조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어촌사회는 기존촌락의 분류 즉, 입지조건과 주된 경제활동에 의한 농촌·산촌 등의 단위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定義

한국의 어촌은 바다를 접하여 형성된 자연촌락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삶을 영위하는 인구의 생산기반은 바다만이 아니고 농업·상업 기타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인하여 생활실체가 바다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형태가 아닌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촌사회를 일반적으로 半農·半漁라는 표현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어촌사회라고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지역에 있어 어업종사자는 30~40%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어업만이 유일한 생존수단이 될 듯한 도서지역에 있어서도 순어업종사자는 역시 14%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1994년 현재 한국(남한)의 어업가구는 약 11만4백여호이다. 그 중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는 24,200여가구이고 나머지 86,200여가구는 어업과 농·상업 등을 겸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어업가구중 78%정도는 겸업어가임을 알 수 있다.¹⁾ 전라남도의 도서지역의 통계에 의하면 어업이 평균 14%, 농업 36.5%, 농·어겸업 35%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전남도서지역의 어업종사가구는 50%정도가 되고 있다.²⁾

물론 '섬'이라고는 하지만 도시기능을 갖추기까지 하는 연륙도서와 일반도서(비연륙도서)간의 차이는 대단히 크게 나타난다. 전남지역의 도서는 물론이고 충청남도지역의 도서 또한 유사한 범주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도서로서 어촌을 상징하는 충청남도 외연도의 경우를 참조할 수도

1) 水産廳 30年史, 1996, 843쪽, 漁業家口 統計, 참조

2) 「全羅南道」編, 島嶼誌, 1995, 192쪽, 참조

있다. 외연도의 어촌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148가구에 548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중 전업어가가 90가구, 겸업어가가 30가구로 총 120여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 그 외에는 상점 10개소, 여관 5개소, 다방 3개소 등의 산업적 구성으로 보이고 있다.³⁾ 어촌사회의 어업종사 실태에 대한 보편과 특수성을 비교할 수 있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만큼 어촌사회에 대한 정의는 해안선을 접하여 형성된 사회로서 어업종사인구가 농촌이나 여타 사회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어촌사회의 각 촌락단위로 생산량을 비교해 볼 때 바다와 관련된 생산물의 양이 농·상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으로 인하여 그 사회전체가 경제적 측면에 있어 어업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회를 어촌사회로 정의할 수도 있게 된다.⁴⁾ 어촌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존의 정의를 몇 가지 정리하여 둔다. 어촌에 대한 정의는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된다.

①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다수를 이루면서 주된 생업수단을 어업에 의존하는 촌락으로 어촌을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민들의 생활기반이 바다가기 때문에 마을 형성을 대개가 바다에 면하게 된다. 아울러 전면을 바다와 면하는 만큼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것과 함께 후면에 존재하는 토지를 이용한 농업활동이 병행되는 사회를 어촌사회라 정의한다.⁵⁾

② 어촌계를 구성하는 어민들이 살고 있는 자연촌락 또는 최소 10가구 이상의 어민이 살고 있으면서 별도의 마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을 어촌사회라 정의한다.⁶⁾

③ 해양의 연안이나 도서에 위치하며 어업 및 그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촌락으로 설명한다.⁷⁾

④ 바다는 물론 내륙의 강·호수 등에서 어패류나 해조류 등의 수산동

3) 충청남도·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편, 도서지(上), 1997, 198~208쪽, 참조

4) 어업은 넓은 의미에서는 수산업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어로·양식·수산제조업을 통칭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어로·양식업을 지칭하거나 어로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5) 충청남도·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편, 도서지(上), 1997, 214면

6) 수협중앙회의 정의로서 공용식外, "어촌개발을 위한 사회·경제적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15권1호, 1984, 55면

7) 崔永俊外, 淺水灣地域의 漁業環境과 漁村, 省谷論叢 제27집2권, 1996, 965면

식물을 채취·포획·양식·가공 또는 제조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주로 수산업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촌락으로 설명한다.⁸⁾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 바대로, 이들 어촌이 완전히 어업에만 의존하며 촌락사회를 유지해가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개 어촌이라고 할 때 실제 어업종사자가 총인구의 30%이상이면서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촌락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⁹⁾ 이렇듯 다양하게 설명되는 어촌사회는 사회적으로 그만큼 복잡하고도 미묘한 구성요소들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 特性

어촌사회는 전통 사회의 요소와 관습이 가장 많이 잔존하고 있는 사회이다. 어촌사회가 갖는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이러한 관습의 연속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지만, 바다라는 특수한 위험 앞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은 자체적으로 발생시켜온 관습들에 대한 계승을 당연시하고 있다.

어촌의 관습은 생활 전반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내용들로 구성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일반적 추상적 실정법 규정과는 다른 구체적이고 평화유지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오히려 실정법의 개입으로 인하여 어촌 사회는 불안해 하고 동요한다. 지금까지 공동체내에서 갈등하고 또 스스로 화해하는 조정능력을 가지고 살아 왔는데, 기존 질서에 맞지 않는 제정법의 적용 및 집행으로 평화적 질서가 깨뜨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민들은 수산 관련 법규정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짙다. 어촌사회의 존속과 어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불신을 안고 있으면서도 마지못해 법에 끌려가며 복종할 수 밖에 없다는 묵시적 합의하에 외형적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법의 제정이나 개정시에 어민들의 소리가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9) 柿木田昭, 漁村の研究, 大明堂, 1987 : 이는 물론 일본의 어촌사회를 주된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국가나 지역마다 어촌사회를 정의하는 사회적 논의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아 왔던 그간의 입법행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현한다.

(1) 불안정성 · 자연의존성

어촌사회는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농촌사회와는 다르게 불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즉 자발적으로 형성시킨 정착지로서 보다는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정치적 처벌에 의한 유배나 생존을 위한 유망 등에 의해 사회적 모습을 형성시켜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조 李重煥(1690~1752)이 쓴 擇里志에서 논하기를 可居處로 “바닷가에 사는 것은 강가에 사는 것 보다는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은 시냇가에 사는 것 보다 못하되 시냇가에서 살 때에는 반드시 큰 고개에서 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⁰⁾ 이렇듯 바닷가 어촌에서의 삶은 가장 최후적이며 열위적인 삶의 공간으로 보아왔던 것이다. 물론 해안가는 식음수가 귀하고 장기(열병의 원인이 되는 산천에서 생기는 나쁜 기운)가 있으며 공기가 또한 염습하고 모기 등의 해충에다 왜구의 침입이 잦음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¹¹⁾ 이런 어려움이 내재하는 가운데 점차 어촌사회가 형성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생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인정되는 것은 역사상 고려시대에 들어서이다. 즉, 漁梁所·麓所·網所 등의 명칭으로 특수 천민 집단이 형성되면서 어물생산담당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었다.¹²⁾ 이와 함께 徐兢의 高麗圖經에서도 羊豕는 왕후귀인이 아니면 먹을 수 없지만, 귀인 천인이 모두 좋아하는 각종 어패류 및 해조류를 생산하기 위해 해인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음이 기록되고 있다¹³⁾. 어촌에서의 삶이 이렇게 힘이 들었던 만큼 자의에 의한 어촌 정착은 농촌에 비해 훨씬 늦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원시사회적 주거 생존의 측면에서 볼 때는 바닷가에서의 근거생활이 늦지 않았지만, 국가 사회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으며 촌락을 형성하게 된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정착이나 발전이 낙후되어 있었다.¹⁴⁾

10)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生利條

11)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條

12) 박광순, 韓國漁業經濟史研究, 유평출판사(1981), 112쪽

13) 徐兢, 宣和奉使 高麗圖經, 卷二十三 雜俗中 漁條 참조

14) 촌락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처럼 농촌 마을의 입향조의 입향이 300-400년을

그리고 어촌사회형성의 근거지가 되는 '바다' 자체가 갖는 불안정성과 함께 바다의 변화에 따른 생명유지의 예측불가능 등이 함께 작용하여 사회기반이 안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파생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착의식결여 또한 어촌사회의 독특한 모습을 빚고 있다. 아울러 어촌사회의 자연의존성에 있어서는 동식물과 상호의존의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에 있는 농업에 비해 어업은 바다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자연 그대로 획득하여 이용하게 되는 기생적 관계(Parastic Relationship)로 설명될 수 있다.¹⁵⁾ 주어진 자연의 혜택을 변형없이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특성이 어촌사회의 어촌민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어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또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생활은 육지에서 이루어지지만 생산은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양요소가 모두 적절히 조화되는 입지적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거기에다 어업이 갖는 특성상 자연의 변화를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해 어획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는 어촌민들이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요요인이 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생산고에 따라 소비행태가 크게 의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⁶⁾ 그리고 어장으로 구획되는 일정 범주의 해양에 대한 경계 설정이 용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로인해 경계를 드나드는 수산자원들에 대한 어획·채취를 놓고 어촌민들간의 분쟁이 항상 잠재하게 되어 있다.

물론 수산자원 자체가 횡적으로 이동하는 점도 있지만 수심에 따라 종적으로 산재하는 어종들에 대한 체포와 관련하여 중층적으로 권리관계가

소급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그 이전 선주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마을사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이혜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344~347, 참조).

그러나 어촌의 경우는 그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입향이 상대적으로 늦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촌으로의 이주는 최후의 선택지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청북도 해안가나 도서의 入島는 임란직후나 18·19세기경까지로 내려움을 알 수 있다(전계, 충청남도 도서지, 206~208면).

15) Han Sang-Bok, Korean Fisherman: Ecological Adaptation in Three Communities, S.N.U Press, 1977. 11~12면

16) 최재울, 한국농어촌의 사회학적 이해, 유허출판사, 1991. 294~295면 참조

설정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경계설정의 어려움이 또한 분쟁의 중요요인이 될 수 있다.¹⁷⁾

(2) 離村性

어촌사회는 농촌사회와는 다르게 이촌성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촌에서의 삶을 통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얻게되면 중앙으로의 진출을 위해 어촌을 떠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어촌에서의 정주는 일시적이며 삶을 위한 최후적 방편으로서의 장소 선택이란 의미가 강하게 내재해 있다. 역사 속에서도 어촌에서 사는 사람들을 末業 종사자로 표현하면서 생명을 건 삶의 현장으로 기록하여 오고 있다.

반면 농촌사람들은 정착성이 강하며, 천하지대본인 농업을 영위해가는 근본된 백성으로서의 인식을 강하게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정착의지는 장기적 측면에서 공동체적 삶이 서로간의 신뢰에 기초하는 만큼 신뢰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싶어도 평화파괴자 정도로 인정되어 타의에 의한 출향이 강제되는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만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터가 되고 있는 농촌사회를 특별하고도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떠나지 않으려는 정착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에 대비되는 어촌사회는 기회만 주어지면 어촌을 떠나려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신뢰형성의지가 상대적으로 박약하며 개인의 이익확보에 더욱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어촌을 떠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지적할 수 있다.

(3) 疎外意識

어촌민들은 스스로 중앙정부나 정치영역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즉,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국민이라는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촌민들은 어촌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다고 인식한다. 설사 어촌사회에 대해 어떤 특별보호적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한다고

17) 박태하, 양식어가와 비양식어가의 비교연구, 지리학 27권2호, 1992. 88면

하더라도 어촌을 지키며 생산의 주역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민들에게는 그러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한 이익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굳게 믿기도 한다. 이는 바로 어촌사회의 불신과 불안정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어촌사회가 가진 능력을 집중시켜 어촌을 부흥시키려는 의지보다는 어촌사회의 관리원이 되어서 어촌사회에 제공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책적 배려에 자기의 이익을 확대할 기회의 포착에 더욱 치중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만큼 어촌사회는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富의 획득도 정확히 예상된 결과에 의하기 보다는 자연이 주는 산물의 수동적 수수와 정책의 시행이 관을 통해 어촌과 어민에게까지 이르는 과정에 능력껏 개입하여, 이로부터 일정의 이익을 획득하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로 공동어장구역에서 생산되는 이익을 관리·수익하며 살아가는 어촌사회는 본질적·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정성에 더하여 이제는 어촌사회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뢰상실의 모습과 사회구조에 의하여 불신이 한층 더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더욱이 어촌사회의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배움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4) 構造的 矛盾

면담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지만 어촌에 거주하면서 공동어장에서의 산물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의 교육정도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화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등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어촌사회를 관리하는 몇몇 관리임원급들은 일반 어민들에 비해 그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어촌사회의 의사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지식을 이용하여 어촌 공동체의 이익을 절차상의 합당함을 내세우며 자신에게로 귀속시켜가는 경우를 허다히 빚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의 사례들은 거의 공개되지 않으며,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고 있다.

어촌사회의 대립과 갈등현상은 바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의심하고 분통해하는 일부의 주민들과 이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무저항적 어촌민들

과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의 행위는 항상 어민전체와 어촌사회를 위해 행사하고 있다는 임원급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이나 규정을 조금 알면서 그 내부를 관리하는 임원들에 비해 그러한 지식이나 정보에 접근하는 자격과 능력이 차단되어 있는 소수 어촌민들과의 다름은 근본적으로 분쟁이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반 어민들의 소득은 극히 미미한데 반해 임원들의 소득과 경제력 신장은 불가사의하게 늘어만 간다는 사실이다.

(5) 信賴關係의 解體

구조적 모순과 결부된 의혹은 지역사회에서 흥흥하게 회자되는 어촌사회의 임원급 관리자들이 행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다른 전언이나 미확인의 소문들에 의해 불신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대개의 어촌민들은 법적 절차도 모를 뿐만아니라 법이 우선 두려운 존재이며, 또 물적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에 의한 의혹해소를 청구하거나 고발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거기에다 법과 법집행 관리들에 대한 불신도 대단해서 법에 호소하면 자기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될 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자기들은 지식도 물질도 인맥도 없기 때문에 관공서에 가면 훨씬 더 불리해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열위적 입장에서 어촌사회의 부정·부당·원역을 느끼는 일군의 사람들에 비해, 더욱 자신들의 지위를 내세워 부를 늘려갈 뿐만아니라 자기들의 의사만이 관에서도 법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면서 어촌민들을 두렵게 하는 일부의 임원·관리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에서 어촌사회의 발전이 한층 더 저해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어촌 현지조사 과정에서 많은 어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어촌계 임원들 몇 명에서 산물에 대한 계약 체결이며 수익금 배당 등을 주도하고 있고 회의는 형식상의 절차 정도로 그치고 있어서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삼천포시 대구어촌계의 실례를 참고해 본다.18) 1986년에 정○○씨가 어촌계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공동 어장의

18) 전경수 편, 한국어촌의 저발전과 적응, 집문당, 1992, 237~243면 참조

입어행사권 양도인 빈매와 관련하여 부정이 발생한 것이다. 수산업법에서 공동 어업권의 대부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촌민 공동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고려한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빈매행위는 1960년도에도 공동 어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었다.¹⁹⁾ 즉 공동 어장의 임원 및 관리인들이 외부의 수산물 채집 상인과 결탁하여 빈매를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의 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궤전분쟁과 함께 어촌 사회에 있어 불신의 주원인이 되어 오던 사항이었다.

이 사례에 있어서도 어촌계장이 묵시적 관례에 따라 소속어촌계원에게 구매상의 우선권을 준 결과 홍○○씨가 이를 매입함으로써 일년의 기간 내에서 적정 시기를 정하여 해조 및 어패류를 채취·포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초의 매입자인 홍○○씨가 이를 비밀리에 삼천포의 수산물 상인에게 두배의 금액으로 재 매매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최종 매입자인 삼천포의 상인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어획 행위를 계속하자 결국 어획물을 탈취하는 등으로 어촌계장 및 어민들이 이에 대항하게 되었고 상인의 고소로 관할 법원의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재판 결과는 공동 어장의 빈매금지규정에 의해 어촌 계장 측의 잘못이 인정되면서 어촌 계장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삼천포 상인에게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 주었으며, 홍○○씨와의 계약을 무효로 하면서 입어 행사권을 어촌계로 환원하는 쪽으로 결론 지워졌다.

이 마을은 그래도 문제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외부로 표출되어 재판에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지만 이렇게 재판으로까지는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촌의 의사를 주도하는 어촌 관리자들의 이해와 관련하여 빈매행위에 의해 임원들은 일정의 이익을 취하고 어촌민들은 반대로 이익을 탈취당하는 느낌은 있지만 물증의 확보를 못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불신하고 그나마의 이익도 침해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역력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촌 마을에 있어 정확한 수입과 생산액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19) 김용욱, 수산업제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 제10권,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1968. 127면 참조

(6) 漁村政策의 漂流

어촌사회의 전체 생산량이 진정하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숫자상·서류상으로만 완벽에 가깝게 회의 때 보고되고 있다고 하니 어촌사회의 문제는 내부 스스로의 자정적 능력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어촌사회 스스로가 설정하는 사업 계획과 이의 추진과정에서 탈루되는 어민의 이익 또한 대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어촌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사업수행이후에 발생될 예상 소득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자기의견 개진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자료가 만들어져서 반대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답변하고 수정하는 등의 과정이 어촌사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견을 제기하면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어촌내에서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어촌민 전체의 의사라고 하기에는 극히 형식만 갖춘, 매우 부정의하고 불합리한 외형만 갖춘 채 소수 몇 명의 밀담과 담합에 의해 어촌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진정하게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촌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증빙이 되도록 갖추어 놓은 각종 서식이나 서류철 등의 서명·날인이 어느 정도로 진실된 당사자의 의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평가·해석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어촌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에 대해서는 범담당자들이 더욱 바른 자세로 진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외적으로 드러나는 분쟁의 내용보다 그 내면에서 내연하는 분쟁의 원인을 찾아내어 행위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주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바다를 경작처로 삼아 삶을 의존해가고 있는 어촌사람들의 사회적 문제가 파악될 수 있고, 정확한 어촌사회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어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 즉, 어촌정책은 이러한 어촌 실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연구에 기초하여 어촌사회의 그간의 열위적 위상을 해소 내지 상승시키면서, 중요 역할담당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산업화 정책에 바탕한 불균형성장

전략에 의해 어촌사회는 방치되다시피 하였으며 따라서 어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어가소득이 타부문소득과의 대비에서 그 격차가 훨씬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²⁰⁾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내재하는 것이겠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최소한의 어촌정책이나마 실효성있게 합리적으로 논구되고 실천될 수만 있었다면 어촌이 지금처럼 나아갈 방향을 상실하며 불신속에 정책이 표류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어촌을 살린다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여러 정책들이 결국에는 어촌을 말살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이다.²¹⁾

(7) 漁村社會의 危機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촌사회의 근본된 문제들을 놓고 형성된 감정이나 주장의 대립 등이 그 논의과정이나 감정의 대립과정 등은 모두 생략되어 버린 채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횡령 등의 형사법적 문제로 왜곡·약화되어 결정내려진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어촌 지방을 관할하는 당해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에서도 어촌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다. 어촌민들은 일단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 생명을 바다에 맡긴 채 하루하루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선입견 속에서 어촌민들이 일으킨 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법적가치를 탈락해 버린채 단순 사건으로 인식하여 기계적·기술적 결론을 지워버리고 있다.²²⁾ 인간에 대한 존엄도 적용되지 못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고서 형성된 촌락사회라는 인식은 더더욱 없는 가운데 어촌이란 곳은 소외에

2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행정조사연구소편, 수산행정기구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1988. 참조

21) 전경수편, 한국어촌의 저발전과 적응, 집문당, 1992, 「어촌연구의 의의와 문제점」 참조

22) 현지조사과정에서 우연히 대담이 이루어진 한 사법경찰관의 표현에 의하면, 어촌의 어민들은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다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면 어떤 것이든지 자기 것으로 하면서 단순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었다. 깊은 고민에 기초한 표현인지를 되묻고 싶었으나 억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다. 어촌사회가 공정하고 존중될 수 없는 根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소외를 더해가고 있다.

외부인이 관심을 갖게되는 요인이 있다면, 어촌에서 생산되는 자연자원의 혜택과 그 경제적 가치에 몰두하여 새로이 이익을 분할하고 가장 좋은 투자의 대상처로 그 추세를 조정해 가는 정도이다. 그래서 이제는 외지인까지 이익 분할에 끼어들면서 어촌사회는 또다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외지인의 하수인이 등장하고 주로 어촌사회의 임원급이 이 하수인을 맡으면서 자칫하면 어촌사회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될 심각한 위기 현상이 일고 있다. 어촌사회는 스스로 지탱할 힘을 잃고 붕괴될 위기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 자연을 대상으로 그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노력한 대가를 이익으로 취해오던 어촌사회가 소수의 관리자급 임원들의 부정과 어촌사회에 대한 법제적 관리규정이 없는 가운데 어촌사회의 일부 공직자들이 보이는 공정한 법집행 의지의 결여 등이 가세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외부세력의 새로운 이익분할 개입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어촌사회를 몰아가고 있다.

第2章 調査概要

1. 地域選定 背景

경상북도의 영일만 일원을 중심으로 미역바위(藪巖)의 소유관습을 조사하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개인의 소유관계가 인정되던 지역이라는 점과 그 이후로도 실로 개인소유를 기초로 매매 및 상속 등이 자유로이 이루어져오던 지역이라는 기초연구에 의하여 선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茶山의 지적²³⁾을 이어서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판전매매문서와 여타의 매매·상속 등에 대한 전언이 소유관계의 일관된 역사성을 추정하게 하며, 일제시기에도 변함없이 판전의 매매 및 상속이 이루어져 왔음을 각종 문서와 촌로 등의 증언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음에서 慣習法으로서의 所有權 연구를 위한 한 대상지로의 선정에 그 적실성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實定法의 흠결에 의한 왜곡해석이나 외래법의 무분별한 수용이 가져온 사회의 혼동이 실제 어느 정도인가를 가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지역적 의미가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1) 東海南部 : 영일만 · 감포 · 울주

본조사를 실시하였던 동해남부 지역은 - 영일만 신항만 보상과 정치망 어업을 둘러싼 갈등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 미역바위(藪巖) 문제를 포함하여 漁場의 權利關係가 완전히 정립되지 아니한 대표적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²⁴⁾ 또 이 지역은 언제 분쟁이 재연될지 모를 불안함으로 덮혀있는 어촌사회이다. 물론 조사지역 어촌사회에 있어 불안과 불신요인이 판전만은 아니었다. 공동어장의 생산·관리·수익을 둘러싼 흥흥한

23) 이에 대해서는 本章의 2. 所有關係의 變遷 중 (2) 茶山の 지역별 藪田(미역밭) 지배형태를 참조.

24) 영일만 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측면에서의 어업 및 어촌생활 실태조사는 1977년에 韓相福에 의해 이루어진 구룡포읍 石屏二洞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다. 여기서도 판전에 대한 권리관계가 일부 논급되고 있다. 韓相福, 韓國의 漁業과 漁村生活의 變化研究, - 경북 迎日郡 九龍浦邑 石屏二洞의 事例 -, 研究論文集(太平洋獎學文化財團叢書 제2집), 1978, 86~117면 참조.

불신은 대담의 부분부분에서 관련지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러하다 보니 어촌사회는 비밀스러운 모습을 가지면서 가장된 평화가 존재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왔다.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부정과 모순이 분명 존재하는 곳임에도 法の 介入을 꺼려하면서 官이 외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2) 西海南部 : 黑山島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던 서해 남부의 黑山島는 서해안에서는 보기드문 미역 생산지이다. 이 지역은 조사자들이 평소 잘 아는 지역이고 또 지형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동해 남부의 미역바위(麓巖) 내지 미역밭(麓田) 소유관습을 비교하는 데 있어 적격지라고 판단되어 예비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黑山島는 일반인들에게 관광지로 혹은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한반도 최서남단의 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 지리적 위치에 연관되는 각 시대의 문화유적과 자료가 많아 학문적으로도 매우 주목되어 왔다. 1957년 국립박물관의 조사와 1968년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의 조사는 그러한 학계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었고, 서남해안지방의 선사문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로부터 흑산도의 자료는 이후 각종 보고서(연구물)들에서도 빠짐없이 소개되었다.²⁵⁾

2. 調査方法

(1) 事前調査

동해안의 영일만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1960년대 중반이후의 광전 소유관계를 둘러싼 분쟁과 광전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팀은 몇 차례의 예비회의를 바탕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어촌사회가 갖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 및 피해의식 등을 고려하여 일단 어촌사회의 그간의 경과를 얘기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 우리의 학술연구 취지를 설명한 뒤 대담자가 아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담

25) 최성락, “西南 해안지역의 先史文化” ‘도서문화’ 제1집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소 : 1983) ; 이해준, “黑山島 文化의 배경과 성격” ‘도서문화’ 제6집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소 : 1988), 9쪽.

을 통해 문답식으로 풀어가기로 하였다. 대담과정에 있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명백히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직접 이런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시 유사한 분쟁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분쟁야기의 당사자로 지목이 되면 형언할 수 없는 직·간접의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藿田紛爭에 대한 증언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보자 명단에서 제외시킨다.

(2) 調査範圍

이 번 조사에서는 미역바위(藿田)의 소유관계와 그 분쟁과정에 대한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게 되었다. 어촌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객관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지할 수 있었으나 범위를 넘지 않으려고 조사자들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사회든 하나의 문제만 단독으로 존재하여 전개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어촌사회는 특히 전체 구도 속에서 모든 문제가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번 조사에서는 藿田의 권리관계에 대한 실체를 찾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촌사회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접근해 보려하였다. 입법을 위한 조사와 연구수행은 실체를 정확히 찾아내려는 의지와 실천에 기초해야 한다. 안일한 자세로 행해지는 입법과 법해석은 또 다른 부정의 집단을 만들어 내며 커다란 사회혼란과 부패를 가져올 뿐이다.

(3) 資料蒐集

우선 객전의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각종의 文記資料들을 방증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일대 분쟁을 겪으면서 어떤 위해라도 닥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소중히 간직해 오던 藿田의 賣買文記·賭只文記 등을 몇해 전에 상당수 없애버렸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관하고 있던 매매문서들은 일부 찾아낼 수 있었음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다음에 객전분쟁이 심했던 시기의 지방법원 형사판결문을 찾아내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지역을 관할하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형사판결문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찾아내어 객전을 둘러싼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어떻게 비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물

론 명백한 기록문건에 의하지 않은 내용이 오히려 더 많이 존재하였으며, 오히려 어촌사회·실상의 접근은 구전에 의존하여야 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기술된 내용의 중요 부분들이 구전에 기초하고 있음은 어촌사회 연구의 특징적 부분의 하나이다.

第3章 미역밭의 法律關係

미역밭(藪田)의 법률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를 통해 어촌사회 전체의 문제점을 찾아갈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보고는 2차·3차의 보완연구를 통해 어촌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제도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조사에 임한다.

1. 미역·미역밭

미역(藪)은 식용으로 중요시되는 바다해초로서 우리나라 동해 연안과 남, 서해의 먼 섬지방(예컨대 黑山島)에서 생산되는 청정해조류의 하나이다. 수중의 암초 또는 수면과 연접하여 수중으로 이어진 암초에 포자로 번식, 성장하는 미역은 전근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해초로 지목되어 구휼 또는 건강회복을 위한 특별식품으로 활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어촌의 중요자원으로 인식되어 경제적으로도 그 가치가 특별하게 취급되어 왔던 물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역의 생산기반을 광전이라 지칭하며 바다에 있는 특수경작지로서 관념해 왔던 것이다. 藪田에서의 '밭'(田)은 바로 농업중심 사회에 있어 경작토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바다에 있는 광(미역)을 경작하는 터전이란 의미에서 「광전」으로 지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광이 성장하는 바위 또는 광이 생산되는 바위 일대라는 의미에서 藪岩(藪巖) 또는 藪礎이라 불리기도 하였지만 역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경작처로서의 의미를 갖는 藪田이 되고 있다.

2. 所有關係의 變遷

(1) 權利關係의 設定

藪田은 조선시대에서부터 궁방이나 개인이 특정하여 전유물로 삼으려 하였으며 그 물적 지배관계를 특별하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선 조선시대의 정책기조는 山林川澤에 대해 興民公私之地임을 선언하여 그 산물에 대해서는 백성 모두가 자유로이 사용·수

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조선조는 건국초부터 「…山場水梁一國人民所共利者也」라고 해서 산촌과 강·바다 등에서 생산되는 산물 및 이익은 백성 모두가 같이 이용·수익하는 公共財産임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어서 「…或爲權勢擅執權利者有焉 甚非公義也」라고 하여 이의 이익을 전단적으로 지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실로 公義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²⁶⁾

이처럼 선언적 공공성이 점차 사회관계의 변화 및 개인이 갖는 소유의사의 실행, 또 소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에 의하여 특정개인의 전단적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산림천택이 공공의 사용·수익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념의 후퇴와 함께 현실적 지배를 통한 이익획득에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맞추면서 사회적 힘을 바탕으로 지배의 정도를 점차 강화시켜간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궁방은 折受의 형태로 권리관계를 설정하게 되고, 개인은 생산이익의 전면적 지배를 위한 권리관계 설정에 제도와 사회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힘을 활용하게 된다.²⁷⁾ 즉 바다의 일정 구역을 할양받아 어획의 터전을 설정해 가기도 하고, 광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생산터전을 점차 특정인의 지배 아래로 귀속시켜 갔던 것이다.

사회전체가 누려야 할 이익이 개인에게로 옮겨오면서 국가는 이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고, 소유관계를 명백히 하는 법제를 마련함이 없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개인의 권리관계로 정착되어 가는 것을 추지할 수 있다. 국가는 소유관계가 어떠한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점차 국가내의 생산관계로부터 조세징수만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권리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公共之物로 관념되었던 대상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2) 茶山の 지역별 藿田支配 형태

藿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광전은 다산의 시대에 이미 확고한 私家의 소유대상처가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호남광전은 주위가 백여 보에 이

26) 太祖實錄 6年 5月 丁未條

27) 折受에 의한 권리관계의 설정들에 대하여는 李鍾吉, 조선후기 어촌사회의 소유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7, 41~45면 참조.

르는 정도의 섬에 대해 사가에서 2~300냥을 징수하며 10여 畝 지름의 주먹만한 돌이 2~300냥씩에 私家에서 賣買되는 실정에 이르렀을 기록하고 있다.²⁸⁾ 논의의 가장 핵심은 결국 광전의 소유관계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검토를 해보도록 한다.

經世遺表에 의하면, (1) 호남 영남은 소유광전을 거의 토호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공물로 하지 못하고 있다.²⁹⁾ 그러나 (2) 관동지방의 통천이남과 삼척이북 지역에는 본래 사주가 없고 또한 관에서 관리하는 일도 없어서 누구나가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은 연해의 여러 진에 진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민인들과 더불어 작업하고 채취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여 세액에 충당하고 있다.³⁰⁾ 그렇지만 (3) 삼척이남인 울진과 평해지역은 옛날부터 미역밭직이(田直) 또는 監考라고 하는 관수가 있어서 이들이 광세를 거두었으며 지금도 藿一洞(50束)에 4량4전의 세액을 징하여 수세하고 있다.³¹⁾

이같은 경우라면 징수하는 광세액이 너무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여타 지방에서 생산되는 미역 1동의 가격이 7량반이고 울산의 감곽은 품질이 우수하여 특별히 10량의 가격이 책정되었는데, 이곳 울진 평해의 광전에서 채취한 미역은 1동에 4량4전의 세액을 관수가 징수해 간다면 생산물의 50%이상이 관수를 통해 징세되고 있는 셈이 된다.

지금까지 경세유표에서 밝힌 내용을 통해 보면 광전에 대한 권리관계 즉, 소유관계에 대한 유형이 보다 분명해 지게 된다. (1) 첫 번째는 국가의 간섭이 전혀 배제된 가운데 私人이 광전을 완전히 소유하는 유형이다. 영남과 호남의 광전지배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2) 두 번째 유형은 통천이남 삼척이북 지역의 유형으로서 어촌민들의 완전한 공동체적 소유 관계이다. 어촌 마을의 관리자가 지정되어 그 관리자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채취하여서 일정의 세액을 공제하고는 공동으로 분배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어촌민에게 고르게 이익이 분배되는 유형으로 우선 전단적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므로 인하여 자의적 횡포에

28) 經世遺表 均役事目追議一, 藿稅條

29) 經世遺表 上揭條 및 牧民心書 戶典 第六條 平賦下 참조

30) 經世遺表 上揭條

31) 經世遺表 上揭條

의한 공동체 이익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3) 세 번째 유형은 관수자가 있는 울진 평해지역의 소유 모습이다. 이는 첫 번째의 완전한 사유적 모습과 두 번째의 국가 방임적 어촌 공동체 모습의 중간적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관수에 의해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공제되고 절반이 바로 어민의 몫이 된다.

경세유표에서 다산이 표현한 데로 「…一海之沿 咫尺相望 而彼冒薄稅 似若非王土 此伋擅利私若置私藏 豈王者平賦之政乎 臣謂蔚珍平海亦撤其官守 許民私採 如三陟通川之例 則法制均一矣 惜此小損終不肯畫一爲法 豈不苟哉」³²⁾처럼 바로 위의 통천삼척은 생산량 거의가 어민의 것인 반면 울진은 어찌하여 관수에 의해 이익을 빼앗겨야 하는 지를 의아해 하며 賦稅를 공평히 하지 못하며 법제가 균일하지 못함을 개탄해 하고 있다. 따라서 울진 평해에도 관수를 철폐하고 자유로이 채취하게 하는 것으로 법제를 균일하게 함이 옳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광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이 물품 그 자체로서는 대단한 효용과 가치를 가지면서 생산처의 확정이라는 특성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바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지의 田地와 같은 정도의 관리나 관심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래서 均役法의 제정시 영조는 광전에 대해서도 징수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³³⁾

또 바다에서 생산되는 여타의 해조류와는 구분되는 식품성에 기초한 가치 때문에 진상은 물론 賑恤 및 救荒 食品으로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그 생산처를 藿田이라 하여 밭(田)과 같은 정도의 생산 터전적 가치를 인정하여 왔지만 실제상의 국가 관리에 있어서는 일정의 징세 외에 소유 관계를 명정하는 다른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관행적 관리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는 전답이었다면 토지의 관리방안에 따라 양안에 의해 소유주체에서부터 경작인, 소재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이 조사 기록되어 소유 관계는 물론 조세의 징수를 통해 재정 운영에 기본적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의 미역(藿)은 국가 재정에 중심적 재원이 될 수 없는 전혀 미력의 보조적 지위

32) 經世遺表 上揭條

33) 英祖實錄 27年 2月 己丑.

라는 점, 그리고 광전 실체의 파악이나 관리 또한 토지처럼 용이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획일적인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역은 지역별로 균등한 생산 양상을 보이는 것도 아니며 그 품등 또한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전토의 산물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광전에 대해서 국가는 일정의 필요 분량을 취하는 외에는 오히려 방기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지방의 토호들이 힘의 정도와 현지의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을 기초로하여 다양한 유형의 소유형태를 나타낸다. 그 결과 완전한 私占 상태에서부터 국가가 일정 부분 관리 수익에 개입하는 상태, 그리고 어촌 공동체 공동의 관리 유형등으로 소유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어촌 사회의 광전지배 실상은 광전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고 또 미역이 우리나라 연안에서만 생산되는 산물이기 때문에³⁴⁾ 매우 독특하면서도 중요하게 취급되는 객체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특수한 광전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를 둘러싼 소유와 관리 및 수익형태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文記는³⁵⁾ 海南 尹氏家の 古文書로써 藿田의 賣買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乾隆三十一年 丙戌八月二十六日 尹生員宅奴丕金處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買得是在 珍島郡地 葱邁島所屬 新爲造島藿田江邊
沒數捧價錢伍什壹兩 依數捧上爲遺 右人處 本文記所志不忘記并以 永永
放賣爲去乎 日後子孫同生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事

藿田主 朴仁傑 (手決)

証人田主 金漢水 (手決)

筆田主 朴秀才 (手決)

34) 世宗實錄 29年 9月 壬子

3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文書集成(三) - 海南尹氏篇 影印本 - (1986年刊), 368
面に 수록

(번역문)

건륭 31년(1766) 병술 8월 26일 운생원래 노 돌쇠 처 명문

이 명문은 필요한 일이 있으므로 매득한 진도군내 불매도 소속의 새로 조성된 섬의 광전과 강변을 모두 오십일냥으로 정하여 그 액수를 납부하고 이 사람에게 본 문기와 소지 불망기 등을 아울러 영영 방매하는 것이니 일후 자손동생(동족) 중에 만일 이의(異議)가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올바르게 가려야 한다.

광 전 주 박인걸 (수결)

증인전주 김한수 (수결)

필 전 주 박수재 (수결)

이 文記의 내용을 통해볼 때 1766년 당시 본 광전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前主人이 또 다른 그 前主人으로부터 買得한 물건임이 파악됨으로써 광전매매 관행이 시기적으로 더욱 소급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항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기록해 놓은 不忘記 등을 광전의 放賣와 함께 買得人에게 넘겨줌으로써 혹시 있을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시에 이를 증거로 삼아 매수인의 권리를 보전하게 함을 알 수 있다.

(3) 慣行의 形成

광전에 대해서는 그 권리관계가 중앙의 법제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지역별로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배모습으로 유형화되고 있는데, 위에서와 같이 세분화되어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적 분류는 토지와는 달리 바다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정된 법규가 없는 가운데 당해 해안 지방 수령들이 당시의 지역적 상황이나 관습 등을 고려하면서 시행한 관리방안이 그대로 지역적 권리유형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은 결국 바다산물중 특별한 해초로써 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만큼 소유관계의 설정에 있어서도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물품이 된다. 소유관계는 각 사회가 갖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바탕으로 형성·설정되어야 하는 만큼, 소유관계의 규명에 있어서는 실제조사를 바탕으로 역사

속에 있어 진행과정과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특히 조선후기 이래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광전매매문기와 여타의 매매·상속 등에 대한 전언이 소유관계의 일관된 역사성을 추정케 하며, 일제시기에도 변함없이 권리가 보전·이전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 때문에 광전에 대한 관습법상의 소유관계는 현재에도 '살아있는 法'으로 논의될 여지를 안고 있다.

(4) 紛爭의 發生

해방이후 각종 법령의 정비 및 제·개정과 함께 어촌사회에 있어 생산 및 권리관계에 대한 법제인 수산업법이 1953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비합리적이며 효율적이지 못한 수산법제의 개정과정에서 제1종 공동어장을 어촌계³⁶⁾ 어민 전체의 공동생산·수익지로 법정하면서 藪田에 대해서는 전혀 별도의 규정도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동해안 일대에 있어 광전의 소유관계에 대한 역사성과 관습은 다산을 기점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200여년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그러한 시간속에 형성된 권리 또는 의무의 내용과 그 실천의지들을 일시에 부정하는 실정법의 발효로 동해안 지역일원 어촌사회가 일대 혼란에 휩싸이게되었던 것이다.

사실 1963년의 수산업법 개정이 그렇게 혼란스러워야 하였던 필연적 이유도 없었다. 어촌사회에 대한 이익의 독점 내지 선점을 노린 일부의 어촌 선동배들이 동해안 어촌사회의 광전소유관계를 공동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이익을 점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숫적으로 적은 광전소유자들을 비난하면서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非광전주(광전을 소유

36) 漁村契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에 의해 탄생된 어민의 최하부 협동조직체이다. 자연촌락 단위의 어촌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생산력을 증진시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된 어촌계는 각종 해조류 및 어패류의 서식처인 「제1종 공동어장」의 이용·관리의 주체로 인정된데서 가장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어촌계에 이러한 지위를 부여하게 된 이유는 영세한 어민들이 공동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이를 채취·분배함으로써 어민들의 생활이 보다 향상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 관리에 헛점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역으로 어촌사회가 불신과 이익희점의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때 「제1종 공동어장」의 채취품목에서 미역(藪)이 특별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인해 지금까지 광전분쟁의 진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 않은 일반어촌민)들도 이제 광전주와 똑같이 광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선동하면서 어촌계조직이나 수협조직의 임원이 되려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고 비판받는다. 그 임원은 바로 어촌 공동어장에 대한 산물의 생산 및 판매권을 사실상 장악하게 되는데, 법률관계에 어두운 어촌민들에게 광전으로부터의 이익을 쟁취해 준 대가로 임원으로 선출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3. 宗中藪田

藪田에 대한 권리의 취득과 그 행사에 있어 종종이 주체로 되어 어촌계와 법률관계를 조정한 事例가 있다. 경남 울주군 강동면 구류리 판지촌락 앞 바다에 소재하는 藪田의 경우에는 蔚山 朴氏 宗中이 권리자로 인정받고 있다.³⁷⁾

(1) 沿革

울산朴氏는 고려때 興麗朴氏로 불리워졌다. 고려 太祖 建國時에 朴允雄이란 人物이 있어서 太祖의 創業과정에 勳功이 至大하였는 바, 太祖는 건국이후 朴允雄을 大將軍의 직을 주어 興麗伯으로 봉하였다고 한다. 이때 朴允雄에게 그가 살던 곳인 蔚州의 柳浦·東津 두 고을을 采邑地로 주면서 柳浦의 藪巖 12곳을 함께 下賜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이의 관리에 대해서는 명백치 않았으나 조선조 英祖時 朴文秀가 王命을 받들어 州郡을 순행하던 중에 柳浦 광암의 내력을 듣고 이의 폐해를 염려한 나머지 公物로 귀속시켰다고 한다. 公物로 귀속이 되자 3년을 계속하여 광의 생산량이 격감하여 주변 어촌민들의 생계가 곤란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에 어촌민들이 공동으로 조정에 탄원하여 朴氏家의 소유물로 환원받게 되자 다시 미역의 생산이 예전과 같아져서 주변 어촌사회가 풍요롭게 되었다고 한다.

(2) 權利의 逸失

그후 한말·일제를 거치면서도 변화없이 朴氏家에서 전적으로 관리하

37) 흑산도의 종종광전에 대하여서는 조사자료 2, 참조.

며 수익해왔으나, 해방이후 사회의 변화와 함께 주변 어촌민들이 자기들의 소유로하여 朴氏家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⁸⁾ 이에 朴氏宗中(대표 朴駿浩)은 1965년말 내지 66년초경에 朴正熙 大統領 앞으로 원역을 탄원하게 되었고 1966년 2월 2일에 대통령은 위의 대표 朴駿浩앞으로 위로문을 보냈다. 동년 5월 30일에 대통령비서실장 李厚洛 名의 「大統領秘書室長 通告文」이라는 제목의 公文을 보내어 朴氏家에게 藪田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3) 大統領의 認證

박정희 大統領이 광전에 대한 권리의 還元을 命하였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즉 「謹啓 大統領閣下 還元之命 通告於慶南知事及蔚州郡守蔚州郡江東面漁業組合長 諒下之是仰」이라고 하여 당시 광전소재지 어업권 관계 관청에 그 내용을 모두 통고하여 還元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³⁹⁾ 朴氏宗中은 이를 중요한 權源으로 하여 지금까지 柳浦마을 앞바다의 藪田에 대한 所有者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오고 있다.

(4) 採巖碑에 의한 公示와 生産·管理契約

이 광전은 그 후 1980년에 광전소재지인 울주군 강동면 구류리 판지부락 어촌계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어촌계가 이에 대한 관리와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지부락 어촌계(당시 어촌계장 : 金基煥)는 생산량의 과다에 따라 매년 2束에서 4束까지를 朴氏宗中(대표 朴址業)에 納品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管理契約을 체결(1980년 6월 24일 계약 체결)하여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에는 광전의 宗中所有와 所有관계의 權源을 소명하는 내용을 비문에 새겨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다.

38) 이 부분이 바로 1963년의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해 광전에 대한 기존의 권리관계가 동요·부정되면서 발생된 동해안의 광전 소유권 분쟁의 초기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의 藪田紛爭實態를 참조바람.

39) 경상남도지사의 1977년 어업면허 제491호 : 구류리 탄지 어촌계장에 대한 어업면허(1977년~1987년)에서 도지사는 면허의 제한조건으로 "1966년 5월 18일 대통령 각하 특별유시에 의거 탄지동 지선 소재 미역바위(賜岩)는 종래 관행에 따라 울산 박씨 종중에서 무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4. 現行法制的 變遷과 構造

(1) 入漁慣行的 確認

해방후 최초의 수산업법인 1953년의 수산업법은 '入漁의 慣行'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즉 共同漁業의⁴⁰⁾ 어업권자는 종래의 慣行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제40조제1항). 이 때 어업권자는 入漁者에 대하여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40조제2항). 여기에서 '漁業'이라 함은 수산 動植物을 採捕 또는 養殖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제2항). 이 때 어업권은 物權으로 보호받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4조제2항). 공동어업권은 이전 또는 담보의 목적이 될 수 없고(제30조제1항),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포기할 수 없다(제30조제2항). 漁業權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 또는 入漁에 관한 사항은 漁業權原簿에 등록하여야 한다.

(2) 漁村契의 越權과 入漁慣行的 動搖

1963년 4월의 개정법(법률제1321호 : 시행일 1963·7·1)은 漁村契⁴¹⁾를 어업협동조합과 같이 취급하고 공동어업권을 부여함으로써 慣行

40) 1953년법상 '共同漁業'이라 함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양식어업·정치어업·정소인망어업·정소부예망어업·정소집어어업에 해당하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영위하는 어업을 말한다(제8조제1항). 共同漁業은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면허한다(제10조). 1963년의 개정법은 공동어업을 제1종共同漁業·제2종共同漁業·제3종共同漁業으로 구분하였다. 제1종共同漁業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어업을 말한다(1963년 4월의 개정법 제8조제1항제3호). 따라서 자연산 미역의 채취는 제1종공동어업에 속한다. 한편 제4종共同漁業은 1971년의 개정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1995년의 개정법은 공동어업을 '마을어업'(자연산패류등의 채취)과 '협동양식업'으로 변경하였다.

41) 본래의 自然漁村契와 구분되는 이른바 '法定漁村契'는 다음 조항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 1963년 12월 5일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법(法律제1467호) 제16조의2(漁村契) ①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개 또는 수개의 부락 또는 뭍·洞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어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上 入漁權者와의 충돌 여지를 낳았다. 즉 1953년의 수산업법(제10조)은 공동어업을 면허어업(제8조)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1963년 4월의 개정법은 “어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⁴²⁾ 당해 어업협동조합이 향유하는 공동어업권의 범위 안에서 各自漁業을 할 수 있다”(제10조제2항)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어촌계를 해조류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공동어업의 주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낳았다. 또 法定漁村契가 조직되기도 이전에 어촌계를 공동어업권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재래의 自然漁村契⁴³⁾까지 공동어업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1972년 10월의 개정법은 종전(제10조제2항)의 ‘各自’어업이란 구절에서 ‘各自’라는 개념을 제외시켰다.⁴⁴⁾ 한편 같은 법은 “일정한 지역 안의 어업개발과 그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에 공동어업 이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소속 어촌계원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어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제10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어촌계의 권리를 강화시켰다.

(3) 入漁慣行의 再確認

1990년 8월에 전문개정된 수산업법(法律제4252호)은 ‘入漁者’에 관한 정의 규정을 통하여 慣習上 入漁權을 재확인하였다. 즉 “入漁”라 함은 입어자가 공동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入漁者”라 함은 제44조(신고어업)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

42) 1963년 4월 11일의 수산업법 개정법 제51조(規程의 認可)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제1종·제2종·제3종 공동어업)의 규정에 의한 共同漁業權의 행사 또는 入漁하는 자의 어업방법, 어업의 시기, 操業統數 기타 어업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規程을 정하여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3) 여기에서 ‘自然漁村契’란 이른바 法人格 없는 어촌계 즉 ‘法人이 아닌 漁村契’(1975년 12월의 수산업법 개정법 제24조제4항 참조)를 말한다.

44) 1972년 10월의 수산업법 개정법 제10조제2항 “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漁村契員을 포함한다)은 제51조(規程의 認可)의 規定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의 범위 안에서 漁業을 할 수 있다.” 1975년 12월의 개정법(제24조제4항)은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總有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제2조제7호). 이에 따라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지분 또는 入漁에 관한 사항은 漁業權原簿에 등록한다(제16조제1항).

(4) 入漁慣行의 自律的 制限

1990년 8월의 수산업법에 의하면, 공동어업등의 면허(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은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로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8조). 그러나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정의규정(제2조제7호)의 慣習上 入漁者에 대하여 어장관리규약(제38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제40조제1항).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제40조제2항).

(5) 入漁慣行의 廢止와 葛藤

1990년 8월의 수산업법은 경과조치를 통하여 慣習上 漁業權을 종식시키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1990년의 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입어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에도(부칙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동어업의 어장 안에서 入漁慣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漁業權原簿에 入漁者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6조(어업권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入漁者로 본다”는 자격제한규정(부칙 제11조제2항)을 됴으로써 慣習上 入漁者를 法定(登錄) 入漁者로 전환시키겠다는 입법의

지를 천명하였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藿田을 둘러싼 어촌 사회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려는 의도로 이해되지만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物權으로 보호받는 慣習上 入漁權을 수산업법이라는 제정법으로 간단히 부정할 수 있는가”라는 시비를 낳는다.

5. 法律關係 分析

(1) 法の 逆機能

동해남부 어촌사회의 분규는 일차로 어촌 실태조사 및 연구없이 결행한 수산업법의 개정에 그 원인이 있으며, 두 번째는 이러한 법규의 헛점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순박한 어민들을 최대한 이용하려했던 악의의 일부 어촌민에게 그 원인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북 동해안 어촌사회가 이처럼 진통과 분열을 겪고 있었음에도 입법부를 비롯한 법담당자들의 해결노력은 전혀 없다시피 하였다는 점이다. 그렇게 생산이 많았던 藿의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기를 맞추어 해야할 팍전의 잡초제거 작업인 가을철의 蕎洗作業(돌매기·돌씻기)이 어촌마을의 藿田主 측 對 非藿田主 측간의 격렬한 감정싸움으로 번번히 그 시기를 놓쳤다는 점이다. 藿田主 측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어느날 갑자기 빼앗김으로 인하여 그 원역을 참지못해서 상대측을 비난하였고, 비팍전주측은 법이 그렇게 공동으로 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공동으로 팍전에 대한 권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세월이 바뀐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하였다고 한다.

(2) 慣行의 尊重

법이 어떠하였던 그 어촌마을의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 분쟁도 없이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생산증대를 통해 그 과실을 서로 평화롭게 나누어온 마을도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우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으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동안 살아온 관행 등을 강조하면서 공동어장내에 다른 생산물들, 이를테면 천초·

성게·전복·홍합 등의 생산을 최대한 증대시키면서 그 이익을 어촌민들 모두가 고루 나누어 갖는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투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대 다른 마을의 공동화추진자들이 온갖 비난과 모함으로 헐박해오기도 했었지만 개인의 이익추구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 별다른 해악은 없었다고 한다.

(3) 實定法の 限界

소유관계는 특별한 정치적·사상적 변란을 동반하지 않는 한 법의 이름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때의 광전분쟁으로 인한 감정은 삼십여년이 지난 현재에 있어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법의 재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적측면에서 광전에 대한 어떠한 권고적 방향설정도 해주지 않은 채 어촌사회를 방치해 두고 있다. 어민들 스스로가 어촌계획회의를 통해 형식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가운데 또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들고 있다고 한다. 형사판결문에서 나타나듯이 광전에 대한 권리관계를 둘러싸고 그렇게 치열하게 감정싸움과 폭행사건이 벌어지던 동해안 어촌사회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휴면상태다.

(4) 社會經濟的 土臺의 變化

오늘날에 이르면서 광전에 대한 대응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우선 미역(藪)의 생산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의 사회경제적 비중이 저하되고 있음이 중요원인으로 지적된다. 연근해의 오염과 임해공업단지의 조성 등이 광의 생산을 격감시킨 요인으로 보고 있다. 어촌사회도 변화되었다. 삶의 주된 뿌리를 어촌에 두고있는 만큼 어촌을 떠나서는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던 어촌민들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도시로 나가서 다양한 삶의 방법을 찾아낸 결과이다. 고등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또는 도시근로자가 되면 어촌에서 미역에 의존하면서 획득한 것보다는 경제적 소득이 훨씬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미역은 이제 절대 절명의 삶의 뿌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아울러 藪田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과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광전분쟁이 발생할 당시의 당사자들은 광전을 직접 買得한 사람들이거나 先代로부터 직접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에게

있어 미역밭은 단순한 재산의 정도를 넘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하여 가난을 면하게 되는 기본 재산이며 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만큼 세세영영 지켜가야 할 世傳物이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

(5) 紛爭樣相의 變化

삼십여년이 지난 지금은 그러한 빼앗길 수 없는 재산으로서의 藪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거기에다 결정적인 것은 곡의 생산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생산량이 격감했다. 일단 생산량이 많아야 애착을 가지고 가꾸며 소유관계를 바르게 정리하려 할 것인데 생산이 분쟁당시에 비해 몇십분의 일로 줄어들었다. 임해공업단지의 조성에 의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농촌쪽에서는 그래도 보상 내지 배상이 일부나마 행해졌지만 동해안의 광전 및 기타 어장에 대한 손실 산정과 그 보상은 거의 없었다.

광전분쟁으로 너무나 지쳐버린 어촌민 당사자들, 특히 광전주들은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형세에 무엇을 더 요구하고 싸우고 할 것이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이다. 이런 광전의 피해를 산정하려 해도 너무 힘들고, 또 무지하고 돈도 없고 해서 더더욱 그럴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도 최종적 귀속을 놓고서는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에 별다른 생각이 없다고 한다.

(6) 共同所有關係

藪田은 동해안 어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유재산의 대상이었다. 개인의 소유를 중심으로 하되 洞所有의 것도 존재하고 있다. 洞有는 어촌 사회의 풍속에 따라 행하는 洞祭의 담당자가 동제를 주재하는 기간동안 자신이 경작 수확하던 곳이다. 그 수확물로 洞祭의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것이다. 지역에 따라 따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특히 한말의 자료에 의하면 營條·官條·面洞條·民私條로 분류하여 營條는 주로 進上에 공하였고, 官條는 관청의 소용물로, 面洞條는 면동의 공동소유관계로, 民私條는 순수한 개인의 소유관계로 인정해 왔다.

(7) 慣習法上の 物權

다양한 소유관계를 단순히 개인소유이나 아니면 국가소유로 공동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나 하는 정도로 단순화된 논쟁은 소유관계를 역사속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극히 피상적이며 형식적으로 보고자 하는 안일한 법적 사고방식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소유관계를 단순히 法으로 정리시킬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위험스럽다. 법이 소유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면,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은 사회관계 속에서 그리고 역사속의 형성과정에서 그 실체를 찾으려 하여야 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유에 있어 그 형성과정 및 내용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실적 내용을 확정지어줄 때 法은 가장 합리적으로 소유관계를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第4章 미역밭 紛爭實態

미역밭(藪田)분쟁은 경상북도 동해안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개되었으며, 결국 동해안 전어촌이 기존의 광전에 대한 권리 관계에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특히 영일만을 중심 조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개인의 소유관계가 가장 잘 실행되고 있었으며, 생산량에 따른 어촌사회의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큰 지역으로 알려져 왔음에 기인한다. 그런만큼 광전을 둘러싼 분쟁은 그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분쟁을 겪어야 했던 시간 또한 끝이라고 할 수 없는 가운데 휴면상태에 이르고 있다. 미역(藪)은 청정한 바다중에서도 해류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 수중 바위에 포자가 부착되어 성장을 하게 된다. 영일만이나 울산만지역은 그러한 자연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된다. 따라서 품질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생산량 또한 많았던만큼 광에 대한 주변 어촌사회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이 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 실재했던 분쟁의 경과를 요약해 본다.

1. 藪田主의 所有權 主張

광전주는 각 어촌마을마다 산재하고 있는 광전의 소유주를 일컫는 말이다. 광전주 또는 광주로 불리기도 한다. 물론 마을의 규모나 해안의 특성 및 크기에 따라 광전주의 숫자나 소유규모는 다르게 나타난다.

(1) 所有過程

광전주의 소유과정은 주로 賣買를 통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마을 입향이 오래된 가문들일수록 광전주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는 相續이 주된 소유원인이 되고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고을원님(조선 후기의 현감)으로부터 자신의 몇 대조가 매득해서 자기들에게 상속해준 것이라고 그 경과를 말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권리의 취득시점이 분명하게 매매문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부터 전혀 증빙될 자료가 없지만 당연히 상속을 거쳐 자신들의 소유가 됨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믿

고 있는 경우까지로 나누어진다. 이와 함께 또 당해 어촌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소유관계를 알고서 그 권리를 당연히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분쟁을 거친 현재에 있어서도 마을 앞바다에 솟아있는 바위를 가리키면서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더니 「○○네 미역돌」 「○○네 돌」이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었다.

(2) 所有의 內容

「곽전의 소유」 관계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소유」는 미역의 채취·수확에 소용되는 범위에 있어 곽전에 대한 배타적·전면적지배를 가리키는 것이다. 곽전은 특정된 것이고 그 특정된 곽전에서는 「미역」(藪)만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미역이외에 다른 해조류나 어패류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미역의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의 범위내에서 배타성이 인정된다.

2. 1963년의 水産業法 개정과 藪田紛爭

(1) 葛藤의 激化

1953년에 제정된 수산업법이 1963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공동어장」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즉, 일정 구역(제1종 共同漁場으로 설정)내 연안해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및 어패류에 대해 어촌어민이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규정의 해석에 의해 그동안 곽전에 대해서만은 별도로 소유관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 오던 어촌민들이 동요하게 된다. 이 동요를 일으킨 주인공들은 바로 어촌사회에서 발생하는 여타의 이익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확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非藪田主들에게 藪田에 대한 권리가 공평히 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으며 자기들을 믿고 지지할 때 이를 확실하게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사회내적 지위를 공고히 해 갔다. 따라서 이들은 수적으로 많은 비곽주들의 지지를 기초로 어촌사회의 내부조직의 관리자로 자리를 잡았다.

(2) 管理者들의 收奪

종래 「제1종 공동어장」내에는 곽전이외에 다른 종류의 어획물이 대단히 많았는데, 이를 둘러싼 이익쟁탈은 그당시 액수와 규모가 정확히 파악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일반 어민들은 모르는 가운데 생산이익을 자의적으로 처분하며 관리자급 몇 명이 이익을 횡탈해 갔다고 한다. 이러한 이익을 장악하기 위해 결국 일반의 비곽주 어민에게는 곽주측과 대립 관계를 형성해놓고 자신들은 비곽주측 지지를 명분으로 실질이익을 무지한 어민들 몰래 독식해 갔다. 반면 곽전주들은 곽이외의 이익에는 별무관심인 상태로 자신들의 상속재산 또는 매득재산으로서의 곽전소유권회복에 전력하였다. 이러한 공백상태를 이용해 분쟁을 일으킨 관리자급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마음껏 차지하면서 분쟁의 장기화를 유도해간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다.

(3) 藪田主들의 組織的 反撥

결국 곽전주들은 자신들의 소유권 강탈에 분노하며 조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어촌사회의 대립상황은 더욱 흉흉해져갈 뿐이었고 조직적 대응이라고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숫적으로도 비곽주측에 대응할 정도가 못되는 상황에서 감정적 대결만 곳곳에서 발생되었다. 그런 상황에 조직을 이끌던 곽주측 대표자(예컨대, 최○○·하○○)들의 노력도 점차 힘을 잃게되었으며, 각 마을마다 미역의 생산을 위해 행하는 가을철 계단기작업(기세작업)현장에서 자기소유의 곽전에 와서 공동작업을 행하던 비곽주측사람들과 폭행·상해 사건등이 빈발하게 된다. 마을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어촌사회의 모습을 가질 수 없었다. 그 당시 대립과 싸움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곽주측과 비곽주측으로 갈라져서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조차도 말을 서로 나누지 않으며 서로 원수를 대하듯 하였다. 격렬할 싸움의 또 한 시기는 봄철에 역시 미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곽전으로부터 미역을 채취해 오면서도 서로 싸우고 해변의 건조장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서로 싸우는 모습은 한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어촌민들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다.

(4) 司法的 對應

동해안 어촌이 이같은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어느 관공서·어느 지도자, 어느 법담당자 하나도 이 사회의 평화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것이다. 한해 두해가 지나도 개선의 변화는 없는 가운데 싸움으로 인해 경찰이며 법원에 출입하게 되는 자들만 늘어났고, 또 광전소유자들 중에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난리의 와중에 누구는 치부를 하고 외지에 재산을 빼돌렸다는 등의 소문이 돌리기도 했는데, 그들 누구는 바로 藿田共同化를 부추긴 관리자들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약 10여년의 기간동안에 동해안 어촌사회는 공동체나 평화 등의 용어와는 결별하였으며, 불신과 대립·비난만이 남게 되었다. 어촌사회가 70년대 중반 무렵부터라도 정리될 조짐을 보이게 된 것은 어촌사회를 분란으로 이끈 관리자급들이 저지른 부정행위들이 일부 드러나면서부터였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형사 처벌이 일부 진행되면서 분란을 선동하는 세력들의 이익투쟁이 소강국면을 맞이하였다.

(5) 葛藤의 內面化

어촌사회가 그토록 심한 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담당자도 알지 못하고 법집행자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민들의 소외감은 그 정도가 더욱 깊어갔다. 그래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비교적 옳다고 생각하는 몇 사람의 의견을 기초로 어촌마을 단위로 광전문제를 엮어매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사회에서 법은 열심히 일하는 어민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어민들은 생각한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징벌하고 분쟁의 원인을 근절시켜줄 것을 법에 호소해 보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만 이중삼중으로 고통받았다고 증언한다. 광전소유관계에 대한 해결도 전문적으로 어촌사회를 연구한 다음에 올바르게 법을 만들어 주면 이를 믿고 따르며 해결이 될 것인데, 그런 관심과 연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항존할 수밖에 없다. 광전권리관계에 있어 지금의 휴면상태는 싸움에 지친 나머지 관심도 없어지고, 경제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특별하지 않으며, 수확량이 크게 감축한데서 주된

원인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법을 통하여 타당하게 제시되어야 어촌사회가 또다시 동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어촌민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철저히 못본척하며 버리고 있다고 분개한다.

3. 慣行權의 認諾

(1) 認諾調書

곽전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곽전주 측이 끊임없이 권리확인을 요구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수산업법 규정이 공동어장의 漁民共同體性을 선언한 것에 근거하여, 그리고 어민의 조직체계에 있어 조직의 관리자로 피선된 관리자류인 비곽주측 인원들에 의해 쉽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곽전주들은 겨우 곽전소유권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慣行權의 認諾調書가 관할 법원에 의해 만들어졌다(1974년 조사자료, 참조). 곽주측에서 볼 때 분쟁에 있어 핵심은 곽전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이 인락조서는 곽전주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곽전을 관리·수익해왔으므로 해당 어촌계의 관할 어장에 계속해서 입어할 수 있는 권리를 당시의 관할 어업협동조합장이 이의없이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서 소유권 주장과는 의미가 다른 문건이 된다.

(2) 未完의 紛爭解決

인락조서는 곽전주들이 겨우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의 어장에 입어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 받게 되었으나 이는 곽전의 분쟁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결정이며 자료라 할 수 있다. 물론 당시의 어업협동조합장은 곽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부정하면서 어촌계의 공동어장에 대한 수익권을 박탈할 의도로 강력히 나서다가 이를 인락하므로써 자신이 상당히 양보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려 한 의도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 정도로 당시의 곽전주들은 어촌사회조직계통에서는 밀려나 있었으며 심한 경우 어촌사회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익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았다고 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얻게 된 인락조서인지라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었다.

4. 藪田의 관리작업과 분쟁이후의 지배유형

(1) 藪田의 관리작업

어촌 현지에서는 가을철 농사 수확을 끝낸 후 노동력을 동원하여 광전의 관리작업인 제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를 「碁洗作業」 또는 「계딱기 작업」이라 한다. 농사철 들판에서 일에 열중하는 농부들의 모습처럼 이때는 바닷가에 산재하는 바위들마다 어촌민들이 동원되어 「실게」 또는 「실겅대」라는 어구로 바위에 붙은 잡된 해초의 제거 작업을 한다.

광전의 소유형태에 따라 노동력의 동원 형태는 각각 상이한데, 개인의 사유가 인정되고 있는 어촌의 경우는 대개 일용계약에 의해 하루에 얼마씩의 품삯을 책정하여 며칠동안에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최근 들어서는 자연산 미역의 품귀와 가격의 앙등으로 돈으로 받지 않고 이듬해 봄의 생산 시에 하루에 몇 「오리」(미역 한 「條」의 다른 표현)씩을 받기로 계약하고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에 약 7~8시간을 신체의 절반 이상을 바다에 잠근 채 물 속바위에 실겅대로 해초 제거 작업을 수행하기는 육지에서 행하는 농업 노동에 비해 몇 배의 힘이 든다.

그러나 비광주들의 공동 소유의 형태에 있어서는 각 조별로 또는 각 호별로 정해진 단위의 노동력이 참가하여 각자 할당된 광전에 나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보내는 식의 무성의한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개인 소유의 경우는 소유자가 최선의 작업을 독려하며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많은 정성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광전의 경우는 전문적인 잠수부를 동원하여 기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임금이 매우 높다.

절기에 따른 노동력 투입 광전 관리 방식은 농업에 있어 전담관리와 유사점이 대단히 많다. 단지 생산의 흥풍을 결정짓는데 있어 인위적 요소가 개입될 수 없이 오로지 자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농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藪田紛爭 이후의 支配類型

동해안 일대 연안의 광전소유관계는 1970년대 후반 이래로 각 어촌 마을 단위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다음의 세 유형으로 대별되어 관리·수익되고 있다.

1) 제1유형 : 완전소유

개인의 사소유권이 조선 시대 이래로 전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매매는 물론 상속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여타의 재산과 똑같이 비율에 따른 분할 또는 전체를 일괄하는 매매 또는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 인정에 있어서는 마을 단위의 특성이 가미되어 소유자에 대한 권리능력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소유권을 일반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다시 현지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광전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마을 유형과 비록 외지로 주소 및 거소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광전의 소유권 행사에는 전혀 제한이 없는 마을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번째의 경우는 현지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촌 계원의 자격이 있어야만이 광전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는 어촌 사회의 권리와 어촌 재산은 어민이 가져야 한다는 극히 소박한 관념에서 형성된 자치적 결론이다. 이를테면 농지에 있어 경자유전의 개념이 광전에 적용된 경우로 보아진다.

그런 반면 두 번째의 경우는 한 번 광전을 소유하게 되면 현지 어촌에서의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평소에는 도시에 나가서 삶을 하다가 광전의 관리와 채취를 위해서만 일정 기간 어촌 마을에 머물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가을이 되면 며칠씩 머물면서 광안에 대한 기세 작업을 해놓은 다음 봄이 되어 수확 시기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미역을 채취·건조하여 상품으로 가져가거나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가는 경우를 말한다.

2) 제2유형 : 제한소유

광전의 관리 및 수익을 관행상의 소유권자(현재까지 상속 또는 매매를 통해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넘겨주는 대신 연안의 마을어업(제1종

공동어장)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여타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의 채취 수익에 대하여 어촌 공동체가 나누는 이익분배에 있어 그 분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전에서의 수익을 전부 취하게 되는 형태이다.

3) 제3유형 : 공동소유

가장 많은 어촌 마을이 취하고 있는 형태로 어촌민(어촌계원)전원이 공동으로 광전을 관리 수익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일정 자격을 갖는 어촌 계원이 추첨 등의 방법으로 조를 나누는 다음 가을에 광전기세작업부터 공동으로 참여하여 그 수익을 해당 조원들끼리 공평하게 배분해 가는 방법이다. 이는 광전분쟁시 비광주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형태로 광주가 행사해오던 관행적 소유권을 전면 부정하면서 제1종공동어장내에 있는 모든 어패류 및 해조류는 어촌민 모두가 공동으로 관리 수익한다는 원칙에 집착하여 타협없는 싸움으로 얻어낸 비광주들의 획득분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법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앞세우면서 수산법의 한 조문을 양보할 수 없는 명제로 삼아, 역사속에 내재하는 공평성 및 사회의 평화적 질서 유지를 핵심 요소로 하는 관습법의 내용을 외면한 채 광전 소유권을 전면 부정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사법부가 수행해야 할 실체에의 접근 의지 결여와 소극적 태도, 행정 권력의 문제 해결 의지 결여 등이 함께하면서 관행이나 관습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상실되어갔으며, 결국 수적으로 우위였던 비광주 측이 실정법 한 조문을 바탕으로 기존 질서를 완전히 전복하는 상태를 초래하기까지에 이르렀다.⁴⁵⁾

45) 여기서 당시를 기억하는 한 사람의 증언을 참고해보기로 한다. 당시 광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소송(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한다)이 제기된 상황에서 어느 날 법원에서 나왔다면 서너 명의 관리가 어촌 마을에 와서는 증언자에게 대단치 않은 말로 "저기 바위가 누구 거요" 하고 묻기에, 「○○○네 미역들」이요 하면서 몇 개를 말해 주었더니 별 응답도 없이 10분도 채 안 머물고는 승용차를 타고 도로 가 버렸다. 그런 다음은 누가 왔다는 얘기도 없었고, 싸움은 예전과 같았고……그래서 법이고 공무원이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그때를 회상해 주었다. 특히 다른 사회에서 삶을 해 온 사람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회와 영역에 대한 관행이나 관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탐색과 연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나 책임의식도 없었던 결과, 수백 년의 어촌 문제를 접근하면서 보여준 관리의 행태는 편리한 실정법 중심 사회로 결론지워질

이같은 제3유형은 분쟁 초기에 완전한 공동이 실현된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가 분쟁의 발단으로부터 몇 년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이르게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처음에는 광전주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의미에서 광전주가 가진 광전의 1/2지분을 광전주 몫으로 하고 나머지 1/2씩 할양된 수인의 광전주 몫이 모아진 것 전체를 비광주들이 공동 몫으로 하여 이를 공동으로 나누어 갖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공동의 몫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비광주 전체가 노동력을 투여하여 생산을 균등 분배하는 방법과, 아예 또 조를 짜서 1/2씩으로 분등된 광전에 대해 추첨을 통한 배정에 의해 조별로 관리 수익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小藪主⁴⁶⁾라는 주체가 또 하나 있는데 이는 광전을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광전의 규모가 너무 적어서 자기 소유의 몫을 가지는 것 외에 비광주들의 조에 합류되어 일정의 몫을 또 더 가져가던 광주를 말한다. 이를테면 마을 전체가 광전으로부터의 소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동으로 나누어 갖자는 이념이 깔려 있었던 것인데, 이같은 관리 및 수익 배분 방법이 어떠한 발상으로부터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형성된 결론인지를 추적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 광전주들이 비광전주들로부터 인정받던 그나마의 소유권도 불과 몇 년이었고 광전주와의 분쟁 대립이 심해지면서 제3유형은 대개가 어촌민의 완전 공동화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광전주에 대한 우대적 1/2지분은 모두 없어진 채 공동의 평균분급으로 결정되고 말았다.⁴⁷⁾

수 밖에 없는 한국법 운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46) 藪主에 대해서 소유 규모별로 분류한 현지 어촌 사회의 명칭이 있는데 大藪主와 (中)藪主 그리고 小藪主가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에는 생산량이 얼마 이상이라든가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절대적 기준은 없는 것이고, 어촌 마을마다 개략적으로 면적을 보아서 평균되는 범주의 광전을 所有하는 광주를 中藪主라하고 그 범주 이상을 소유하는 광주를 大藪主, 평균 이하를 소유하는 광주를 小藪主로 불렀다.

47) 어촌 현지 조사에서 추적해 낼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의결 과정을 보면, 어느 마을에서 어떤 형태로 광전 운영에 대한 당해연도의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를 응용하거나 모방하여 다른 마을이 바로 활용하는 경향이 확인하였다. 특히 非藪主들이 수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非藪主들이 자신들의 이익 되는 최근 동향을 우선해서 주장하고 이를 방어하는 광주측이 비광주측의 비양심적 행위를 비난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론은 당시 어촌 마을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은 광전의 관리·수익 및 소유관계에 대한 회의는 보통 가을철 광전 기세 작업을 앞두고 주로 저녁 시간에 회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때는 광주와 비광주가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와중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기세 작업의 적기를 놓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비광주들이 행하는 광전의 관리 수익은 항상 1년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10월경에서부터 이듬해 미역 채취가 끝나는 5·6월경까지 배정된 광전에서 공동작업에 의해 수익을 취하였다.

蘆田을 둘러싼 경상도의 동해안 일원은 이처럼 다양한 관리·수익 및 소유 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지금은 비교적 평온하게 광전을 임하고 있다. 이는 광전 다툼의 실익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하락해 있는 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광전의 소유를 그렇게 주장하고 집착하던 당시의 광주 및 그 가족들은 1970년대 이후 농어촌 탈출이라는 사회 변혁의 대류에 편승하여 많은 인구가 어촌을 떠났으며, 또 의식적으로도 분쟁의 현장을 벗어나려 도시로 나간 사람들도 있다.⁴⁸⁾ 그렇지만 광전에 대한 소유 관념은 경제성에 관계없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 어촌 사회에서 광전에 대한 소유 관계는 철저히 구명되어야 할 중요 과제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어촌 계장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그쪽이 조금은 유리한 상황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어촌마을의 사람들 인심과 수준은 광전에 대한 관리 분배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서 평가할 수 있었다. 광전 소유에 대한 분규가 각 마을마다 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예전부터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면서 다른 차원의 채취나 개발을 통해 마을의 안정을 구가해 온 마을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칭송이 주어졌음은 물론 마을의 富도 더 키워갈 수 있었다. 이렇게 평화 유지가 가능했던 마을들은 人心이 좋은 마을이라는 칭송이 있었는데, 그 마을 평화유지의 중요핵심은 마을의 지도적 인물들이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따라서 마을 공동 재산도 잘 지키면서 광전분쟁도 미리 예방해 갔다는 특징을 지적해 주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받는 지도자의 행동으로부터 결과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어촌의 제1종공동어장에 대한 산물의 관리 및 매매 등에 부정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힘주어 말하였다. 어촌민들이 모르는 것이 많아서 글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챙겨 먹었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부정이 항존했던 어촌 사회의 특성이 또 한 번 드러나고 있었다.

48) 그렇지만 전언에 의하면 어촌을 떠난 광전주중에는 지금도 경제성과 관계없이 소유적 애착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많다.

第5章 結 論

1. 假說의 檢證

(1) 水産業法の 人間像

법이 어떠한 인간상을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 법의 제정과 집행의 방향이 좌우된다. 이른바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은 법제와 개별법에 따라 다르다. 한국과 독일의 그것이 같을 수 없고 민법과 상법의 그것이 같을 수 없다. 독일법제를 연원으로 하는 근대 民法典의 인간상이 '農民'이라고 한다면 일본법제를 연원으로 하는 현대 水産業法制의 인간상은 漁民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해남부 지역 어촌사회에 대한 제1차 현지조사 결과는 현행 수산업법제가 어민을 주된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민들이 향유하였던 관습상 어업권을 부정한 사례가 그렇고 외부 자본가들에게 주요 어업권을 설정한 사례가 또 그렇다.

(2) 公示慣行

수산업법상의 漁業權은 物權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公示를 필요로 한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권원부를 통한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성문법상의 공시방법으로 공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관습상의 공시방법은 이를 보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와 신안군 흑산도(다물도) 지역에 대한 제1차 현지조사 결과는 관습상의 공시방법이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울주 해안의 채암비와 흑산도(홍도)의 海巖에 표시한 明認方法이 그 예이다.

(3) 物權法定主義의 例外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권원부에의 등록을 강제함으로써 物權法定主義를 관철하고자 한다. 그러나 物權法 스스로 物權法定主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民法 제185조 : 物權은 法律 또는 慣習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953년의 수산업법도 이를 원용하였다.

동해남부 지역에 대한 제1차 현지조사 결과 확인한 바 미역바위(藪巖)를 중심으로 형성된 '入漁慣行'은 권리의 역사와 양태에 비추어 慣習法上の 物權性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즉 수산업법에 기초한 일반 어업권이 法定物權에 해당한다면 입어관행은 慣習物權에 해당한다.

(4) 所有權의 實體와 限界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使用權·受益權·處分權의 3가지 권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관습상 소유권은 이러한 전형을 벗어난다. 동해남부와 서해남부에서 관찰된 미역바위(藪巖)는 미역의 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할 뿐 다른 수산동식물의 채취나 레크리에이션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또한 미역채취에만 이용된다는 점에서 사용권과 수익권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역바위는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권의 대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미역바위는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처분권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역바위는 대부분 현지인 상호간에 매매가 일어나고 다른 목적을 위한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藪巖公概念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살아 있는 법

관습상의 입어권과 공시방법은 한국의 어촌사회에 '살아있는 법'(lebendes Recht) 질서가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1953년의 水産業法이 살아있는 법을 수용하였음은 어민을 수산업법상의 '인간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고 한국 법문화의 正體性(identity)을 확인시켜주는 단서이었다. 그러나 1990년의 수산업법(附則 제11조)은 私法秩序의 근간을 이루는 物權法의 원칙을 부정하고 개발사업자 내지 어업자본가의 요구에 굴복하는 처사이다. 행정편의를 위하여 慣習上 物權을 부정하는 행태는 正法이 아니라 不法 그 자체이며 어촌사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公權力의 橫暴'이다. 사회통념상 공인되어 있고 공시방법도 갖춘 입어관행을 실정법상의 어업권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권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관습법상 입어권에 대한 수산업법의 배타적 태도가 지속될 경우 피해당사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財產權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헌법률심사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關聯問題

(1) 調查所感

농·어촌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농촌사회의 한 지엽정도로 관념하면서 어촌사회를 방치해온 결과 어촌정책은 독자성을 갖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어촌은 독자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채 스스로 존립방법을 찾다가 지쳐있는 현상이 되고 있는 듯하였다.

(2) 調查上の 隘路

어촌사회는 외부인의 접근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 외부인에 대한 불신은 대단한 정도이다. 어떤 문제도 풀어주지 못하면서 무슨 조사나, 연구나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사등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개발을 위한 정보로 둔갑되어 곤란을 치른 경우도 있었다.

(3) 調查의 限界

당시 어촌사회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어촌계와 어업협동조합조직이 있었는데, 이들 조직이 당시 분쟁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접근해 보려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직들이 당시의 자료에 대해 거의 보관을 하지 않고 있었다. 객전문제 뿐만 아니라 어촌사회 관리의 전반에 대해서 보관하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겨우 구득하여 조사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자료보관과 어촌사회 관리자들의 관리능력 및 관리실상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과 함께, 이에 기초하여 어촌사회의 불신은 구조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 하였다.

(4) 被害意識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그로 인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오고 있음에도

어느 누구하나 어촌문제를 고쳐주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태풍피해나 적조피해등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보상 논의가 나와서 좀 달라질려나 보다 해서 한층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면 예전과 똑같은 보상결과외에 다름이 없다. 어촌민들의 표현에 의하면 어촌을 지도·관리하는 관공서 담당자들과 어촌현지의 관리급 임원들은 별 어려움을 모르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신기해 보이기도 한다.

(5) 所有觀念의 後退

대담자로 지목하지 않고 만난 일반 어촌민들의 대부분은 관전의 개인 소유관계를 당연히 인정하는 답변을 해주면서, 지금은 개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법이 언제부터가 바뀌어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전한다.

(6) 法執行機關의 限界

藪田에 대한 권리 다툼은 어촌사회의 생사를 좌우할만큼 절박하게 계속되었음에도 법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겨우 폭행·상해정도의 단순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법 담당자 또는 관청이 비록 한 개인의 권리구제행위로 나타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이해나 그 배경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졌더라면 현장 조사와 함께 법률적 문제제기가 그 당시에 이미 가능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분쟁에 의한 사회적 손실이 일찍이 차단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水産業法·漁船法の 改善點

어망에 관한 허가를 현실화하기를 희망한다. 수산업법에서 3중망에 대하여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통발업에 대하여는 허가를 하고 있다. 봉장어나 게를 잡는 데에 사용되는 통발은 사실 망이 아주 작아서 치어를 많이 잡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므로 통발에 대하여도 그물코의 크기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3중망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

調查資料

1. 東海 南部 : 浦項 · 慶州

事前涉外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상준 계장

연락처 : 011-524-3060, 0561-42-8001(사무실), 0562-91-3060(집)

참고사항 : 경제학 공부 · 향촌사회사 연구 · 어촌계 인지도 높다.

경주 감포 대한인쇄(株) 이시우 상무 0561-771-1910/0561-749-8980/017-533-1910

감포수협 이 완

주소 : 경주 감포 전촌리

연락처 : 0561-44-3240, 0561-44-3668, 015-725-3093

참조사항 : 미역돌에 해박하다. 부친으로부터 미역돌을 상속받았다.

포항 구룡포 이육자 0562-84-7881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창길리 373번지

포항 수산업협동조합 윤중근 상무 0562-47-0856 · 7 (F. 41-6379)

포항 대보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고운학 위원장 0562-84-8540 (F.84-6510)

포항 대보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이성환 부위원장

주소 :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60-2 전화 : 0562-84-9391/011-518-9391

대동배 1동 김성욱 중매인

휴대 : 011-502-5156, 0562-76-8877(집)

대동배 2동 54번지 박태수

연락처 : 0562-84-8944

발산2리 186번지 허인재

참고사항 : 광주 · 어촌계장 역임

대동배 1동 광주 : 김영진 · 김학수 · 김송정

영덕 영덕세무서 이기훈 0564-32-7711/0564-33-2101 · 3/0662-46-0129(집)

영덕 창포 법인어촌계 천영수 0564-33-2032

울산 문화원 최해성 사무국장

(1) 구만리 : 서영만

주 소 : 포항시 남구 대보면 구만1리 42번지

면담일자 : 1997년 4월 29일

인적사항 : 66세 (임신生)

대보 초등 1회, 포항중 4회, 포항중고 1회,

수산업협동조합 상무 역임

현재 대보어린이집원장

* 개 황

: 場배 · 근검절약

6.25 때 人民軍들이 들어오지 않아 피난을 가지 않았다.

포항다니는 '場 배'를 운행하였다.

벼가 귀해서 땅에 떨어지면 주웠다.

전에는 '식은 밥'도 버릴 수 없었다.

"밥이 쉬기 전에 끓여 놓으라."

요즘 아이들은 신발도 꾸부려 신는다.

짚신 신고 다니던 이야기에 요즘 젊은 애들은 반발한다.

그러나 '못살던 때 이야기'라고 하여 경시하지 말라.

* '境界' 紛爭의 배경 · 양상 · 경과

: 어장 경계 측량후 지도에 표기

강사1리와 강사2리는 20년전까지만 하여도 당시 제1종 공동어장에서 전복, 성게(운단), 천초(우무), 미역을 공동으로 채취하였으나 미역 가격이 인상되자 공동어장에 대한 경계분쟁이 시작되었다. 상호 불신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주먹다짐과 역측이 난무하였다. 어장에 감시선과 감시원을 파견하여 서로를 감시하였다. 상대편 마을로는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기에까지 이르렀다. 결국에는 기구 측량을 통하여 두 마을의 어장'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도에 표기함으로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 採取慣行權

: 부표로 어장 경계 표시 / 현재에는 평온유지

대보면 구만1동과 구만2동 사이에 존재하던 어로채취 慣行權은 현재에는 어촌계장들끼리 측량후 부표를 띄워 경계를 표시하되 바람·조류의 오차는 인용하여 洞間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해녀 작업상의 오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녀들끼리 말다툼에 그치는 정도이다. 관행권은 20년전 상해 고소사건 이후 포기되었다. 현재에는 평온하다.

* 自然産 돌 미역 생산량

: 소득감소 · 여전히 높은 가격

구만바다 수중등대 부근의 미역·성게 생산량은 25년전까지만도 1가 구당 당시 50~60만원(중곽 1단에 3만원 상당)의 소득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재는 양식미역의 보급, 기름 값의 인상, 일본 북해도산 미역의 증가로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이다. 자연산 돌미역은 여전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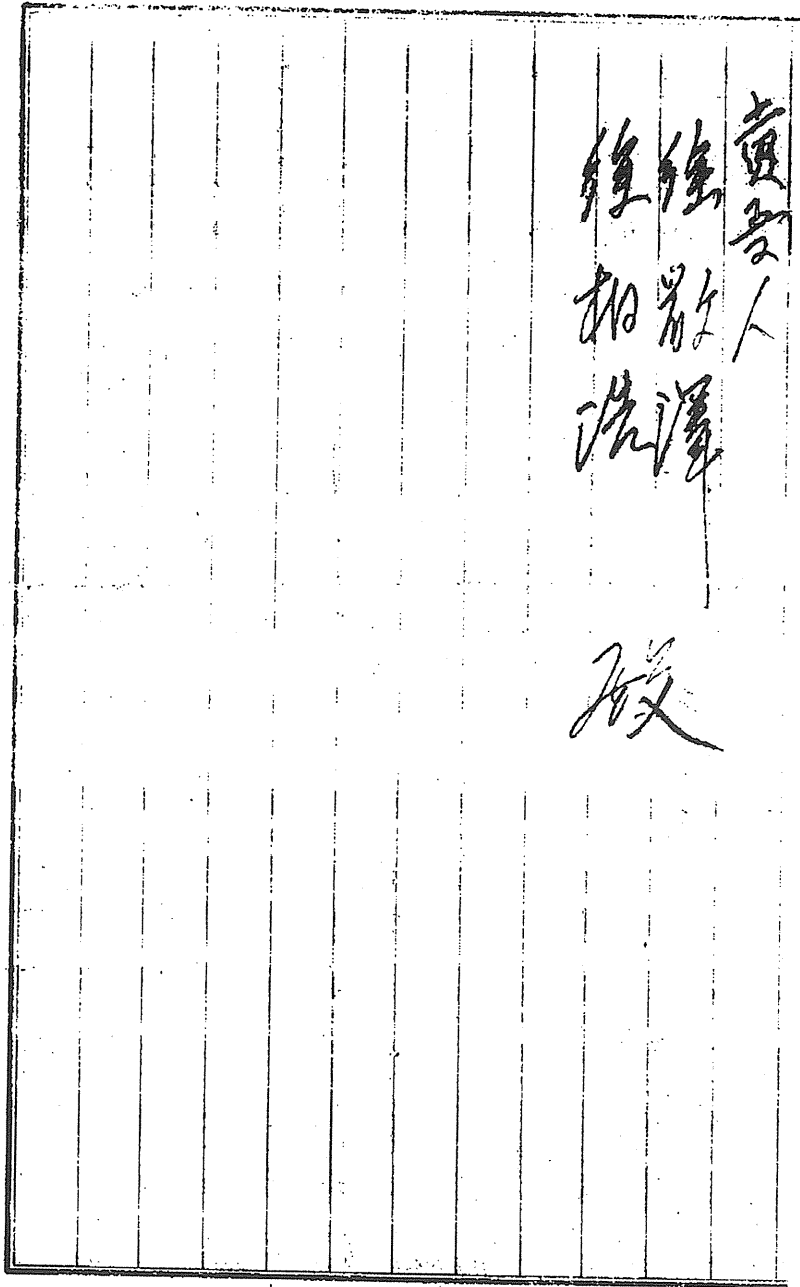
* 미역바위(藪巖)

: 개인소유 · 매매 관행


미역바위(藪巖)에 대한 관행권과 관련하여서는 문전옥답의 매매문건 제시등을 통하여 보존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藪巖은 고대부터 개인소유·매매가 가능하였으나 수산업법에 의하여 제1종 공동어장화하였다.

砂岩賣渡契約書
 入金五萬圓也
 右金額之和布砂岩代金の正引費
 取立
 所在地即九龍浦是九島浦一五
 橋和岩在便引引引引
 右金額之和取引之賣渡金は相違意之引
 賣渡人 徐正其
 立會人 金宗忠
 朴在港
 徐宗忠
 檀証四三二年
 十月初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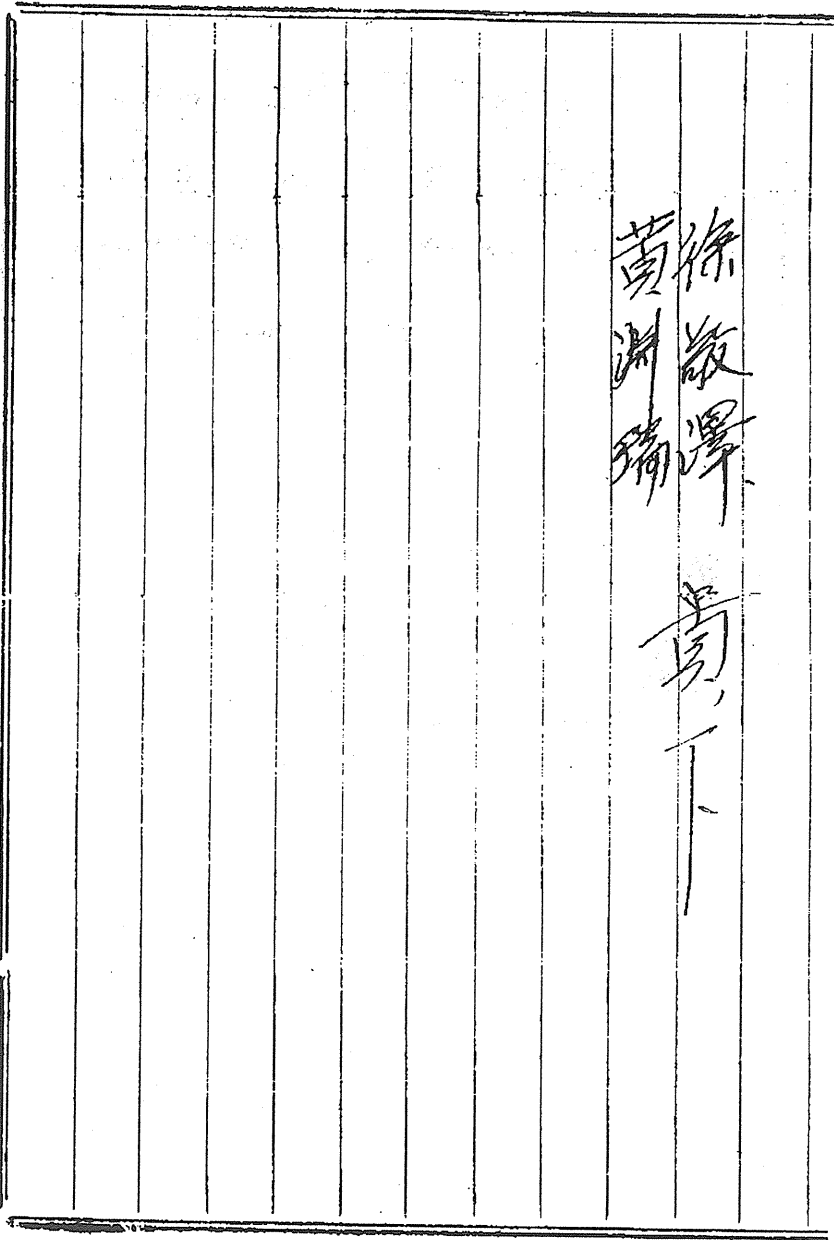
자료 1-① : 1949년의 미역바위 매매문서 (구만리 소재 : 앞면)



자료 1-② : 同前 뒷면
(매수인 서경택 · 서상호)

藎崙山賣渡契約書
 新在地 延平郡九龍埔尾九爺五地先(以生
 金自林宅五)
 賣渡人 金九爺五所屬
 友 藎崙山延平分之處行使權之
 代 金明永 賣渡人 代 金一 時領收
 後 日 何 等 賣渡 不 提 記 以 契 約 記 事
 梅 紀 四 九 二 年 陽 二 月 初 七 日
 延平郡九龍埔尾九爺五
 賣渡人 元定 印
 延平郡九龍埔尾九爺五
 賣渡人 金永源


자료 1-③ : 1959년의 미역바위매매문서
 (구만리 소재 : 앞면)



자료 1-④ : 同前 뒷면

(매수인 : 서경택 · 황연서)

此 爲 某 人 之 書
 手 書 實 業 家 吳 鶴 翁 者 亦 難 也
 不 過 通 俗 故 譯 書 一
 則 正 引 實 業 家 吳 鶴 翁 印 於
 光 緒 三 十 一 年 十 月 十 日 子

包 以 郵 龍 博 卷 方 兩 一 也
 每 條 者
 立 命 人
 蘇 州 吳 鶴 翁
 蘇 州 連 伊 仲
 光 緒 三 十 一 年 十 月 十 日 子
 加 註 外 姓 以 相 錄 無 誤
 收 心 敬
 一 實 業 家 吳 鶴 翁 印 於
 一 行 傳 者 吳 鶴 翁 印 於
 一 實 業 家 吳 鶴 翁 印 於
 一 蘇 州 吳 鶴 翁 印 於
 一 蘇 州 吳 鶴 翁 印 於

자료 1-⑤ : 1967년의 미역바위매매문서 (구만리 소재 : 앞면)

金 銀 收 據
 四 萬 五 千 圓 整
 此 項 金 銀 係 於 己 年 九 月 廿 四 日 由 國 道
 內 務 部 稅 務 總 局 瑞 興 分 署 繳 納
 金 額 五 萬 圓 正 收 據 一 紙
 查 該 項 金 銀 係 於 己 年 九 月 廿 四 日 由 國 道
 內 務 部 稅 務 總 局 瑞 興 分 署 繳 納
 金 額 五 萬 圓 正 收 據 一 紙
 瑞 興 分 署 稅 務 官 印
 金 銀 收 據

자료 1-⑥ : 同前 영수증
(매수인 : 박종기)

* 미역바위, 所有關係

: 所有者 비율 1할 / 다른 魚物은 均分 / 分배조건 - 기세작업 참여

곽암 못가진 자는 100명중 90명 정도이다. 가진 자는 10명의 소수지만 유력·우세하다. 곽암 소유양태는 마을마다 상이하다. 구만1리와 대보 2리의 경우 곽주는 자기 들의 미역만 전유하고 다른 공동구역의 미역은 채취에 있어서 배제된다. 다른 어물(운단, 전복, 천초등)은 같이 均분한다. (대보2리도 같다.) 곽암의 소유와 관련한 20년전 경주 지원의 판례는 “곽암은 매매와 상속이 불가능하고 1대에 한하여 사용·수익의 관행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가을에 기세작업(제조작업)에 참여 않으면 분배몫을 주지 않는다.

* 생산량 증대·품질보증 운동

: 어촌계장 재임시(1981년) 체험담

2년간 전복 안 잡기 운동을 전개하여 상징적 의미로 전복씨 뿌리기, 8cm 호미 지급, 해녀들에게 채취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0관까지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품질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후꾸오까, 도쿄, 오사카 등지를 견학하였다. 품질보증 찌지(라벨)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후 품질가공에 노력을 기울였다. 해녀들은 반신반의하였다.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의식이 강한 일부 해녀들은 친척들을 동원하여 품질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며 다른 해녀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수협은 장부를 대조하며 품질을 확인한 후 효용성을 인정하였다. 수산청에서 공문을 보냈다. 1982년 12월 21일 청와대에서 훈장(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水産増産王 칭호를 들었다. 경북내 어촌들을 순회하며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 共同牧場

: 석축 / 범 사냥 / 속담

터 : 대보면/동해면 경계
석축 흔적이 있다.

연혁 : 조선시대 군마양성

“군마는 염분이 묻은 풀을 먹어야 한다.”

주민들이 목장토를 관리하였다.

“봄 셋바람(北東風)에 목장의 말 얼어죽는다.”

“목장쳐녀 시집갈 때까지 쌀 서말 못 먹고 간다.”

가끔 범이 말을 잡아 먹었다.

포수들이 범 사냥에 나서면 처음에는 '위험한 짓'이라고 하여 罰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사냥에 나서면 賞을 내렸다.

모친이 어렸을 때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범을 옹기하는 것을 봤다.

임부들이 못보게 범의 머리를 감싼다.

범을 행여에 신고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 장기 원(현감)에게 전달하였다.

* 洞山管理

: 명의신탁 · 소유권분쟁

여러 필지(8필지) 30만평 내외의 동산이 있었다.

이 토지는 예전의 공동목장에 소속되었던 터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양수契에서 관할한다.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수탁자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피해사례 2건).

양수계원들은 영일군의 지원받아 식목하였던 기록등을 근거로 항변하였다.

계원들은 경주地法에서 패소하였지만 대구高法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1995년).

洞山 토지를 처분하여 계원들이 분배하고 지금은 1필지만 남아 있다.

* 양수契

: 草軍契 · 首草軍 · 마을행정

양수계는 草軍契의 후신이다.

火木의 필요성이 컸던 시절에 결성되었다.

直孫들의 모임이다.

150호중 63호가 계원이다.

관리규약(1978년 개정)이 있다.

契長 아래 10명의 대의원이 운영한다.

과거에는 契長을 '首草軍'이라고 불렀다.

日帝時代에는 洞 소사가 외쳤다 : “초군령 나오시오.”
草軍會에서 마을 행정을 다루었다.
동사무소에 모였고 區長과 首草軍이 모임을 주재하였다.
草軍會는 해방후 양수契로 바뀌었다.

* 法意識

: 不法漁撈 · 개발위원회 · 주민총회 · 정치권 떡 값

불법어로시에는 조합원을 제명해야 한다.

洞行政 : 개발위원회가 대행한다.

주민총회 : 주민들 잘 살게 되자 이기주의가 팽배되었고 주민총회도 없어졌다.

漁村契 : 총대회의에서 운영한다.

정치권의 떡값 타령 : 韓寶(정태수)사태 聽聞會를 이해할 수 없다.

“현금을 주다니 외려 천박해 보인다.”

“떡 값이라면 명절 때에나 줄까 또 몇푼 되지 않아야 한다.”

“떡 값은 무슨 떡값인가? 차라리 ‘술 값’이라 지칭해야 한다.”

(2) 구만리 : 윤대용

주 소 : 대보면 구만리 19번지

나 이 : 1954년생

인적사항 : 구만1리 동장 · 어업경영인後繼者 1호 · 어업경영인협의회원

면담일자 : 1997년 8월 13일

* 미역採取權(1)

: 行使料 · 住民意識(채취권) · 相續慣行

구만리에서는 곽주들에게 미역들의 채취권을 전량 인정한다.

채취량의 일정량(20%정도)을 행사료 條로 어촌계에 냈다.

일부 곽주들은 이를 적게 주려고 어촌계 총대들과 막후에서 접촉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의식은 미역들의 소유권은 부정하지만 미역채취권은 긍정한다.

미역들의 상속은 법적으로는 불가하지만 慣行上 긍정한다.

水協에서는 상속이 불가하고 “어촌계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 미역採取權(2)

: 마을간 紛爭事例

30년전 구만1리와 2리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호미곶 등대 윗쪽 수중 등대 주변은 물량이 풍부하다.

당시 주요 수산물은 미역 · 천초(우뭇가사리)이었다.

종래 채취미역은 구만 1리와 2리 두 마을이 반씩 나누었다.

사라호 태풍이후, 구만 2리는 바다 측량을 제안하였다.

실측후 거꾸로 300m 정도가 구만 1리에 속하게 되자 두 마을 사이에 분쟁이 빚어졌다.

사람들이 다치고 형사 입건되기도 하였다.

경주지방법원 판결 : 경계는 구만 1리가 찾고 등대 주변의 미역은 7대 3의 비율로 나눈다.

에피소드 : 혐의자들은 검찰청 화장실에서 “검사가 높냐? 형사가 높냐?”고 실랭이하였다.

“형사가 조금 높다”는 말에 담당 검사(이진우 변호사)는 실소하고 혐의자들을 석방하였다.

* 미역들의 權利關係

: 外地所有者 · 미역돌出捐 · 2중수혜是非

다른 마을의 주민(돌소유자)도 이 마을에서 채취권을 인정받는다. 경비과다 때문에 마을 어촌계에 미역돌을 넣어버리는 광주도 있다. 공동화된 돌에 대하여서는 마을 전체가 채취하여 분배하였다. 공동화된 돌을 뒤에 다시 되돌려준 사례도 있다. 광주(현재 15명)에게는 어촌계원 자격을 부여한다. 광주인 어촌계원에 대하여 '2중수혜'라는 시비가 있다.

* 漁村契員

: 요건 · 현황

어촌계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연간 60일 이상 어로에 종사하여야 한다. 구만 1리의 세대주 106명이 어촌계원이다. 이 숫자는 164가구(184세대)중 공무원 · 군인 · 위장전업자를 제외한 순수 주민의 8할 농업은 부업이다. 농협조합원은 74명이다. 이웃 대동배는 주민 거의가 계원이다.

* 미역돌 私有化의 문제점

: 立法意見

水協의 미역돌 '상속불가론'은 개발에 따른 보상문제를 근거로 한다. 개발시 돌 소유권에 대한 보상 사례가 없다. 미역돌의 사유를 인정하면 공동어장 어업에도 문제를 낳는다. 미역관행권자가 해녀를 고용하여 미역을 따면서 다른 해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에는 미역의 소득비중이 낮아져 관심들이 줄어들었다.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하여 관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 共同漁場 境界

: 水産業法 개정의견

東海는 간만의 차이가 1자 내외(30~40cm)로 서해나 남해와 사정이 다르다.

동해에 적용되는 공동어장법은 다른 바다와 달라야 한다.

예컨대, 전북의 최적서식지는 수심 7m선이다.

수심에 따라 마을어업과 정치망 및 잠수기 어업의 경계가 구분된다. 1996년에 水産業法 개정 입법예고 때 어민들은 “수심을 더 깊게 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는 ‘마을어업’의 수심을 종전대로 환원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주민의견은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동어장 地籍圖 안에는 水深 20~30m 부분도 있다.

(11조) 잠수기 어업자들이 공동어장 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분쟁이 빈발한다.

투자이익이 외지로 빠져나간다.

定置網의 경우에는 종전 慣行을 漁村契가 인정하여 별 문제가 없었다. 慶尙北道 당국자의 설명에 의하면 “海女 작업이 가능한 수심은 15m이다.”

해녀 작업이 불가능한 구역은 관리선(잠수기)이 작업하여야 한다.

* 水産關係法の 法的安定性

수산법령은 수시로 변한다.

지역적으로도 慶北法과 慶南法이 서로 다르다.

선망(멸치원형망)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 調査所感

어촌계는 재산권 부분에서 농촌보다 공동체의식이 강하다.

어촌의 결속은 마을 공동체가 아닌 어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어업 분야에서의 경쟁촉진 및 생산촉진이 요망된다.

(3) 구만리 : 서용전

주 소 : 포항시 남구 대보면 구만1리 80번지

나 이 : 54세

면담일자 : 1997년 8월 15일

* 미역바위(1)

: 賣買意識 · 權利意識

미역바위는 돌 마다 '진저리 짬', '검둥바위' 등으로 불린다.

미역바위를 사고 팔 때에는 바위 전체를 샀다.

'돌' 자체를 사고 팔았다.

다른 바위에서 미역을 채취하면 불법이다.

어촌계나 수협에서는 入漁權만 인정하려 한다.

미역돌 없는 사람들중의 일부는 "미역을 직접 뜯어가는 것('작업채취'라고 말한다)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非곽주들이 논밭을 살 때 곽주들은 미역돌을 샀다."

表 示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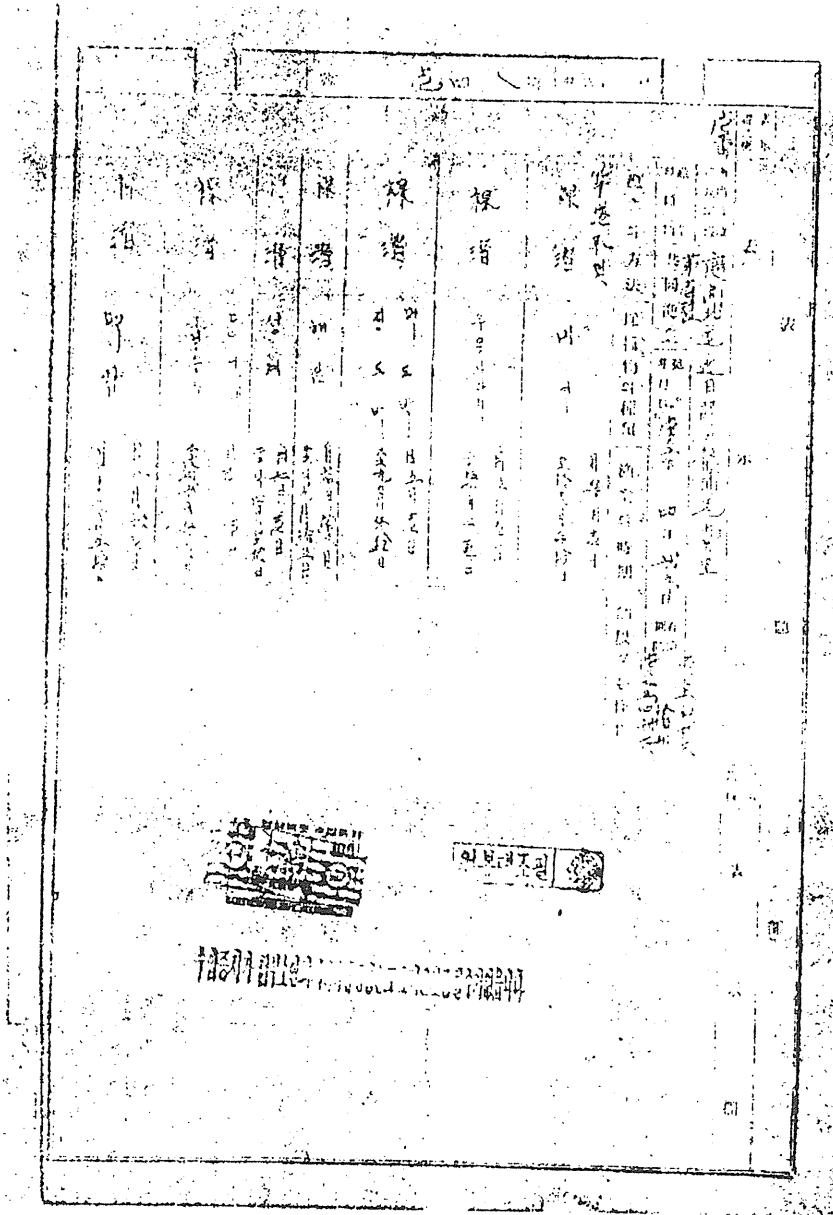
1:10000

자료 1-① : 입어권등록원부(1965년) 제1면 입어등록번호 제15호
 / 면허번호 제841호
 입어할 수면의 구역 - 경북 공동어업(1종)면허
 제841호 어장구역내
 채포물의 종류 - 미역

The image shows a document with a grid-like structure, possibly a ledger or a list of entries. The text is extremely faint and obscured by heavy noise and grain. On the right side, there are several vertical columns of text, some of which appear to be larger characters or headings. The overall appearance is that of a poor-quality scan of a handwritten document.

자료 1-⑧ : 同前 제2면

입어권자 - 구만리 김만술 / 대보리 서천석외 24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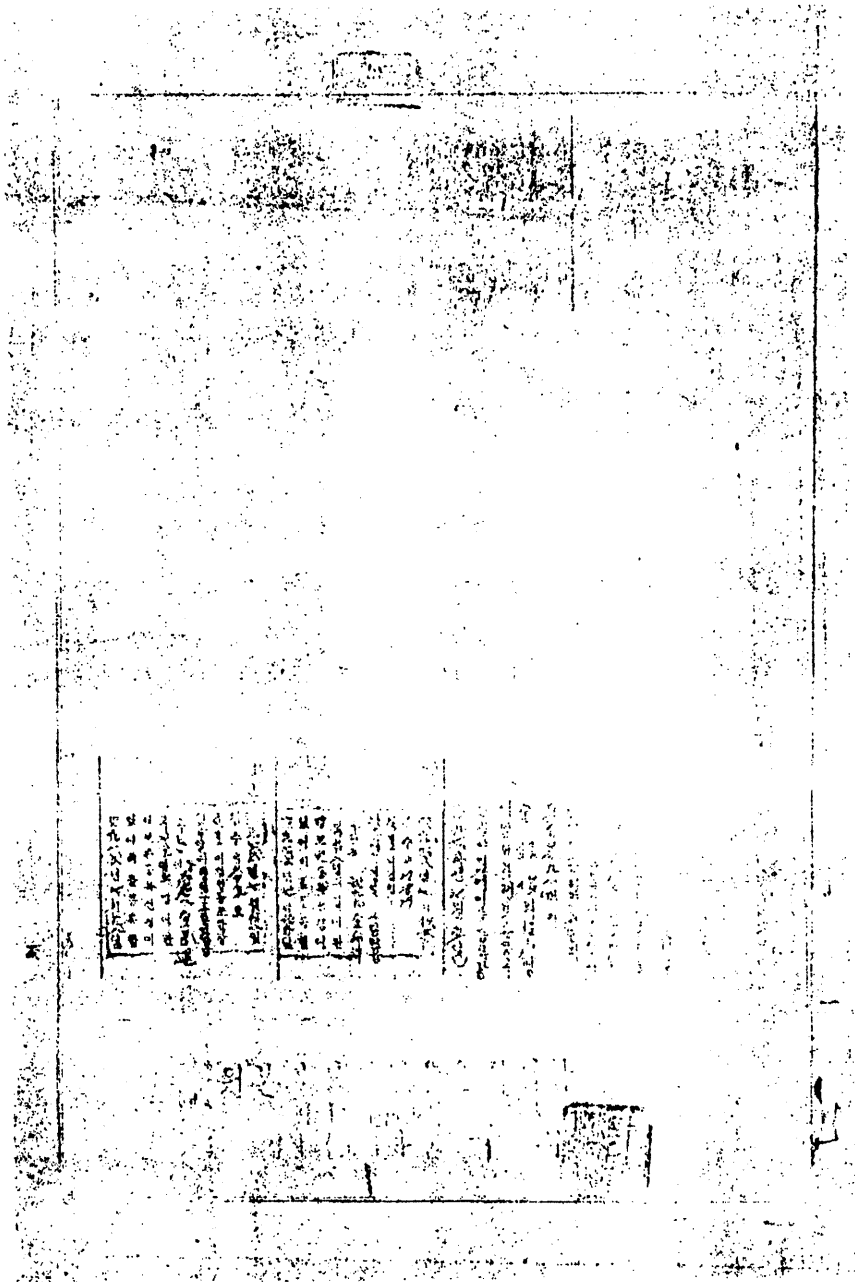


자료 1-㉠ : 同前 제3면

어업의 방법 - 간권취 및 나잠

채포물의 종류 - 미역, 우무가사리, 도박, 해삼, 성게, 백합 등

어업의 시기 - 생략



자료 1-⑩ : 同前 제4면

“입어관행보존등록 신청이 있어 이를 등록한다”는 취지를 명기.

* 미역바위(藪巖)(2)

: 被害補償

공동으로 작업할 때 일에 참여하였으나 持分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개인을 곽압주로 인정한 처사이다.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곽주들은 곽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신항만 방파제밖에 위치한 곽주들은 간접보상을 요구하여 등록문서를 제출하였다.(항만안 항구이용은 직접보상 대상이다.)

포항시는 검토·조정을 위하여 채용역을 실시하였다.

* 포항제철 건설보상

: 被害意識

포항제철 건설과 관련된 보상에 부정이 많았다.

1996년 어선 및 어업에 대한 보상 사례를 본다.

본인(서용전)은 18년간 延12척의 배를 경영하였다.

실제 보상에서는 어업 연수를 6년으로 계산하였다.

포항시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알겠다”는 시장의 회신이 있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보漁協은 1972년 7월 31일자로 영일水協에 등록되었다.

漁民會(종합제철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해산하였다.

조사 용역팀이 조사한 배에 대하여서만 보상을 실시하였다.

허가받은 어로권자도 보상을 못 받은 자가 많았다.

남은 보상금은 포항수협에 예치하였다.

포항수협의 전무는 - 친인척 관계에 있다 - “조용히 처리하자”고 제안한다.

주인생략

영일군어업협동조합대보지소

대 지 1173

1972. 7. 31.

수 신 사 경 령 (가한 12)

제 목 입어 관행 보존 등록

1. 경북수산 1173-1559 (72. 7. 20) 호의 이첩임.

2. 전 대보어업협동조합 과 귀리가 공동으로 제1종 공동어장
의 입어 관행 보존 등록 신청에 있어서는 수산업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1972. 7. 19일자로 등록 되었음을 통보 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

관 령 지 장



자료 1-⑩ : 입어관행보존등록통지서

(1972년 7월 31일 : 영일군어업협동조합 대보지소)

구				
구	<p>1992년 1월 1일 기업권 이전 신청에 의거 등록구수점 등록구수점의 어업 을 영영한 등록구수점의 어업 400 리 영영한 등록구수점 1991년 3월 2일</p>	<p>개6년 1992년 1월 1일 영영한 어업권구수점 변경 신청에 의거 등록구수점 500동 87-12 영영한 등록구수점 변경 등록구수점 1992년 2월 1일</p>	<p>개6년 1992년 4월 6일</p>	<p>개6년 1992년 4월 6일</p>
구	<p>1992년 1월 1일 기업권 이전 신청에 의거 등록구수점 등록구수점의 어업 을 영영한 등록구수점의 어업 400 리 영영한 등록구수점 1991년 3월 2일</p>	<p>개6년 1992년 2월 1일</p>		
구				
구				
구				

자료 1-⑬ : 同前 뒷면
 표제부(계속) : 존속기간(10년 연장)
 갑 구 : 어업권이전신청 등
 을 구 : 근저당권
 병 구 : 여백
 정 구 : 여백

		면허번호	소재지	종류	기간
표	표제부	이것이 제한 없는 표건			
	표제	이것이 제한 없는 표건			
부	부제	이것이 제한 없는 표건			
	부제	이것이 제한 없는 표건			
구	구제	이것이 제한 없는 표건			
	구제	이것이 제한 없는 표건			
병	병제	이것이 제한 없는 표건			
	병제	이것이 제한 없는 표건			
정	정제	이것이 제한 없는 표건			
	정제	이것이 제한 없는 표건			

자료 1-⑩ : 어업등록증(1982년) 앞면

- 표제부 : 어장의 위치 / 어업의 종류 / 어업 및 어구의 명칭 / 채포물의 종류 / 어업의 시기 / 어업권존속기간(10년)
- 갑 구 : 가압류, 경매신청 등
- 을 구 : 근저당권
- 병 구 : 여백
- 정 구 : 휴업 및 재개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1972년 3월 18일 어업권 이전 신청에 의거 을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3월 18일</p>	<p>개 6년 1972년 1월 1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포항시 죽5-2동 79-12 방채 농업용으로 변경 등록함 1972년 2월 1일</p>	<p>개 2년 1972년 4월 4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구</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p>개 2년 1972년 4월 5일 김현일이 어업권서 구소 변경 신고에 의거 평원군 송리역 1구간과 100리 김현일이 취득하였 1972년 4월 5일</p>

자료 1-⑬ : 同前 뒷면

표제부(계속) : 존속기간(10년 연장)

갑 구 : 어업권이전신청 등

을 구 : 근저당권

병 구 : 여백

정 구 : 여백

(4) 삼정리 : 정성태

주 소 : 구룡포읍 삼정2리 148번지

면담일자 : 1997년 4월 29일

나 이 : 65세

연 락 처 : 0562-76-2986(집) 0562-76-1777(직장)

* 미역바위(藪巖)

: 광암 = 전답 / 수산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

토지로 치자면 광암은 田畝와 같다. 광주들은 모금하여 그들의 權利保
쉴을 수산관계 기관에 진정하였다. 포항 구룡포 6리를 시발점으로 경
주 감포에 이르기까지 광주와 비광주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길흥 대사
에도 왕래를 두절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다.

구룡포 6리의 어촌계원들은 모든 미역바위를 공동화하자고 주장하였
다. 장길리의 경우에도 미역바위 분쟁이 격심하였다. 현재에는 진정되
었다.

삼정리(1,2,3리)에서는 비광주들이 광주들의 관행권을 인정하여 수산
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미역바위
에 기득권을 존치시켰다. 이 마을에서는 20년전에 약간의 분쟁이 있
었다.

(5) 삼정리 : 권혁기

주 소 : 구룡포읍 삼정2리

면담일자 : 1997년 4월 29일

인적사항 : 어촌계장

* 수산업 일반

현행법중 어촌 내지 수산업 관계법은 日本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용어 등에서 개정할 부분이 많다(예 : 후다이 - 저울 잔여량).

수산 전문인이 귀하다.

전복 씨를 자연상태로 방류하여 자연양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성공여부는 미지수이다. 전복 씨앗중 운 나쁜 것들은 문어나 불가사리에게 먹힌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공동어장의 생산수단은 해녀들이다. 제주 해녀들이 나와도 입어를 안 시킨다. 현지 해녀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잠수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 어자원 감소

: 바다수질 오염

공동어장은 조만간 어자원의 감소로 생산물량이 없게 될 것이다.

해녀도 줄어들고 있어서 스쿠버로 대체될 전망이다.

광어양식장(축양장)의 오폐수는 어자원 고갈에 영향을 미친다.

동해안 횃집들의 세제류 사용도 마찬가지로이다.

* 경매(빈매)

: 1978년~1979년 사례

천초, 전복, 성게(보라성게·말뚝성게)(구만에서는 청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특정인들에게 생산권한을 경매(빈매:일제용어)하거나 수의 매매하였다. 현재에도 울진과 영덕군(울진 후포 평해 기성)의 어촌계원들은 생산수단이 없어서 일부 사람들이 구룡포로 해녀들을 데려가

해산물을 채취한다. 1983년부터 영일군 수협 관내 32개 어촌계(양포 법인어촌계 5개 · 대보 8개 어촌계 · 구룡포읍 어촌계)는 일체의 생산 권한을 경매(빈매)하지 못하였다. 수산업법 규정대로 어촌계에서 해녀 들을 입어시켜 채취하고 생산물량을 입찰에 부친다.

* 어촌계(1)

: 이익분배 및 경비

어촌계는 판매 수수료의 40%를 받고 해녀들이 60%를 받는다(삼정리는 30% 대 70%). 천초는 25% 대 75%로 그리고 성계는 30% 대 70%로 분배한다. 해녀를 못내는 계원은 출자금에 따라 배당받는다. 생산자위로금(보너스)을 주는 경우도 있다. 어촌계장의 보수(月300,000 원)는 사업비에서 지급한다. 어촌계장은 소정의 여비와 경조사참가비를 지원받는다.

* 어촌계(2)

: 회 계

어촌계 회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어촌계장들이 회계에 어두워 손익계산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비법인어촌계에 대차대조표가 필요한가?”라는 반발도 있다.

그러나 대차대조표는 절대 필요하다.

물론 손익계산서와 재산목록만 있으면 살림내용을 알 수 있다.

결산보고서는 다음의 부속서류들을 갖추어야 한다.

- 수입명세서
- 지출명세
- 사업의 수익 · 비용
- 당기 순손실 · 순이익
- 잉여금 처분내역

비법인어촌계도 천초 · 운단 무역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전 부 제외).

감사가 생산 · 지출 명세를 잘 확인하면 이익수탈이 불가능하다.

* 어촌계(3)

: 임원연수

어촌계장에 따라 임기 4년 이내에 재무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회계교육·연수가 필요하다.

오래된 장부들의 소각을 막아야 한다.

* 洞山

: 산지기·임산물 채취

10여 필지의 洞山이 있다. 日帝 때 '세보' 측량을 실시하여 구획을 정하였다. 산림은 동산과 군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유림도 실제 동네에서 관리하였다. 현재, 삼정리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예전에 본인이 동장 일을 볼 때에는 山地番에 따라 정성태外 5명 명의로 등기하였다. 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산지기 1인을 선정하여 산을 지켰으나 현재와 같이 산림이 무성해지자 산지기를 폐지하였다. 임산물로는 버섯은 없고 약간의 도토리·산나물이 있다. 각자 능력대로 채취한다.

* 새마을회

동장이 대표이다.

동장의 보수로 처음에는 나락 1말 씩을 모곡하였다.

지금은 나락 시세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6) 하정리 : 김용방

주 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3리 34-1
전 화 : 0562-76-3530 휴대폰 : 011-541-8827
면담일자 : 1997년 4월 30일
인적사항 : 어촌계장 / 경력 11년

* 어자원 감소

: 행정편의주의 · 바다오염 · 인공어초

행정 실무진들은 수산업 종사 경력이 없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편의주의적이고 이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어업 생산량은 종전 대비 50%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 과거에는 15명이 70~80kg의 전복을 채취하였다.

현재에는 20kg 미만을 채취한다.

바다오염과 공장폐수가 어업생산량을 저하시킨다.

매년 자원조성 사업을 펴도 돌에 풀이 서식하지 못한다.

예) '군소'도 안 잡힌다.

어자원 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고기 아파트)를 만들어 넣기도 한다.

1종 공동어장내 특히 백사장에 인공어초를 투하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 수산업법 개정의견

: 수심 7m → 15m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산업법은 서해·남해와 같이 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을 기준으로 하여 수심 7m까지를 '마을공동어업 구역'(종래의 '1종어장'에 해당한다)으로 정하고 7~15m를 협업(투자·양식후 생산하는 개념이다)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동해의 경우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마을공동어업은 원래 15m까지 인정받았었다. 관청에서는 "어촌계는 잡아내는 것만 잡는다"고 불평하지만 현행법상 수

심 7m 경계는 이를 수심 17m로 고쳐야 한다.

* 藪 巖(미역바위·미역돌)(1)

: 受益權 認定·相續不可·契員資格

아직까지도 사유 광암이 존재한다.

하정 1리에는 등기에 올린 미역바위가 있다.

삼정 3리의 박석조씨는 10년전에 200만원으로 미역바위를 샀다.

광암에서 채취된 생산물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다.

남의 동네에 있는 미역 돌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바위에 대한 채취권은 입찰에 부친다. 채취 기간은 1년이다.

慣行權者의 소유권에 대하여서는 어촌계 정관으로 정한다.

어촌계 정관은 미역채취권을 수익권으로 정하고 상속을 부정한다.

실제 사촌동생들이 채취하기도 한다.(어촌계 실정에 따라 다르다.)

집이 있어도 6개월 이상 살지 않는 자는 어촌계에서 제외된다.

* 藪 巖(2)

: 公市방법

미역돌의 공시방법이 모호하다.

권리분쟁시 판정기관이 없다.

그러나 물 속에 길이 있다. 광전주들이 알아서 해결한다.

양식업 어장은 도면이 있다.

* 어촌계장

: 漁場團束

선거제이다.

집안내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어촌계장은 활동력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지도선박을 늘리기도 한다.

1종어장을 침범하는 '십일조' 잠수기를 단속하여야 한다. 법개정이 필요하다.

어촌계장협의회에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공용 휴대폰을 지급하

고 수협에서 배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 포항제철 관련

: 신항만 건설

신항만은 주민의견의 수렴 없이 탁상공론으로 임원들의 의견만 듣고 설계하였다.

예컨대, 보상과정에서 음지와 양지를 구분하여 보상계획을 달리 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음지와 양지는 생산량이 비슷하여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아니하고 있다. 주민들은 “학술보다 체험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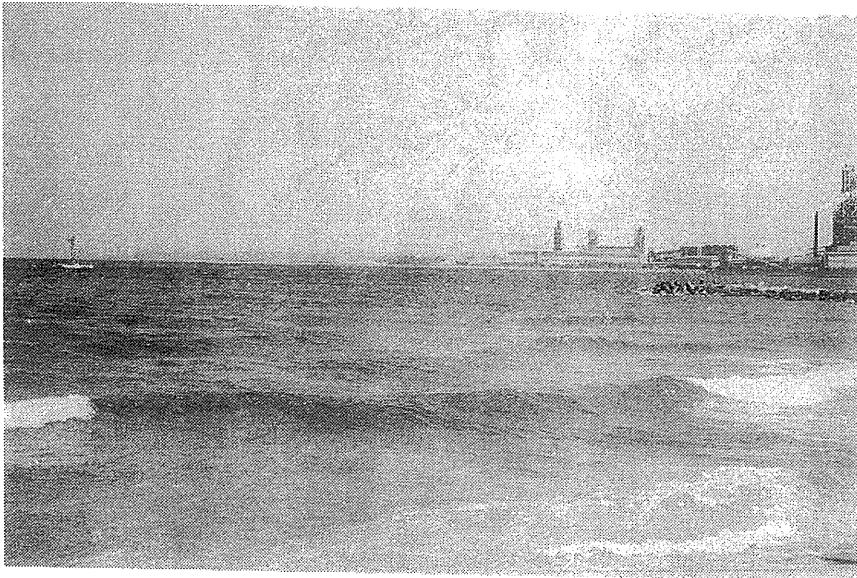


사진 1-① 영일만 전경(신항만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권 보상 분쟁지역)

* 바위의 오염

: 현 황

바다 밑의 오염을 눈으로 볼 수 있다.

3개월전 포항 KBS TV에서 오염실태를 방영하였다.

'백화' 현상을 보인다. 겉보기에 깨끗한 하얀돌은 절대로 좋은 돌이 아니다.

계란 프라이처럼 노란색 또는 붉은색 침전물이 바위를 덮거나 흰색반점들이 바위를 감싼다.

해녀 김필순씨는 "돌이 숨을 못쉰다"고 증언한다.

(7) 浦項水協 : 윤중근 상무

주 소 :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0-4 포항수산업협동조합

면담일자 : 1997년 4월 30일

전 화 : 0562 47 0856-7

* 漁村契

15年前 수협 소유에서 어민들 소유로 이관

수산업협동조합법상 각 어촌계 정관은 수산청 지침을 거의 그대로 적용

* 빈 매

한 두 곳에서는 여전히 빈매를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회계장부상으로 파악이 어렵고 수협에서는 지도하는 정도이다.

* 신항만 건설

: 어업피해 · 보상

물류비용으로 인한 영일만의 폐쇄는 유감스럽다.

신항만이 들어서면 영일만의 어업이 거의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에 관하여 항만청과 수협간의 합의가 없었다.

항만청에서 서울대 해양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중에 있다.

항만청의 보상안은 어업종사자들과의 견해차이가 크다.

- 직접피해지구 / 간접피해지구 구분

- 신항만보상대책위원회(수협내 대책기구 : 수협 6개 + 각어촌계 5명)

- 530억원 제시(서울대 해양연구소용역팀안)

- 부산 가덕도의 예에 따르면 1,300억(총사업비의 10%)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

- 先補償이므로 향후 보상기간이 문제된다.

- 보상안 : 용한1리의 경우 가구당 1억원 정도



사진 1-② 영일만 신항만개발에 따른 어업피해 구역도

* 水深限界 논쟁

1種 공동어장 → 마을어업

2種 공동어장 → 협업

* 어촌계장 선출

: 제도개선안

어촌계장은 경선에 의하여 어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를 낳고 있다.

수협과는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어촌계장은 선출직보다는 임명직이 좋겠다.

(8) 구룡포 장길리 : 부제화

주 소 : 구룡포읍 장길리 144번지

나 이 : 女 75세

면담일자 : 1997년 5월 28일

출 생 지 : 북제주군 덕주동 144번지

* 입향배경

현재에도 물일을 한다. 42년전(1956년)에 32세때 장길리에 채취로 입향하였다. 19세 때에 처음으로 장길리로 원정왔었다. 제주에서는 부자 소리 듣는 집으로 출가하였다. 그러나 손에 물말릴 시간이 없었고 시누이들 4명과 마찰이 있었다. 26세때 6.25를 만나 남편(25세)과 사별하였다. 처음에 입향하여 모르고 미역을 채취하다가 말을 들었다. 이 마을에는 제주보다 양질의 미역이 풍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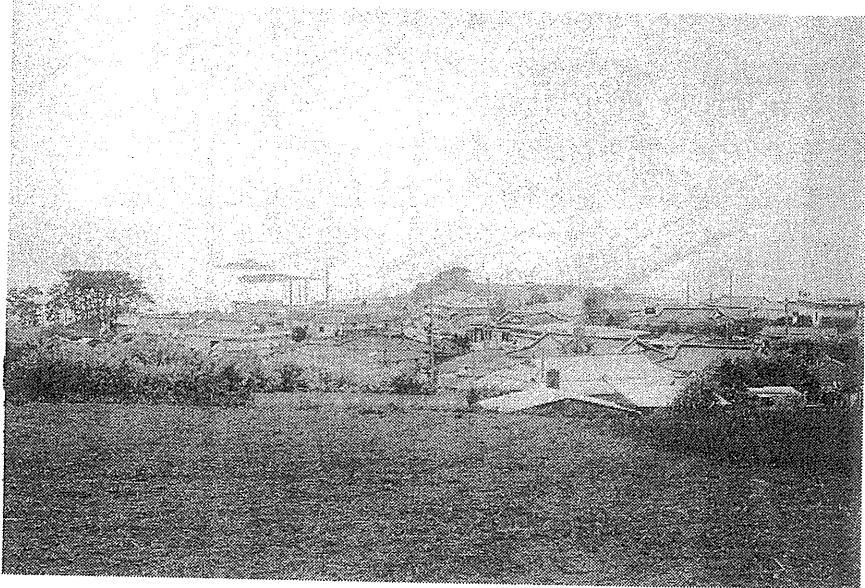


사진 1-③ 구룡포 장길리 전경

* 품 샅

해녀들 물가에 갈 때 각자 나무를 조금씩 갖고 간다.

미역품샅 : 1단에 1오리 → 오리반 → 2오리

생미역으로 지급하였다.

가을에 기세작업한다.

하루에 6~8오리를 준다(알아서 준다).

* 개인소유 미역돌(藪巖)

각자 ○○돌 / ○○돌로 불렀다.

옛날에는 미역돌에서 올리는 수입이 논 몇마지기보다 나왔다.

26년전에 공동재산으로 되었다.

공동화 전에는 미역을 채취하면 광주들이 생미역과 마른 미역을 각각 반씩 가져갔다.

기준치를 넘으면 가중치를 거두어 갔다.

* 미역돌(藪巖) 매매·낙찰

장길리에서는 미역돌을 사고 팔지 못한다.

삼정1·2동에서는 자기 미역돌의 매매가 가능하다.

장기면 두원리·계원2리에서는 지금까지도 미역돌은 비공동이며 매매가 가능하다.

장기면 계원1리에서는 미역돌 일부의 채취권을 비광주들에게 분양하였다.

장기면 모포리·칠전리에서는 공동 돌의 채취권을 분할하여 1년간 자유로이 채취한다.

채취권을 입찰할 경우에는 큰 미역돌이 30-40만원 선에서 낙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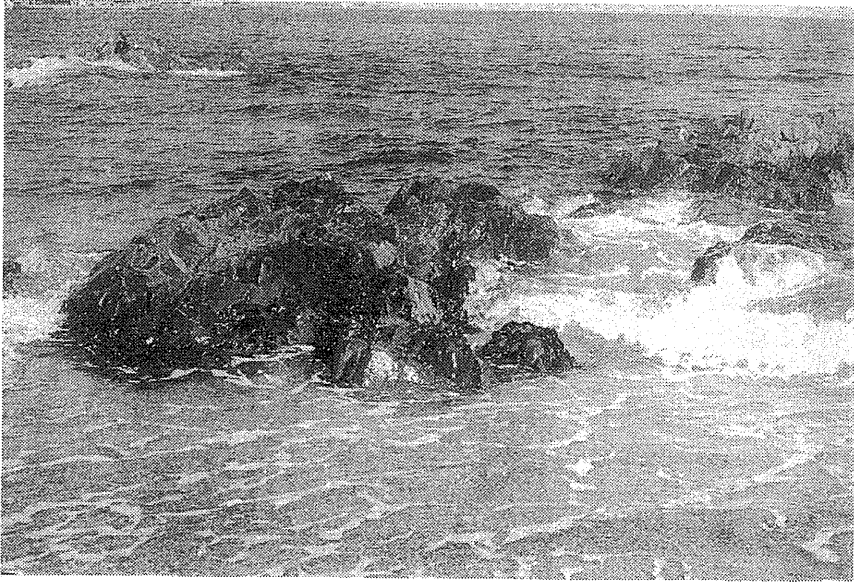


사진 1-④ 구룡포 미역바위

* 빈 매

기지를 빈매하였다.

빈매는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행해졌다.

일제 때도 사례가 있었다.

1년 기준으로 갱신하였다.

현지인을 앞세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역을 제외한 해물채취는 동네회의에서 생산량을 어림잡는다.

값을 (후려쳐) 정하고 동네(어촌계)에 몫돈을 준다.

작업에 참가하는 개인들은 인건비 상당의 일당을 받는다.

이후 생산량은 모두 매수한 商會에서 차지한다.

기지권자들은 종자를 말렸다 : “다 잡아갔다”.

기지매출액은 공동사업비에 쓰거나 비곽주들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분배하였다.

(9) 장길리 : 정순남

주 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면담일자 : 1997년 5월 28일

* 海女主權

: 나잠조합

1950년대에는 해녀권리권(海女主權)이 있었다.

나잠조합(생산자 단체이다 : 옷을 벗고 잠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을 결성하였다.

취급어물 : 천초(우무) - 30년전 1근에 20원

도박(한천원료 : 다시마와 비슷하다) - 30년전 1근에 10원(지금은 1천원 정도)

조합관리자가 사라지면 조합원 각자가 몰래 뜯어가기도 하였다.

천초(제보자는 '천추'라고 발음한다)를 뜯어 '쌀 1가마 올리기도' 하였다.

당시 쌀 1가마니 값은 1,500원(1말에 200원~250원)이었다.

옛날에는 딸 둘이 잠질(제보자는 '자무질'이라고 발음한다)하면 부자가 부럽지 않았다.

딸들이 돈을 벌어 미역들을 사기도 하였다.

(10) 장길리 : 이옥자

주 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373번지

전 화 : 0562 84 7881

면담일자 : 1997년 4월 30일 / 5월 28일

* 미역돌 共同化 秘話

미역돌을 공동화할 때 미역돌에 대한 보상도 없었다.

미역돌 공동화 이후 마을 인심 사나워졌다. “집안도 몰라봤다.”

事 例 : 이옥자씨의 叔母(李氏부인)는 7년전까지 장길리에 거주하였는데 그 아들이 “집을 팔았다”는 이유로 李氏부인의 채취권을 박탈하였다. 미역을 채취할 때 李氏부인이 “미역 좀 나누어 달라”고 사정하였지만 동네에서 외면하였다.

비곽주들은 동네 사람들이 곽주 집의 일도 못하게 선동하였다.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촌계원의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으러댔다.

이제 노인(할배)들은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은 미역돌에 情이 없다.

공동화 선동자들은 현재에도 잘 살지는 못한다.

* 딸과 며느리

“장길리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장기면 계원리에서는 딸들에게 일을 안시켰다.”

“계원리의 처녀들은 모심기도 안하였었다.”

“양포는 처녀들에게 일을 더 안시켰다. 딸들은 바닷가에 만나갔다.”

俗談 : “봄별은 며느리 데리고 나가고 가을별은 딸 데리고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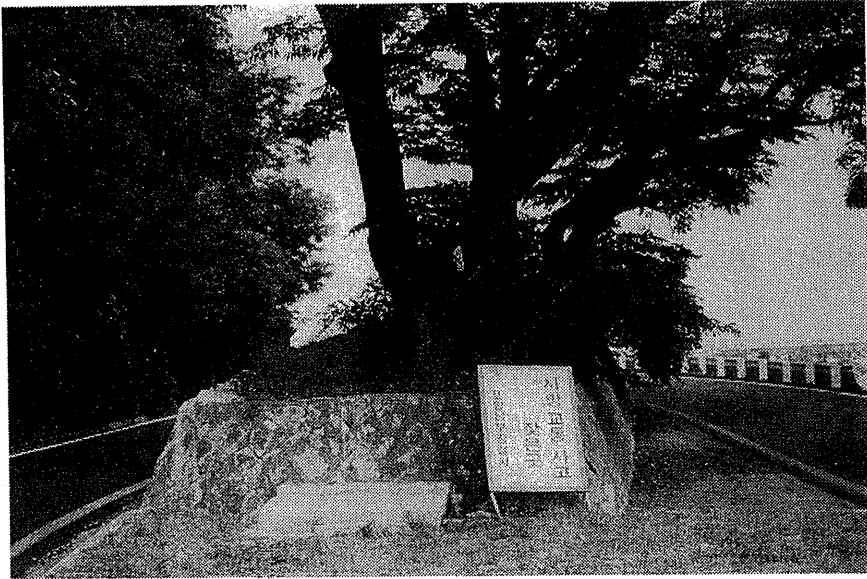


사진 1-⑤ 양포의 神木(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소재)

* 冠禮式 · 改嫁禁止 · 寡婦

윗대 어른 때에는 총각이 장가가기 전에 물을 떠놓고 관례식을 치렀다.

동생이 먼저 장가가려면 형이 관례를 치뤄야 하였다.

관례식 때에는 동서남북으로 “물 탕군다.”

改嫁禁止 俗談 : “남자는 사모(제보자는 ‘사무’라고 발음한다)를 열번

써도 좋지만 여자는 사모를 두 번 쓰지 못한다.”

寡婦忽待 : “과부는 총각과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다.

이 마을에 열녀비는 없다.

* 두 레

계원리에는 10여개 마을 사람들이 공동노동에 참여하였다.

양포 1~4리, 수성, 임중, 장기, 산서, 방산 등지에서 노동에 참여하였다.

미역을 훔쳐가는 일들이 많았다.

“딸들은 미역을 지키느라고 놀 시간이 없었다.”

보릿고개 때 俗談 口傳 :

“세랑보리 피거들랑 엄마 집에도 가지말고 아버지 집에도 가지말고 물가상으로 다녀라.

* 海女等級

海女는 상군(1등~5등)과 하군(6등~10등)으로 등급이 나뉘었다.

상군의 경우는 실력에 별 차이가 없었고 하군은 차이가 많았다.

實力差에 관한 俗談 : “들어갈 때는 한 빛이고 나올 때는 몇 층이다.”

그러나 등급간 의견충돌은 거의 없었다.

(11) 장길리 : 정옥선

주 소 : 구룡포읍 장길리 506번지

나 이 : 女 59세

인적사항 : 해녀 인솔자 출신 / 같은 마을에서 연애결혼

* 共同體意識

: 場稅·節水·손告祀·미역들에 밥 먹이기

共同化의 부작용 : 미역들 공동화 이후에는 미역바위의 풀도 안 매고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수확량이 떨어지는 등 자원손실이 많았다.

場稅를 못내면 처벌받았다.

俗談 : “과장에 맞는 것은 조래(조리)쟁이”

물이 귀하였다.

“손님이 물 쓰는 게 제일 아까웠다.”

샘가에서는 물이 더러워질까봐 빨래를 못하였다.

하루 몇십 동이의 물을 길어 집에서 사용하였다.

정월 보름 밤12시에는 “우물물이 돈다”고 믿었다.

“남보다 먼저 새 ‘웅굴’(우물)에서 물 길어다 밥하면 농사가 제일 잘
된다”고 믿었다.

「손고사」(손비비기)를 지냈다.

정월 보름에는 무당을 부르고 밥봉지나 떡을 여기저기 나누었다.

「돌에 밥 먹이기」: 정월보름이면 미역들에 밥을 먹였다. (밥을 싸서
바다에 던진다.)



사진 1-⑥ 고사옹 魚物(양포신목 근경)

* 물질(무질)

외지의 해녀들에게는 방을 얻어주고 식량도 대주었다.

1970년까지 물질(제보자는 '무질'이라고 발음한다) 작업에 대하여 수수료를 먹었다.

제주에서 해녀들을 인솔해 왔다.

이 마을의 처녀(15세부터)와 아주머니들은 제주 해녀들로부터 물질을 배웠다.

제보자는 6.25이후 물일을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미역채취를 위하여 제주해녀들을 불렀다.

앞으로는 해녀도 없고 물질할 물건도 없다.

* 結婚 · 婚需

사주단자 교환 : "사승 온다"

"사승이 가고나면 그 집 귀신 된다."

동네혼사 회귀 : "3대를 적선해야 동네 혼사한다."

시가집 예물로는 보선·양말이 주종을 이루었다.

자기 옷은 자기가 해 간다.

신랑에게 양복을 해주기도 하였다.

혼수(장농·이불·패물)는 신랑책임이다.

약혼 때에는 가락지를 교환하는 정도였다.

(12) 대보리 : 서원수

주 소 : 대보면 대보 3리 885번지

나 이 : 74세

전 화 : 0562-84-9593

면담일자 : 1997년 8월 13일

인적사항 : 대보폐기물매립장대책위원회 이성환 부위원장 장인

특기사항 : 미역돌 매매문서 보유자

* 마을개황

대보(大浦)의 옛 지명은 장기현 '별예골'이다.

집이 모두 10호도 안되었다.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번성하였다.

당시에는 미역금이 좋았다.

동네 사람들은 개인소유 미역돌 바깥의 깊은 곳에서 미역을 따다.

“수산법은 참 예민하다.”

* 日帝時代 狀況(구만리 사례)

: 미역돌매매 · 行使料 · 풍어굿

미역돌 소유권에 대한 시비는 없었다.

미역돌에 대한 어촌계의 지분 없었다.

日帝 수산법상 '등기' 제도가 없었다.

당시에는 '돌' 자체를 사고 팔았다.

미역돌에서는 미역 · 전복 · 천초 모두를 채취하였다.

전복 · 천초(시가저렴)는 日帝가 주축이 된 漁村振興會에서 해녀를 투입하여 채취하였다.

미역돌 소유자는 미역만 채취하였다.

당초에는 미역채취에 대한 '行使料'가 없었다.

윗대 어른(서재구氏)이 미역돌을 매매할 때(1928년) 어촌진흥회는 없었다.

이후 '행사료' 條로 1할(1단에 1올이)을 마을에 지급하였다.

(권리) 행사료는 일종의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행사료는 풍어굿(3년마다 개최)의 경비로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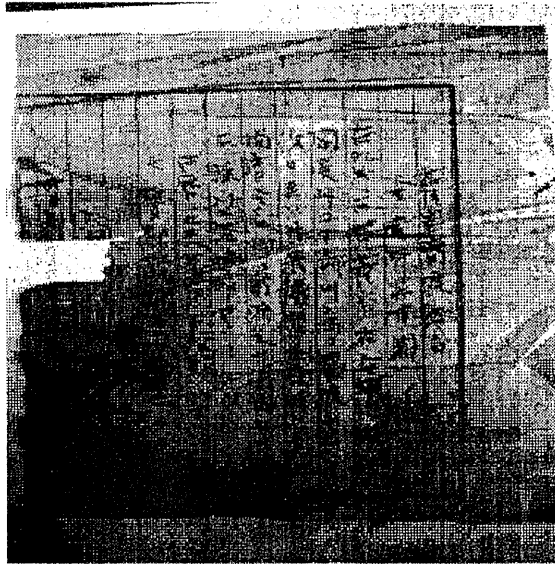


사진 1-⑦ 1936년 광암매도증서(소유자 서원수)
(포항시 남구 대보면 구만리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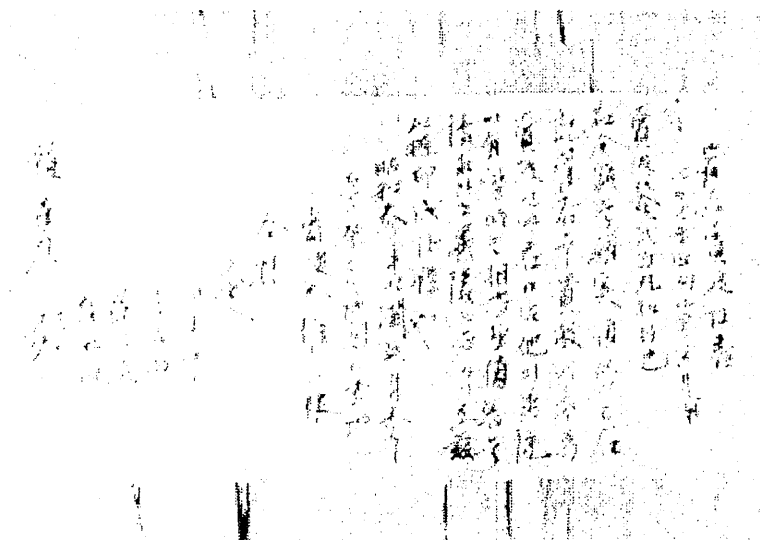


사진 1-⑧ 1928년 광암매도증서(소유자 서재구)
(포항시 남구 대보면 구만리 소재)

* 미역돌(1)

: 共同化연혁 · 등록원부(漁民協議會)

자유당 초기(초대 國會 때)에 미역돌 “공동화”가 거론되었다.

당시 대보 주민 김종대는 나잠(해녀)조합을 결성하고 수산법 개정운동을 폈다.

“물에 있는 것은 해녀들의 것이 아닌가?”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20년전에 광주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미역바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미역바위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광주들은 市(수산과)에 등록하였다.

등록원부는 漁民協議會에서 보관하였다.

제보 : 서용전氏(전화 0562-840-9230)가 등록증 사본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

* 미역돌(2)

: 日帝 登記制度의 不備 · 共同化 所感

미역돌 국유화에 적극적인 거부감은 없다.

다만 등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등기제도의 불비는 일제법제의 잘못이다.

일제는 토지 측량을 실시한 후 미역돌을 등기제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윗대 어른(서재구氏)의 전언에 의하면 日帝는 바다도 측량하여 등기하였다.

실제 윗대 어른은 “바다를 측량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13) 대동배 : 박태수 · 김해용

* 미역돌

: 賣買慣行 · 藪主와 非藪主 均分 · 法律의 錯誤

제 보 자 : 박 태 수

주 소 : 대보면 대동배 2리 54번지

나 이 : 1947년생

면담일자 : 1997년 8월 13일

옛날부터 “미역돌을 사고 팔았다”

본인 소유 미역돌의 매매계약서는 공동매수인(4명) 중 1명이 보관하고 있다.

현재는 동네의 전체 미역돌을 半分하여 광주와 비광주가 ½씩 채취한다.

광주 몫을 어촌계에 주는 것은 없다.

“관청에 채취권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다.

구만 2리와 대동배 2리 사이에 바다경계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이 마을 어촌계장이 증언할 수 있다.

* 미역돌 분쟁사례

: 대동배 2리 對 구만 2리 마을경계 다툼

제 보 자 : 김 해 용

주 소 : 대보면 대동배 2리 54번지

나 이 : 74세

전 화 : 0562-84-8681

분쟁일지가 있다.

1971년 대동배 2리와 구만 2리(당시 250호) 사이의 분쟁이다.

두 마을은 해상경계는 있는데 육상경계가 불명확하여 이것이 후일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분쟁의 장본인 서도은씨와 서상은(구미시장 출신)씨는 구만리 주민이다.

이 사람들은 대동배에서 미역바위(蘘巖)를 소유하고 있다.

곽주는 서상은氏의 윗대 어른인 서필수氏이다.

서상은氏가 郡 공보실장 재직 당시 주민들과 면담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 주민측 : “곽암을 공동으로 만들자.”

- 서상은 : “불가하다.”

- 주민측 : “본인(김해용)은 조합 총대로서 주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

- 서상은 : “한 해만 봐달라. 마을용 스피커 시설을 제공하겠다.”

다음해 서상은氏가 경주시청 새마을 과장으로 재직할 때 그를 다시 방문하였다.

서상은氏측은 (스피커 설비등을 내세우면서) “더 유예하자”고 답하였다. 결국 사태는 형사사건으로 치달았다.

대동배 2리 조합원 30여명(10여명은 곽주이다)이 구만리 측에 동조하였다.

도청이나 검찰청에서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났다.

구룡포水協(싸움 당초에는 대보漁協이었다) 총대들에게 문제해결을 맡겼다.

水協 조합장은 구만 2리 측을 두둔하였다.

水協 전무는 “視界內에서 두 마을 사이의 경계를 그으라”고 제시하였다.

구만 2리는 마을이 커서 총대가 2명(다른 곳은 1명)이었다.

구만리 측은 육상경계를 주장하였다.

대동배 측은 해상경계를 주장하였다.

총대 의결에서 대동배 2리가 패배하였다.

대동배에 있는 서상은·서도은 씨네 바위는 구만 2리 측 관할로 넘겨졌다.

해상경계도 빼앗겼다.

본인(김해용)은 격분하여 “조합을 작살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당시 경주시청 황상규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였다.)

이후 두 마을은 왕래가 단절되어 나무도 못하게 하고 경조사 왕래도 없다.

현재에도 이 미역 돌은 구만 2리 경계에 속해 있다.

법개정후 미역공동 채취가 없었다면 마을 경계유지가 가능하였을 것

이다.

마을경계를 빼앗긴 일은 아직도 원통하며 증오심을 품고 있다.

山(대보폐기물매립장 후보지)도 소유는 구만리 측인데 오염피해는 대동배 측이 입는다.

1971년 경계분쟁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이 가중되었다.

(14) 浦項水協 : 放談

* 水産業協同組合法
: 개정의견

제 보 자 : 김 중 윤

주 소 : 포항시 북구 송좌면 화진리 202번지

전 화 : 011-822-5714

면담일자 : 1997년 8월 13일

참고사항 : 협업수산 경영(定置網)

水協이 어업지도는 등한시한 채 금융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水協은 본연의 업무로 되돌아 가야한다.

漁撈人力의 고령화가 문제된다.

신기술-신세대의 접목이 필요하다.

교육 다변화와 순환보직제가 필요하다.

자본으로만 유인해서는 곤란하다.

水協은 수산물 유통을 장악하여야 한다.

단속 위주의 海難救助 체계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제 보 자 : 임 성 수

면담일자 : 1997년 8월 13일

참고사항 : 포항水協 감사

水協은 “어민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를 이상으로 삼는다.

실제로는 법 위반 제재 건수를 보고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

산업기능요원(3년근무 조건)들을 어민후계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어민후계자에 대하여서는 4천5백만원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후계자 자금의 대부분을 水協에서 좌지우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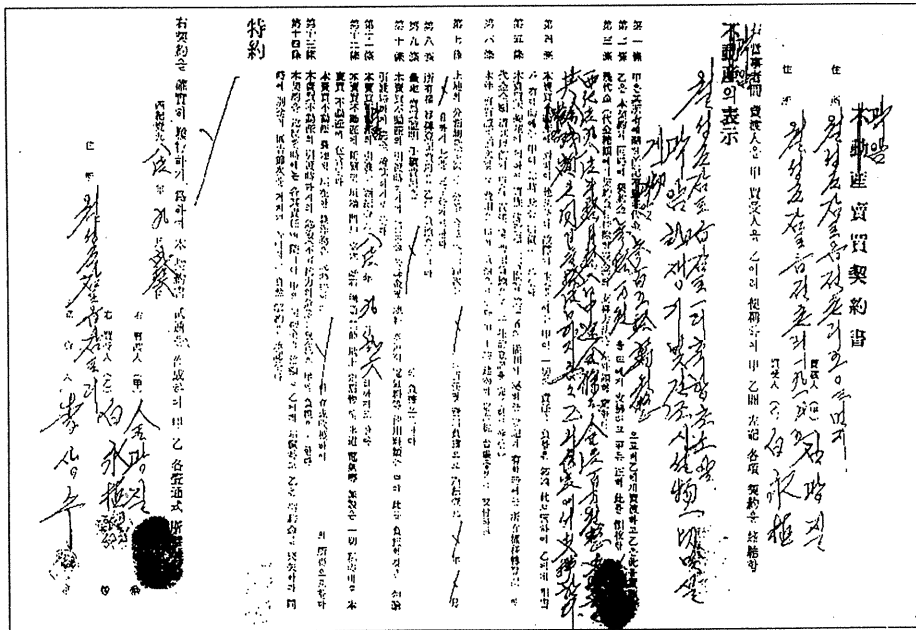
水協이 어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를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15) 감포 : 이완

면담일자 : 1997년 8월 14일

* 바닷가의 土地化
: 日帝의 침략준비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과 지역유지들이 합세하여 '물씨밭'(바닷가)까지 토지에 편입시켰다.
일본인들은 海圖를 제작하기 위하여 바다를 측량하였다.
항만개발을 위하여 침략 前부터 '物標'를 파악하였다.



자료 2-① : 1981년의 미역바위매매문서(전춘리)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고쳐서 미역바위 매매계약서로 삼았다.)

곽암매도증서

홍금액 一金五拾五萬圓整 ₩ 55,000
 상기금액을 一九八二年四月二十四日 宗巨 宛분
 곽암포시 興村里 崔斗里 新有 전래 표시함

(1) 물목 식개 八 伯 (인)
 (2) 식개머 五 伯
 (3) 배 壹 拾 五 伯
 (4) 밭 拾 二 伯

上記 物목과 金額을 正히 領收함
 一九八二年 四月二十四日

매도인 崔성근 崔포음 전촌 三 里
 최 두 리

매수인 崔성근 崔포음 전촌 一 里
 백 영 석
 立 命 人 崔성근 崔포음 전촌 一 里
 정 광 석

자료 2-② : 1982년의 미역바위매매문서(전촌리)

(16) 감 포 : 이상호

주 소 :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100번지

면담일자 : 1997년 8월 14일

나 이 : 1933년생

전 화 : 0561-44-3610

참고사항 : 미역바위 소유자·가두리사업자(우럭·쥐치·방어 양식)

* 마을개황

전촌리의 옛 地名은 장진마을이다.

가구수 130여가구 / 어촌계원 45명 / 꺾주 17명(이중 1명은 비어촌원)

赤潮('소똥물'이라고 부른다)를 우려한다.

水溫이 저하되면 해산물의 월동이 곤란하다.

현재 어촌계 관할 1종 생산량 : 어촌계장 봉급정도(연200~300만원)의 소출이 나온다.

멸치어장(소대방)(3종)의 소득이 많다.

월성은 원자력으로 어장이 황폐화하여 어민의 이주가 우려된다.

월성은 여기에서 6km 남쪽 / 문무암 아래 1km 지점에 위치한다.



사진 2-① 利見臺에서 보이는 문무대왕 수중릉
(수중릉에도 많은 해초들이 서식하지만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 미역바위(1)

: 相續 · 共同體意識

윗대로부터 미역들을 相續받았다.

상부지시에 漁村契는 미역바위의 공동화를 요구하였다.

미역바위 분쟁이 많았다.

곽주들이 사회 ·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비곽주들이 약간 후퇴하였다.

'공동의 돈'은 소홀하게 생각하여 헤프게 쓴다.

'공동의 일'은 자꾸 미루게 된다.

持分の 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음에도 공동재산을 함부로 사용한다.

주민들은 共同財產權 意識이 약하다.

훔치기를 잘 한다 [竊盜頻發].

11월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세작업을 한다.

가을에 미역바위도 잘 매지 않는다.

미역들은 갯병(백화현상)을 앓기도 한다.

경험상 여름철에 파래가 좋으면 미역도 좋기 때문에 바위를 매게 된다.

요즘은 원인 모르게 생산량이 격감하고 '말 군소'가 미역을 빨아먹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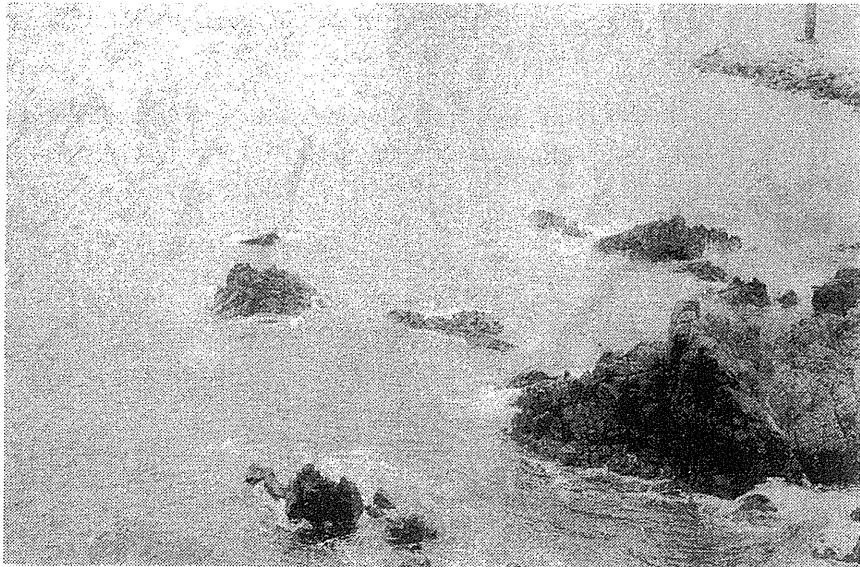


사진 2-② 감포 미역바위

* 미역바위(2)

: 共同化 沿革 · 藿主契 · 行使料 · 苛斂誅求

윗대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共同化 논의는 日帝때부터 있었다.
군수산계 직원들은 “모든 것을 다 협업으로 하라”고 지시한다.

5.16 이전에 共同化 지시가 있었다고 기억된다.

해방 이후에는 마음대로 사고 팔기를 주저하기도 하였다.

‘간 큰 사람’들은 논 대신에 미역돌(藿巖)을 샀다.

공동화 이후 藿主들은 契(곽주계)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행사료 : 채취량의 1/10 내지 1/30

水産官廳과 공무원들로부터 금품 요구가 많았다.

* 미역바위(3)

: 賣買方式 · 分散所有

본인(이상호)도 미역바위를 판 경험이 있다.

1994년에도 이사가는 집의 미역 돌을 매매한 사례가 있었다.

미역 돌 5개 정도(100~200坪)에 500만원을 호가한다.

3년이면 미역 돌에서 본전 이상의 소득이 확보된다.

미역바위의 매매는 보통 동네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 계약서 없이 매
매하였다.(논을 사고 팔 때에도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다.)

미역돌을 매매할 때에는 물 위에서 돌을 가르키면서 특정하여 이양한다.

미역바위를 많이 가진 곽주들은 공동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역돌을 분
산시켰다.

* 미역바위(4)

: 公示方法

곽주들은 자기 돌을 잘 안다.(돌 모양이 각각 다르다.)

미역 돌 사이의 고풍을 기준으로 경계를 구분한다.

미역돌은 대부분 바닷가로부터 10m 이내에 위치한다.

미역 돌에 ‘고래치돌 · 언치돌 · 꼬꾸랑돌’ 등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주민들은 누구네 집의 돌에서 나는 미역의 품질여하를 안다.

본인(이상호)은 곽주계에서 계중 때 “바위등급을 매기자”고 제안하였다.

公的帳簿에 등록된 사실은 없었다.

해방후 개인명으로 등록하려고 마을 전권대사를 보냈으나 실패하였다.

* 미역바위(5)

: 權利意識 · 사실은폐

法에서 “공동으로 하라”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몰래’ 미역돌을 관리한다.

외부인들에게는 미역돌의 매매사실을 은폐하기도 한다.

미역돌의 매매 때 돌 자체를 사고 판다고 생각한다.

“내 돌에 가서 낚시 못한다”고 통제하기도 한다.

미역바위 분쟁 때 : “남의 밥에 숟가락들고 달려드는 격이다.”

“돈 있으면 바위 사지 왜 안사고 그러느냐?”

생활이 나아지니까 비곽주들의 인심이 좋아져 행사료 받는데 다소 관
대해졌다.

곽주들의 관심사 : “향후 미역돌을 개인재산으로 등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미역돌을 등기할 것인가?”

* 海 女

: 배당례 · 어촌계와 갈등 · 미역바위의 공동화 요구 · 유입인력감소

해녀들은 근로자이고 어촌계원들은 사업자들이다.

해녀들과 어촌계 사이의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전복은 1/100 배당

- 성게는 7 대 3으로 배당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해녀들과 이를 꺼리는 어촌계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한 때 어촌계에 수익이 있을 때 양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해녀들은 미역바위의 공동화를 요구한다.

어촌계원들은 해녀들이 들어오면 ‘시끄러워진다’고 생각하였다.

언젠가는 해녀도 어촌계원이 될 것이다.

현재는 채취 소득이 줄어 해녀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해녀들의 지위가 상승하였다.

지금은 해녀들을 상전으로 대접한다.

- * 자원증식방안
- : 전복생산

20년전 본인(이상호)의 사례이다.

자원고갈과 잠수부·해녀의 절도를 막기 위하여 어촌계의 권리를 개인들에게 대여하였다.

3년간 채취를 감시·통제하였더니 수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17) 慶州 : 이근식

주 소 : 경주시 황오동 30-2

전 화 : 0561-771-4602

면담일자 : 1997년 7월 9일

인적사항 : 경주전문대학 강사

* 미역발 공시 비석

울산시 강동면 정자리 소재

신라 박제상이 배를 타고 떠난 곳(2곳중 1곳)으로 추정

고려 개국공신 박윤웅 문중에서 비석(채암비) 건립

재래의 미역바위 채취권 인정 → 어사 박문수 관여 → 한 때 국고귀속
→ 再하사

「蔚山遺事」(울산문화원 간행)에 관련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영일군 신광면 냉수리 재판자료에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비석'을 언급하였다.

울진의 봉평비 : 신라 복속지에서 고구려인 반란을 제재한 기념비 건립

* 禁 忌

: 三國遺事 '사금갑' 고사

서기488년 1월 15일 王이 남산에 행차하였다. 쥐와 까마귀가 사람의 언어로 말을 나누는 것을 들었다. 까마귀 가는 곳으로 따라 갔더니 연못 가에서 돼지 2마리가 싸운다. 한 도인이 편지를 전해준다. "편지를 뜯으면 둘이 죽고 안 뜯으면 하나가 죽는다". 이 고사는 쿠데타 모의로 해석할 수 있다. 등장 동물들이 해당하는 날짜에 근신한다. 1월 15일도 마찬가지로이다. 고려 때까지 경주 풍속으로 전승되었다.

* 山 訟

경북 영천에는 정몽주 선친의 묘소가 있다.

일제 때 정몽주 선친의 비석이 발견되었다.

이 비석의 발견을 계기로 영천 이씨문중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일제는 양자의 공동소유로 판결을 내렸다.
고려大 재단 이사장 이활 선생이 당사자이다.

* 封 標

: 禁標

조선시대 봉표들이 각지에 남아 있다.
1994년 경북 울진의 불영계곡에서 봉표가 발견되었다.
불영사 입구 대천교 오른쪽 소광리 하천변에 "황장봉표"가 존재한다.
자연 암반에 비문을 새겼다.
황장봉표는 황장목(춘양목)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山直이(산지기)는 황장목에 일련 번호를 매겨 관리한다.
한림大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인제에도 봉표가 있다.
인제봉표 탁본은 고려大 최광식 교수가 소장하고 있다.
경주에도 기림사 뒷산을 관리하기 위한 봉표가 있다.
기림사 동쪽 감채(감골) : '장기'가는 길에 조선 순조시대 봉표가 있다.
경주 「대동일보」에 관련 연구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 장생標

양산 통도사에 4개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현재 2개가 잔존한다.
전남지방에도 사찰의 재산 경계를 표시하는 봉표가 남아 있다.
신라시대 「정전제」에 관하여 - 동국大 경주캠퍼스 김상현 교수 논문,
참조
경주 풍물지리지 (보우문화재단 1992년 간행)(이시우 상무 소장), 참조

2. 東海南部 : 蔚山 · 蔚州

(1) 蔚山鄉校 : 박주복

나 이 : 男69세
면담일자 : 1997년 8월 15일
인적사항 : 울산향교 전교

* 미역바위(1)
: 울산박씨 문중 海巖稅收 經過

(경남 울주군 강동면 구유리 소재 蔚山朴氏 門中 미역바위에 관한 기록이다.)

(蔚山朴氏 문중에서는 문중의 미역바위를 '海巖'이라고 부른다.)

(실제 미역채취를 담당하는 마을에서 주는 채취료를 '稅'라고 부른다.)

1943년까지 해암 稅로 미역 12단(120올), 유장(장국물) 및 전복 3말을 받았다.

1944년과 1945년에는 일제가 稅를 침탈하였다.

해방후 다시 미역 稅를 받아 朴氏 宗家에 인도하였다.

1949년 農地改革法 이후 미역 稅를 못 받게 되었다.

蔚山 고을 유림들이 일어나 유적지로 보존해줄 것을 상소하였다(1965년).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시 이후 어민들과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평년작 때 40올을 받기로 하였다.

어촌계(계원43명)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미역 세의 감액을 청구하였다.

1995년 이후 20올을 받는다.

현재 미역 생산량은 10단(100올)이다.

約定契約書

物件ヲ表示
 吾等 李 趙 子 親 趙 村 契
 爲 申 權 岩 (一 名 賜 岩)
 權 岩 (一 名 賜 岩) 所 有 者 蘇 山 朴 氏 宗 中
 親 趙 李 趙 子 親 趙 村 契
 代 表 朴 址 業
 朴 址 業 爲 申 權 岩 之 約 定 契 約
 結 成 後 便 首 上 蘇 山 朴 氏 宗 中
 代 表 朴 址 業 爲 申 權 岩 之 約 定 契 約
 子 親 趙 李 趙 子 親 趙 村 契 趙 村 契
 長 金 基 煥 以 以 名 爲 乙 卽 稱
 朴 下 記 條 項 卽 條 項 之 約 定 契
 約 卽 締 結 契
 就
 第 一 條 申 今 卽 第 三 乙 卽 稱

자료 3-③ : 미역바위 약정계약서 (구유리) 제1면

契約管理權を譲渡するに
 して譲渡料
 第1條 乙は毎年舊(旧)作況の依
 して最下或速最高回東電
 甲に納品する以外
 第2條 管理期間を約定するに法
 律規則の制限永久継承する
 以外
 第4條 本條項を變更する時乙
 雙方の合意の變更程序以外
 備考 甲乙代表者外人名各
 各有署名
 本約定を遵守する為に本約定
 書を通過して作成し各已達通式
 を保持し後日互に譲渡料
 昭和1980年6月24日

자료 3-④ : 同前 제2면

泰山孔氏宗中代表		
甲	孔	址業 (Seon-gyeon)
連帶人	孔	好龍 (Ho-rong)
"	孔	浩燦 (Ho-cheon)
總契		
契長乙	金	基煥 (Gi-hwan)
引總代	劉	尚杰 (Shang-je)
代表契員	金	利壽 (Ri-su)

자료 3-⑤ : 同前 제3면

* 미역바위(2)

: 權利意識

박씨문중에서는 강동의 문중 미역바위에서 나는 미역으로 장무공 사당에 제사를 지낸다.

장무공 사당은 경남 양산시 웅산읍 용당리(일제 이전에는 흥려 고을에 소속되었다)에 소재한다.

(박씨문중에서는 마을에서 미역 稅를 받는 일을 두고 「진상」이라고 표현한다.)

朴氏 문중에서는 현재 '소유' 관념을 주장하기보다는 "조상들의 유적으로 보아 지방문화재로 보존하고 싶다"는 입장을 취한다.

나라로부터 이 미역바위를 하사받았다는 기록은 현재 없다.

그러나 박씨 문중에서는 미역 稅를 받은 것을 두고 '하사'의 증거로 본다.

박씨문중은 "고을에서 인정한다"고 단정한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문중소유이다."

종래 '문중재산'을 등한시하였다.(향중도 마찬가지이다.)

탐내는 이가 지독하게 마구잡이로 달려들면 빼앗기고 만다.



사진 3-① 울산 朴氏門中 채암비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동면 구유리 소재)

- * 高麗 元勳 홍려백(옛지명: 고려를 흥하게 만들었다) 莊武公 ‘採巖碑’
: 일명 양반돌(班巖)의 前面記錄

[요 지]

朴允雄은 三韓을 통일한 창업의 원훈이다. 고려 태조는 윤웅을 대장군에 승진시키고 홍려백에 봉하다. 公이 살던 울주의 유포·동진 두 고을을 채읍지로 하사하다. 그래도 부족하여 유포의 麓巖 12區를 하사하여 公의 성명을 바위 전면에 새기고 뒷세상에 전하다.

옛날의 채읍지 유포·동진 두 고을은 없어진 지 오래다. 영조 때 靈城君 박문수가 왕명을 받들고 州郡을 순찰하는 중 이 지방에 도착하여 바위

의 유래를 물었다. 어사는 장무공의 후손들이 더러 세력을 부려 폐단이 생길까 염려하여 임금께 보고하여 諸公物 소유로 만들었다.

그후 3년간 藿蒂가 흉년이 들어 어민들이 굶어 죽었다.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정에 호소하여 예전과 같이 되돌려 받게 되었다. 미역은 곧 대품이 들었다. 1년 생산으로 3년 채무를 갚았다. 이후로 納稅가 옛날과 같아서 제단향사의 供物에 쓰게 되었다.

광복후 어민들이 私有로 만들어 稅를 바치지 않았다. 고을 인사들이 정부에 탄원하여 여론이 관철되었다.

단기 4303년 경술 팔월 상완

응천 박용진⁴⁹⁾ 지음

(側面記錄) 단기 4317년 갑자 사월 후손 인철 글썸

[전 문]

장무공 채암비문 병서

대저 신하가 되어 국가에 공훈이 있으면 임금은 반드시 특별한 은전을 내려 포창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領地를 봉하고 畫像을 그려 모시고 사당을 지어 제사를 올리는 것들이 그것이다. 진실로 하늘이 낳은 위인 결사가 아니면 그 누가 여기에 참여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고을 흥려백 박공 允雄은 실로 하늘이 낳은 위인 결사라 曆數의 소제를 관찰하고 順逆이 不同함을 판단하여 고려래조를 보좌하여 凶徒를 목베어 삼한을 통일한 創業의 元勳이다. 고려래조가 가상히 여겨 大將軍에 승진시키고 흥려백에 봉하였다. 공의 살던 곳 蔚州의 柳浦 東津 두 고을을 采邑地(領地)로 하였다. 그래도 부족하여 또 柳浦의 미역바위 十二구를 하사하여 공의 성명을 바위 전면에 각하고 무궁토록 뒷세상에 전하였다. 사후에는 「장무공」이라 贈諡 하였으니 임금으로써 공로에 보답하는 은전은 가히 지극하였다. 말하리

49) 밀양박씨

독립투사 박상진 장군항렬

10년전 작고

‘못골어른’으로 호칭

경상도 일원에 선비로 칭송

로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고을의 인사들이 공의 혼렬을 사모하여 사당을 짓고 단을 모아 제사 올리기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또한 가히 천성과 민심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겠다.

아! 공의 이후 이미 천년의 세대가 흘렀다. 그간에 세상은 상전벽해로 여러번 변했다. 아! 옛날의 采邑地 유포 동진 두 고을은 비록 없어진지 오래나 오직 미역바위(藿巖) 十二구만은 우뚝 솟아 울로 풍우 속에서 남아 있으니 오히려 공의 집안 장물이 됨직하다.

지난 英祖때 영성군(靈城君) 朴文秀가 王命을 받들고 州郡을 순찰하는중 이 지방에 도착하여 바위의 유래를 물었다. 어사는 앞으로 장무공의 후손들이 더러 세력을 부려 폐단이 생길까 염려하여 임금께 보고하여 諸公物의 소유로 만들다. 그 후 三年간 曠地(藿蒂: 미역꼭지)가 흉년이 들어 어민이 전적으로 여기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장차 굶어 죽게 되었다. 드디어 어민이 공동으로 조정에 호소하여 예전과 같이 되돌려 받게 되었다. 그랬더니 미역을 곧 대풍이 들어 일년 생산량으로써 三年 흉년의 채무를 갚게 되었으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이후로 남제가 옛날과 같아서 재단 행사(享祀)의 비용에 쓰게 되었다. 비록 왜정시대도 폐한 일이 없었다. 왜정이 물러가고 광복이 되자 토지 및 모든 제도가 변경이 되니 어민들이 私有로 만들어 稅를 바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고을 인사들이 흥분하여 일제히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여론이 관철되었다. 만약 하늘의 도움과 공의 공덕이 물우하지 않았던들 어찌 이렇게 되었으리요.

이어 한좌의 비석을 세워 뒷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으나 항상 재력이 모자라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마침 斯文(士人사인) 高基業이가 壇의 首任(단의 책임자)으로 있으면서 개연(慨然)巨金을 회사하니 진실로 각박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가히 높이 험모한 일이며 한말 청하였다. 나는 실로 말할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固辭할 수 없었다. 뒤 몇일 후 종손 址業은 그 일가 東植과 같이와서 또 득축하였다. 실로 공의 고을에서 성장한 우리들이 감화를 받은 점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득이한 일이다. 드디어 參謁(僭濫)함을 잊고 우와 같이 얘기한다. 끝으로 한 말씀 거듭하노니 이 반석은 동해가에 우뚝솟아 마치 천년 전의 사적을 말하는 것은 즉 고려조 元勳 장무공의 采巖이다. 옛 周나라때 召公(召伯, 姬姓, 이름은 奭, 召에, 食采上公이 되었다. 周公과 더불어 善政함)이 甘棠(甘棠: 杜棠, 白은 棠 赤은 杜) 밑에 일찍 쉬어간 일이 있었다. 國人은 召公이 애민한 그 사

람으로서 무정의 한 식물에 까지 끊지 말라. 베지를 말라 경계하였다 한다. 항차 이 바위는 임금이 하사한 것이고 공의 성명을 여기에 각하니 공의 훈덕이 여기에 증명되어 있다. 그 경증은 가히 같은 날에 말할 수 없으나 이 고을사람들이 바위를 사랑하는 마음은 마땅히 周나라 사람이 감당을 사랑하는 것 보다 백배 더할 것이니 세상이 달라져 그렇게 되었다 할 수 없다. 그런즉 이는 다만 구구한 한 고을의 다행일 뿐 아니라 또한 이 나라의 전 지역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 다만 세상은 樸古하지 않다. 그 누가 풍아(風雅：國風，大雅 山雅가 있다. 文章이란 뜻도됨)로 채택하여 폐배(蔽芾：盛貌，——甘棠勿剪勿伐(詩)) 운운을 二南(周南 召南)중에 실을고? 이것이 가탄할 일이다.

단기 四三〇三年(1970)정술 八月

응천(凝川：密陽舊號) 박 응진(朴壙鎭)지음

大 統 領 專 用 紙

<p>每仰南好言義之世家也心梅於</p>	<p>身軒允積且久意以一趨於千古之下志令心</p>	<p>未之為負於幽明之間何大何慢願不辜則</p>	<p>幸甚惟冀 身安只此書</p>	<p>一九六六年三月之</p>	<p>大統領 朴正熙</p>	<p>朴 駿浩 貴下 龜崗樓於河</p>
----------------------	---------------------------	--------------------------	-------------------	-----------------	----------------	--------------------------

자료 3-① : 박정희대통령 서한(1966년)

<p>謹啟</p>	<p>貴先祖興麗伯麓巖奉承</p>	<p>大統領閣下還元命通告於慶南知事及</p>	<p>蔚州郡守蔚州郡江東正溪系組長長孫云</p>	<p>之呈仰 一九六六年五月三日</p>	<p>大統領秘書室長李厚</p>	<p>朴 駿鎬 費下</p>
-----------	-------------------	-------------------------	--------------------------	----------------------	------------------	----------------

자료 3-② : 이후락 비서실장 서한(1966년)

박대통령 서한

매양 영남 지방의 절의(節義) 있는 집안을 우리러 마음속으로 존헌(尊軒)을 손꼽아온지 오래 되어 한번 千古의 옛 자취를 찾고져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못하여 유명(幽明)에 저버림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 이처럼 만홀할 수 있겠는가. 바라건대 허물하지 않으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오직 존체(尊體)의 만안(萬安)을 빌며 이만

一九六六年二月二日

박준호 귀하 용감단소내

대통령 박정희 ㉔

근 계

귀선조 흥려백(興麗伯)의 광암(蒼巖) 일에 대하여 대통령각하(大統領閣下)의 돌려 주라는 명령을 받들어 경남지사(慶南知事)와 울주군수(蔚州郡守) 및 울주군 강동면 어업조합장(蔚州郡江東面漁業組合長)에게 통고(通告)하였으니 양해 하시기 바람.

一九六六年五月三十日

박준호 귀하

대통령비서실장 이후락 배

(2) 蔚州 강동 : 박봉수

주 소 : 경남 울주군 강동면 구유리

면담일자 : 1997년 8월 15일

* 미역바위(1)

울산 지역의 미역바위는 각 어촌계원 모두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다.

구유리에도 개인 미역들을 소유한 權主는 없다.

農地改革法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

예전의 생각 : “이 미역바위는 莊武公 소유의 바위이다.”

이 미역바위는 ‘양반바위’(班岩)로 불렸다.

울산에 관한 역사민속 개관은 다음 자료를 참조 :

李有壽 지음 蔚山郷土史 연구논총(1996.12.30 : 울산시 울산향토사 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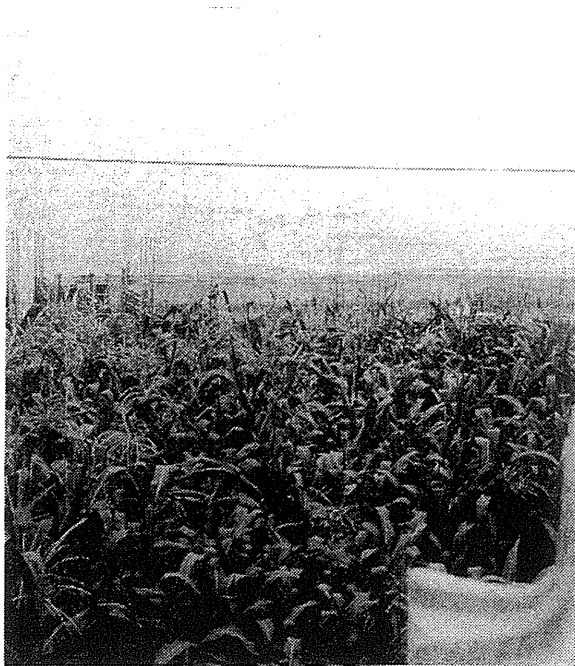


사진 3-② 양반바위(海巖) - 울산 朴氏門中の 미역바위
: 전선 아래 흰색 물거품 부분
(채암비로부터 100여척의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 미역바위(2)

: 莊武公 미역돌에 대한 住民意識

마을 漁村契에서는 祭需用 '先物'로 바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미역 돌의 所有權이 마을에 있다"고 생각한다.

莊武公의 명성을 고려하여 膳物을 끊을 수 없다.

선친께서 어촌계장 때 朴正熙 前 大統領의 諭示를 근거로 "朴氏 門中에 선물을 계속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3. 西海南部 : 新安 黑山島

「豫備調査」

(1) 黑山水協 : 放談

면담일자 : 1997년 8월 16일

[甲] 박기성

주 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多物島里 237번지

전 화 : 0631-246-2860

나 이 : 男49세

인적사항 : 黑山面 水協 理事

[乙] 김정혁

주 소 : 흑산면 다물도리 144번지

전 화 : 0631-246-4581

나 이 : 男32세

인적사항 : 多物島 어촌계장

[丙] 김완식

주 소 : 흑산면 다물도리 182번지

전 화 : 0631 246 2182

나 이 : 男47세

인적사항 : 多物島 里長

* 마을개황

한국의 섬중에서 24번째로 크다.

최초의 주민(尹氏일가)의 入島 시기는 약 450년이다.

장보고 장군이 거쳐간 길이다.

多物島 북방에 '뚝단바위'가 있다. 신라방을 찾아가기 위한 표지로 본다.

백제시대의 '다물'(담)과 관련이 있다.

현재의 흑산면 구성 : 25개 행정리 / 19개 어촌계

多物島里的 경우에는 1962년 주민 150세대에 1,000명이 거주
현재에는 110세대에 500명이 거주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웃사촌 의식이 희박해 진다.
黑山島는 일제 때까지 지주마을이었다.
「섬 지방에는 '가보'(과부)가 많다.」



사진 4-① 다물도 포구 전경

* 生産現況

어류와 물건이 많다

최고 생산량 : 1가구당 미역 1점(100뿔) - 2점(200뿔)

다물도 어촌계에서 흑산면 水協 물량의 60% 내외를 공급하였다.

동력선 어업의 등장과 더불어 전마선·범선 시대는 마감되었다.

1960년을 고비로 해조류 시대도 종언

현재는 툇·김이 있어도 채취하러 가지 않는다.

1975년까지 해조류의 가치가 폭락하였고 1993년에 이르러서는 아예 무관심하게 되었다.

노년층에서 소일거리로 약간씩 채취한다.

당시 미역 1뭇(20가닥)에 12,000원~8,000원(현시세로 치면 100,000
원에 상당)을 호가

현재 미역 시세 1뭇에 20,000원을 호가

최근에는 몇 뭇 정도도 힘들다.

감산원인 : 유류 오염탓이다.

동력선이 늘어날수록 미역생산량도 줄었다.

요즈음은 끝까지 채취하지도 않는다.

* 漁村契

어촌계 定款 있었으나 현재에는 없다(회의록 형태로 존재한다.).

집 소유자면 어촌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계율 : 총회 회부
셋방 가구는 제외된다.

여자 혹은 학교선생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어촌계 입회비는 200만원이다.

5년 이상 거주한 객지 전업자는 1,000만원이다.

이 입회비는 탈퇴시에 반환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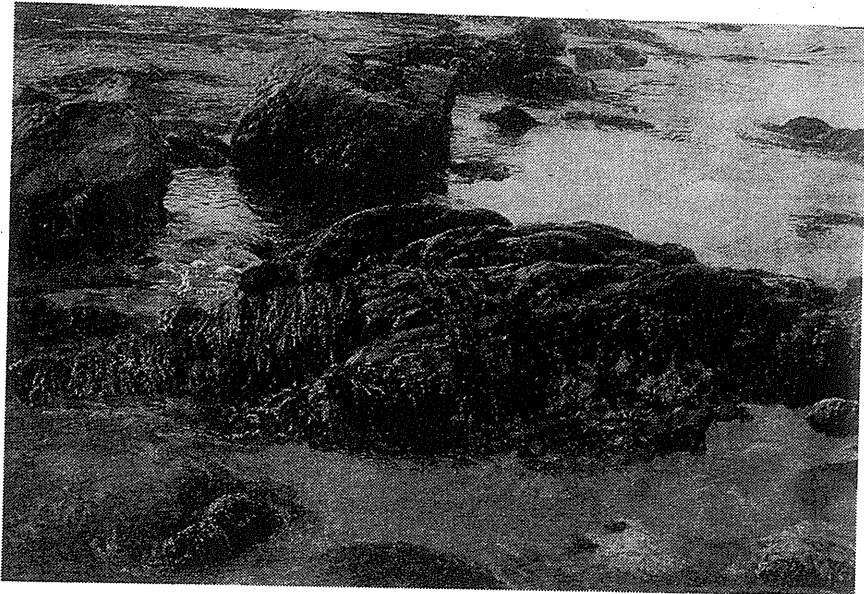


사진 4-② 다물도 해초바위

(이런 바위들에서 김과 파래 그리고 미역 등을 철따라 채취한다.)

* 두 레

공동생산이나 노동에 관한 명칭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공동채취·분배의 시작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9대조 어른 때부터 전해져 오는 말로는 朝鮮 英·正朝 시대로 본다.

그 이전은 잘 모른다.

사리 때 채취하고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부인과 남편의 노동가치는 동등하다.

가족중 1인(1가구 1인)이 협업에 참여한다.

채취대상물 : 미역, 툇, 김, 김포(가사리)

현 재 : 共同漁撈 불참시 고의가 아닌 경우, '첫 물'은 분배하고 이후의 채취물은 漁撈參與者에게만 분배한다.

10年前 : 하느님이 주신 소득으로 생각하였다. 해조류가 주된 생활수입원이었을 때에는 공동어로에 不參하면 욕을 먹게 되므로 불참자는 대리인을 세웠다. 고의가 없으면 공동분배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獨居)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이 5對 5로 분배하였다.

* 境界表示

多物島를 4개의 班으로 나눈다.

매년 윤번제로 채취구역을 바꾼다.

경계구분은 굴이나 돌출부를 기준으로 한다.

명시적 경계 표시는 없다.

신세대들은 경계를 잘 모른다.

경계 부근의 시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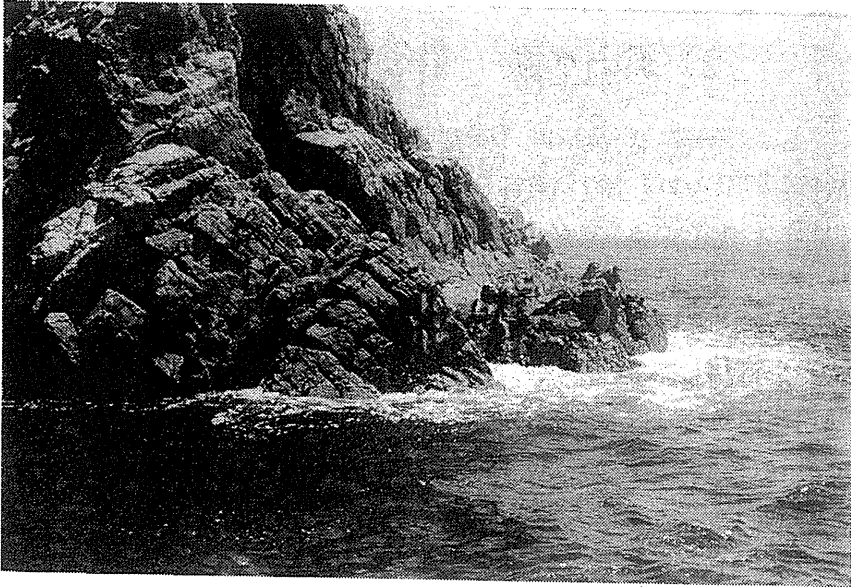


사진 4-③ 明認方法 1 - 해초 채취구역의 표시(정면 중앙 흰색 반점)
(흑산면 홍도리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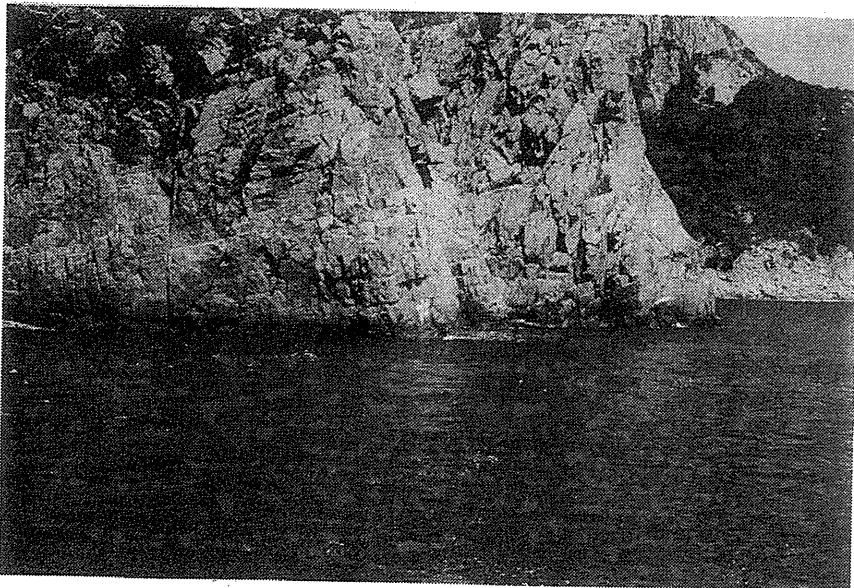


사진 4-④ 明認方法 2 - 흰색 수직선 좌우의 등근 점의 개수로 경계를
표시한다(정면 중앙 흰색 반점).
(흑산면 홍도리 소재)

(2) 黑山水協 : 김동윤

주 소 : 흑산면 다물도리 161번지

면담일자 : 1997년 8월 16일

인적사항 : 黑山水協 代議員

전 화 : 0631 246 3468

* 漁業許可制의 矛盾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葛藤

어업구분 :

- 연안어업(8톤 미만 어선)
- 근해어업(8톤 이상 어선)
- 원양어업

연안은 육지를 기준으로 하루권에 속한다.

(연안은 출항후 24시간 이내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이다.)

黑山島는 연안과 근해의 경계에 위치한다.

흑산도의 연안어업은 연승허가를 중심으로 한다.

연승어업은 '낚시어법'(미끼와 주낙을 사용한다)으로 우럭등을 잡는다.

근해어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안어업은 멀리 가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근해어업자들이 연안어업자들의 어로구역을 침입한다.

예컨대, '총무어선단'은 연안까지 굽어 어족을 고갈시킨다.

집 앞까지 건드린다.

연안조업선은 대항력이 없다.

연안어업은 4명이 조업하거나 부부가 조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셈이다.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2마일 안에서는 근해어업자들의 조업을 막아야 한다.

큰 배들은 섬에서 예컨대 12마일 이상 떨어져 조업하여야 한다.

작은 배들도 실제 30마일까지 조업을 나간다.

양자의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

작은 배들은 대형선박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입는다.

- 작은 배들은 어구를 잃는다.
- 힘에서도 눌린다.
- 분쟁시 구조요청이 이뤄지지 않는다.

유사지역 : 울릉도,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 흑산도, 백령도, 고군산군도, 격렬비열도

현행 수산업법은 연안어업의 보호에 너무 무관심하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구분해 줘야 한다.

操業區域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근해어업에 치중한다.

黑山水協 등에서 법개정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

현지답사 없는 탁상공론식 정책은 피해를 낳는다.

* 船員契約

조업기간 : 보통 한달에 15일 내외

보수계산 : 봉급제와 부합제를 병행한다.

- 기선저인망 : 기본급 + 추가계산

- 안강망(중선배) : (선원) 3 對 (선주) 7로 분배

모든 경비 선주가 부담

사고 때 선원에게 유리

선주와 이북 출신 선원들이 선호

(선원) 4 對 (선주) 6으로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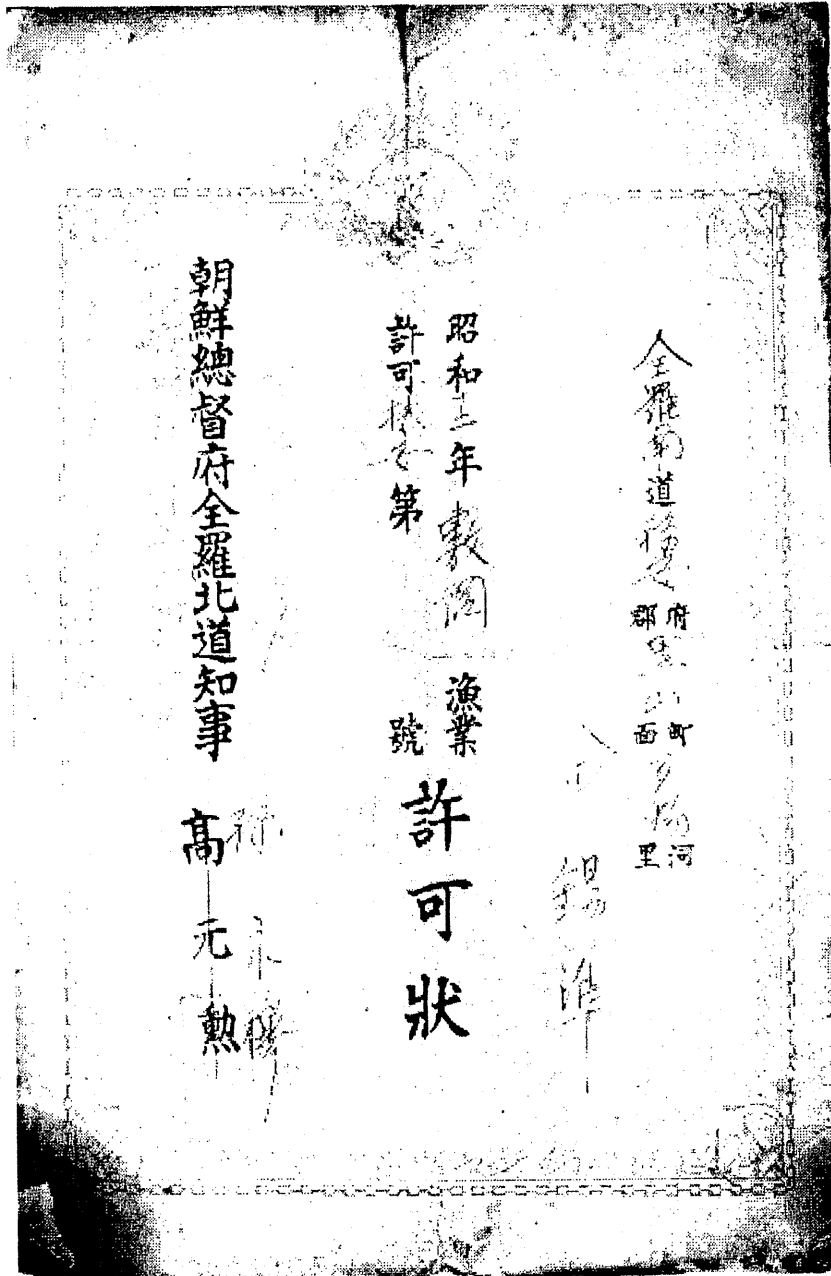
경비도 같은 비율로 분담

(선원) 5 對 (선주) 5로 분배

경비균분

남한의 선주들이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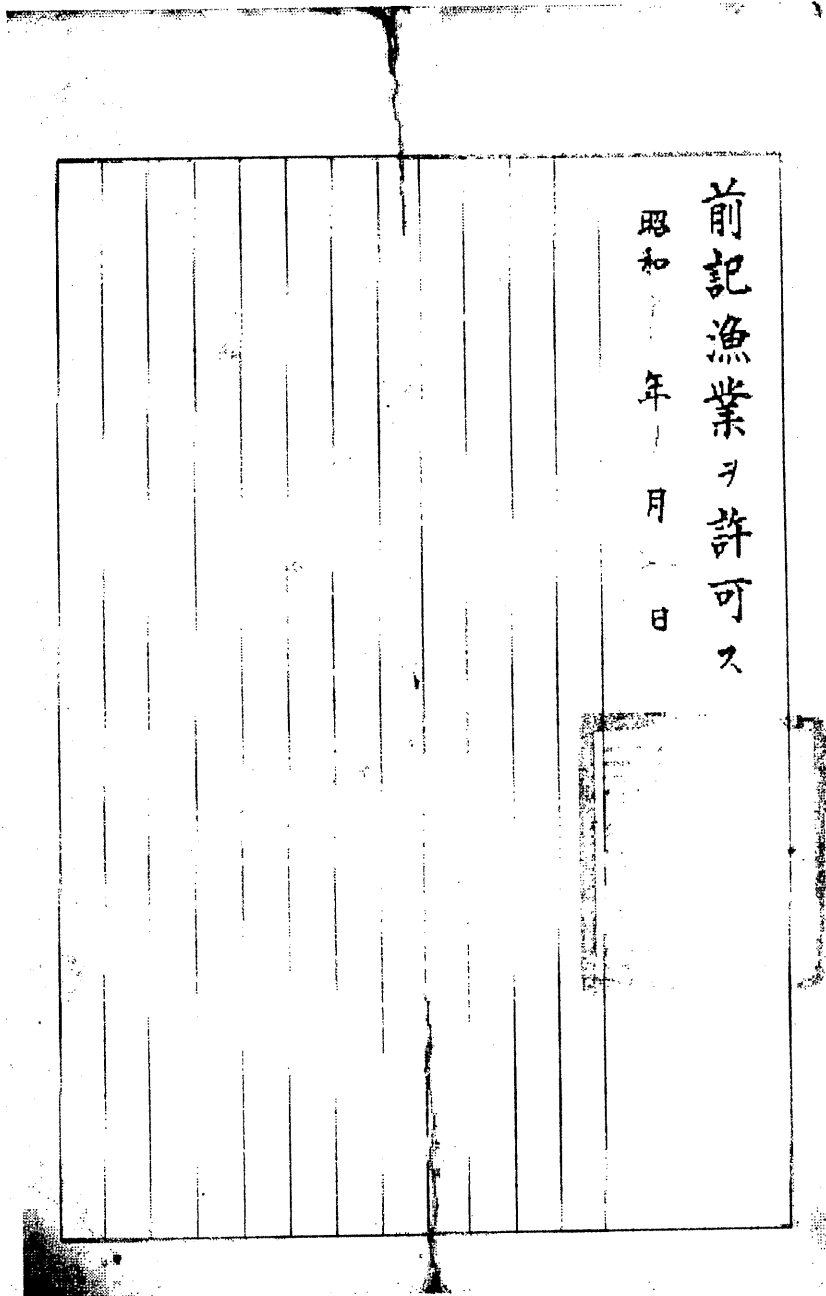
- 유자망 : (선원) 3 對 (선주) 7 또는 (선원) 4 對 (선주) 6으로
11배



자료 4-① : 1937년의 어업허가증(흑산도) 제1면
소장자 - 김종기(子 김동윤)

漁業ノ種類	漁業
漁業ノ名稱	漁業
漁具又裝置ノ名稱	
採捕區域	全羅北道沿海
漁業ノ方法	
漁網ノ長サ	六四メートル
漁船ノ種類名稱 及積量(噸位)	日本型平船 長十 肩巾 ノ ト ル
漁船(隻)毎、生産食 機關ノ種類又馬力	
採捕物ノ種類	
漁業ノ時期	自 月 日 至 月 日
許可ノ期間	自 年 月 日 至 年 月 日
制限又ハ條件	

자료 4-② : 同前 제2면



자료 4-③ : 同前 제3면



자료 4-④ : 同前 제4면(주의사항)

(3) 黑山水協 : 박기성

주 소 : 黑山面 多物島里 237번지

면담일자 : 1997년 8월 16일

전 화 : 0631-246-2860

인적사항 : 黑山水協 이사

* 漁民福利

: 觀光稅 입법의견

근해에서의 팡다리(황석어·황새기) 조업 : 대형어선과 자주 충돌한다.

정부에서는 '잡는 어업'을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한다.

해적질 : 머구리들이 전복, 해삼, 성게를 훔쳐간다.

알맹이 없는 행정지도로 그치기 쉽다.

多物島도 잠재관광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물도의 경우 유람선들이 마을을 돌아가지만 주민들은 10원도 혜택을 못받는다.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4) 多物島 漁村契 : 김정혁

주 소 : 흑산면 다물도리 144번지

면담일자 : 1997년 8월 16일

전 화 : 0631-246-4581

인적사항 : 多物島 漁村契長

* 落島 航路不便

: 단속장려 · 주민할당제

다물도는 기존에는 항로에 속하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쾌속선이 경유하지 아니한다.

보통선도 격일제로 운항하고 있다.

(하루는 목포에서 들어오고 다음 날에는 흑산에서 목포로 나간다.)

해운회사의 푸대접 · 횡포가 심하다.

해운회사는 1년 운항으로 본전을 다 뽑는다.

그렇다고 하여 주민들이 어선에 사람을 태우고 가면 '딱지'를 끊는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어선 1척에는 3명 이상 못 태운다.)

이에 불응하여 큰 소리라도 치게 되면 해양경찰로 이첩된다.

돈 받고 묵과해주는 경우도 절반에 이른다.

1달용 딱지를 상부에서 보내 단속을 장려한다.

公用渡船도 없이 면책용 단속에 주민들 불만이 높다.

교통편 때문에 인심이 각박해진다.

渡船이 필요하다.

주민들을 위하여 船票의 '1日比率'을 배정해야 한다.

「주민쿼터제」가 없어서, 지방민들은 船票를 못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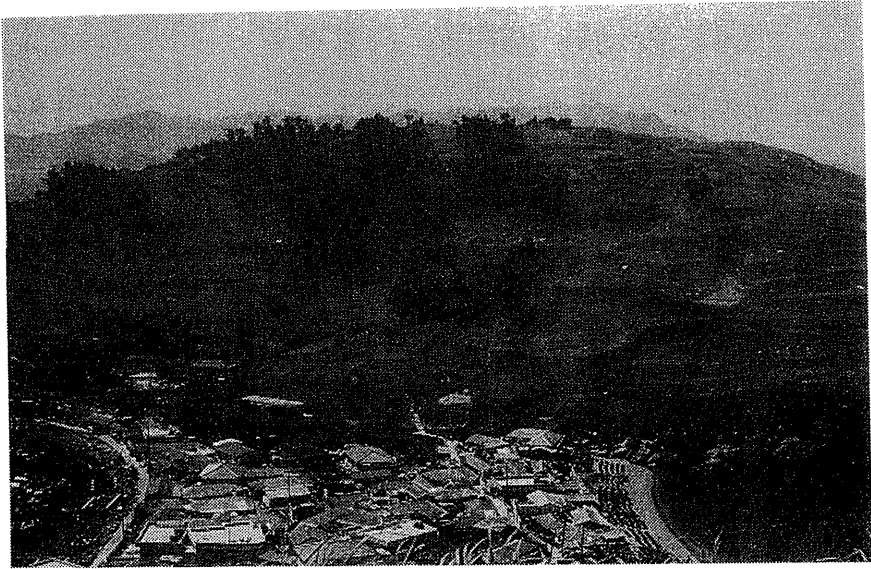


사진 4-⑤ 다물도리 전경
(앞 뒤 해변 사이에 마을이 위치한다. 전면의 언덕은 당숲이다.)

(5) 多物島里 : 金鐘起

주 소 : 흑산면 다물도리 161번지

나 이 : 1929년생

전 화 : 0631 246 2692

인적사항 : 全南 무안 함평 → 신안 자은도 → 多物島 入島(선남 할아버지)
(이웃 水里에는 萬武 할아버지 入島)
→ 증조부 때 (의병들 당진으로) 함평으로 이주 → 羅州 거주 →
(아전들 착취로) 함평으로 이주 → 大東亞 전쟁末 (부친 때)
再入島

* 下賜 미역바위

: 金理守 門中 事例

(1) 郎廳 할아버지 金理守의 가계

김해 김씨 文敬公派 門中 (提報者 金鐘起씨의 家系)

金起寅(1686년생) : 전남 함평

↓

金範日(1707년생) : 자은島로 입향

↓

金萬武(1722년생) : 묘소 - 흑산면 水里

↓

金 坤(1737년생) : 묘소 - 흑산면 도목리 '가는 개'(細浦)

↓

金理守(1756년생) : 묘소 - 흑산면 鎭里(부인 묘소 - 흑산면 도목리)

(2) 郎廳 할아버지 金理守의 年譜

英祖 丙子年 12月 25日生

1777년 正朝 丁酉 行璿源錄書寫 郎廳

忌日 2월 24일

梨木洞嶺上壬坐 贈 通政大夫 工曹忝議

(3) 미역바위 下賜 背景 및 採取權의 相續

: 水里居住 後孫들의 證言과 比較

정조 때 도주한 궁녀를 수색하기 위하여 붓짐을 싸들고 전국을 수 소문하여 경상도에서 궁녀를 찾아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왕으로부터 간데대섬(中竹島 : 무인도)을 '미역 바위'로 하사받았다.

낭청 할아버지는 다물도리 인근의 水理에 살면서 (다물도 구역에 속하는) '간데대섬'(가운데 대 섬)의 미역을 채취하였다.

이후 가사리, 툫, 김은 다물도 주민들이 채취하였다(日帝 때까지 채 취하였다).

당시에는 미역만 시세가 있었다. 대섬의 물량이 풍부하였다.

현재에는 水理에 거주하는 장손(김한경·김정옥 형제)들이 미역을 채취한다.

흑산관내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

섬 자체의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4) 住民意識·賣買事例

수리와 다물도 주민들은 대섬의 미역채취 문제로 다툰 적이 없다.

미역금이 비쌌던 일제 때(호수 70~80호·인구 500여명)에도 그 러하였다.

현재 낭청 할아버지 미역바위는 宗孫들이 채취하고 있다.

개인들이 "미역바위를 사고 팔았다"는 사례는 흑산내 다른 지역에도 없다.

장차 미역 금(시세)이 좋아져 미역바위가 '生金바위'로 바뀐다고 하 더라도 국가에서 김씨 문중의 미역바위에 대하여 채취권을 인정하 리라고 믿는다. 國有物(임금님 소유) 下賜 바위를 몰수한다면 임금 님을 무시하는 셈이다. 따라서 그 후손들이 해산물을 계속 채취하여 야 한다.

(5) 관련문서[教旨 등] 소장자 정보

김이수의 후손 (水里 거주) 김중완·김길식 형제 (작고)

김중완의 자 김정옥(김원옥) : 전화 0631 246 2315

김길식의 자 김근택 (65세) : (주소) 흑산면 수리 121번지 (전화) 0631 246 3906

김근택의 사촌동생 김충일 : 서울 02 924 3233(事) 02 927 4558(宅)

* 烈女表彰

黒山 居住 夏千 金千湖(1871年 辛未生・辛丑年卒)의 妻 朴氏(1872年 生) 烈女表彰

孔子 誕降 2474年

표창받은 사람은 함양 朴氏이다. 무안 朴氏는 誤記이다.

褒 狀

務安 朴氏

김천호의 처 박씨는 성품이 정숙하여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겼으며, 남편을 봉양하는데 조금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나이 겨우 스물에 남편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박씨는 매일밤 북두칠성에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고 손가락의 피를 남편에게 먹여 며칠간이나마 생명을 연장시켰다. 상을 치루게 되어서는 슬픔으로 몸이 상하였고 해야 할 정도보다도 많은 예를 행하였으며, 무덤가에 여막을 지어 3년상을 마쳤다. 땅은 비록 멀고 구석지지만 뛰어난 행실은 지금까지 찾아 보기 힘들다. 이에 규정에 따라 표창하여 불후의 일로 삼고자 한다.

공자 탄생 2474년 5월 24일

大東斯文 회 장 민영휘
부 회 장 정만조
총 무 어운적
경현부장 송지현

삼가 알립니다

삼가 말씀드릴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조각 한조각 순수한 영혼은 변함없이 남편을 위해 지조를 지켰으니, 가문의 성쇠와 개인의 불행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은 자를 역사가들은 모두 ‘公烈’이라고 합니다. 본군 흑산면 다촌리의 죽은 선비 김해 김씨 김천호의 처 함양 박씨가 평생 수절한 일은 목숨을 바쳐 싸운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공열’로 표창하지 않는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박씨의 변함없는 마음은 전적으로 남편만을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

있으며, 친정부모와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공경하였습니다. 나
이 겨우 열아홉에 남편을 잃었는데 자식이 없었으며, 집안이 극도로
가난했지만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품팔이로 살바느질과 철구질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구차하게 남은 목숨을 연명했지만, 이것이 어찌 목
숨을 바쳐 남편따라 죽을 줄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남편의 후사를
세우지 못해 몇대의 종사가 끊어지게 된 것을 매우 애통하게 여겨 ‘未
亡人’으로 자처하면서 지성으로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임종시에 후사를
세우지 못한 막대한 죄를 짓고 죽는 것 때문에 원한이 골에 사무쳐 친
척들에게 사정하여 다행히 남편의 후사를 세웠습니다. 아! 멀리 떨어
진 가난한 집에서 나서 종사가 영원히 끊어질 것을 애통하게 여겨 지
성으로 후사를 세웠으니 옛날을 상고해 이치에 밝은 장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씨는 타고난 성품으로 능히 옛날을 상고
한 장부와 같이 하였으니, 세상의 일반 아낙네들이 이 일을 본다면 차
라리 자신의 두꺼운 얼굴을 벗기고 부끄러움으로 죽으려 하지 않겠습
니까. 박씨가 홀로 곤궁하게 살면서 정절을 지킨 일에 감명을 받아 속
히 여러 군자들에게 알립니다. 숨겨진 선한 일을 드러낸 이러한 공문
서를 돌려 郡國에 알리고 결과적으로 임금께서 듣게 되어 마을에 정려
문을 세워 풍교를 수립한다면 천만다행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내 여러 군자분들께 알립니다.

임술 3월 일 무안 향교 문묘 직원 오회근

장의 유인호 박용래 박하상 정현섭
김문삼 조학현 정규영 김광수
다사 고성주 배병주 김기후 기우상
박열상 송영진 김위수 김연환
박운상
진사 김상진
다사 기숙도 박창화 배종희 유재오
고광묵 서무열 박기주 정대연
채기묵 나석균 임병재 박훈주
송상섭 정기상 박기순 정택엽
김성현 박종상 김이권 최도삼
박태문 박병태 김박현 박계상
서석종 조치형

黑山面 여러 선비들의 추천사

삼가 아뢰옵니다. 뛰어난 정절과 행실이 섬에 사는 가난한 집에서 나왔는데 구중궁궐은 깊숙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무슨 방법으로 빠뜨리지 않고 밝혀 표창하시는 성상께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희들은 본면 다촌리 박씨의 뛰어난 행실을 빠르게 여러 군자분들께 한목소리로 아뢰옵니다. 삼가 원하건대 여러 군자분들께서는 특별히 살펴 주시어 선한 자를 표창하고 아름다운 일을 드러내 열녀문을 세워 풍교를 수립하신다면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씨는 본적이 함양으로 죽은 선비 김해 김씨 김천호의 처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은 전적으로 남편만을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으며, 친정부모와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공경하였습니다. 나이 겨우 열아홉에 남편을 잃었는데 자식이 없었으며, 집안이 극도로 가난했지만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품팔이로 샴바느질과 절구질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구차하게 남은 목숨을 연명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목숨을 바쳐 남편따라 죽을 줄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남편의 후사를 세우지 못해 몇대의 종사가 끊어지게 된 것을 매우 애통하게 여겨 ‘未亡人’으로 자처하면서 지성으로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임종시에 후사를 세우지 못한 막대한 죄를 짓고 죽는 것 때문에 원한이 골에 사무쳐 친척들에게 사정하여 다행히 남편의 후사를 세웠습니다. 박씨의 열렬한 지성이여! 진실됩니다. 역사를 두루 상고해보더라도 박씨와 비슷한 자가 드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지체하였습니다. 감히 ‘마음속의 생각은 숨기지 말라’는 의에 따라 말씀드렸사오니, 삼가 바라건대 여러 군자분들께서는 서둘러 도내의 명망있는 집안에 알려 이러한 훌륭한 행실을 문혀버리지 마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무안 향교 여러 군자분들께

임술 3월 15일

다사 이서진 한병섭 이태유 최문언
 김중채 김용준 이철홍 김주무
 조원숙 박응률 유근숙 임재열
 김병열 이준옥 이원삼 김진일
 박달현 박도삼 김유권 이형욱

* 告祀法

: 船王모시기 · 禁忌 · 淨化

무동력선 안강망 어선(돛2개)이 연평도까지 조개잡이를 나간다.

겨울 동안은 고기잡이를 못한다.

2월중에 고사날을 잡는다.

해상안전과 漁場의 運을 위하여 지낸다.

(현재 아들 부부는 고사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지낸다.)

석달에 한 번씩 고사를 지낸다.

고사 때에는 배에 검줄(금줄)을 친다.

고사 때에는 祭主의 생기를 본다.

妻가 임신을 하였거나 뺨을 당한 사람은 제외된다.

船主집도 깨끗해야 한다

船員도 배에 오르지 못한다.

개고기('추육'이라고 부른다)와 배는 상극이다.

"부정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고춧물 · 소금물과 향나무를 담근 물을 뿌린다.

船王을 모신다.

船王經을 읽는다 : 船王을 달랜다.

북, 징, 팽맹이, 세납(피리)을 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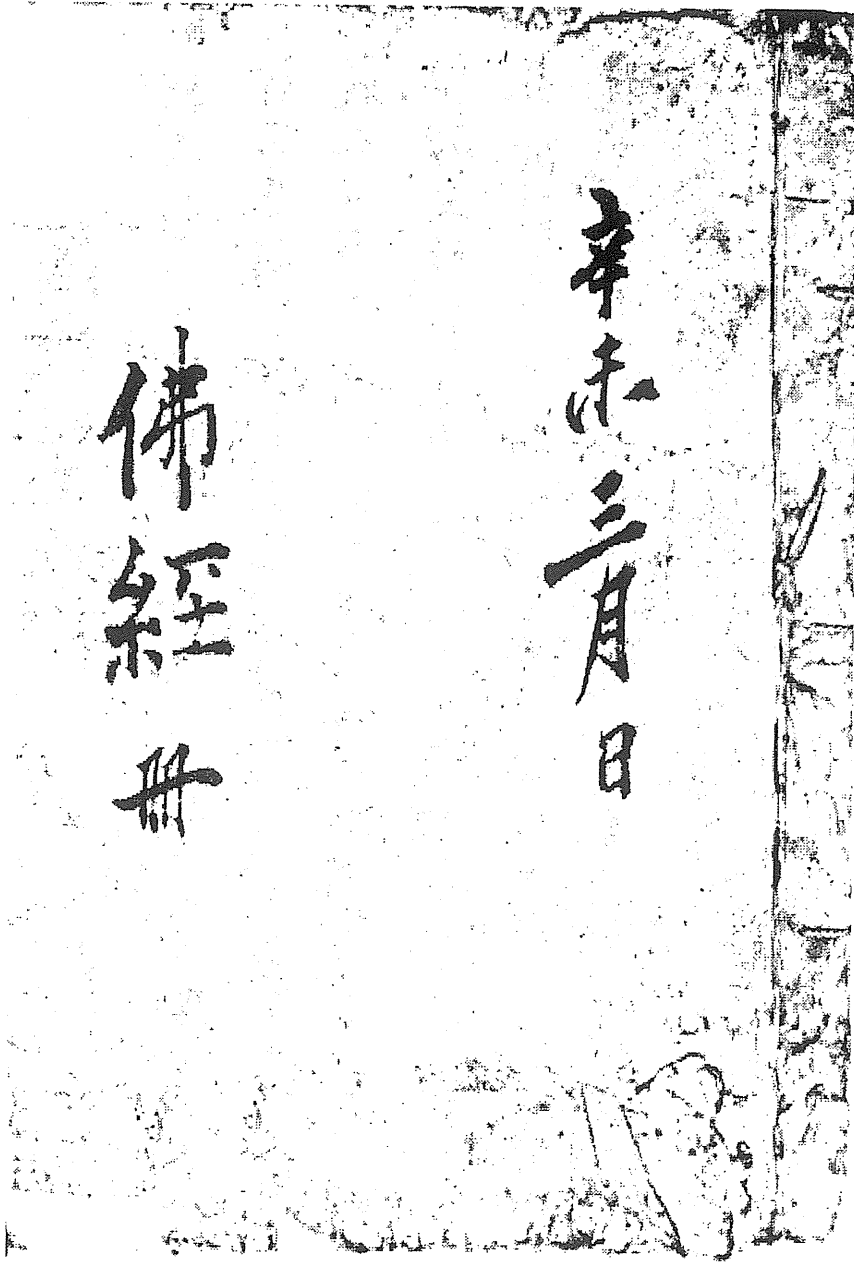
旗('공기'라고 부른다)는 오색형짚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5폭2발이다.

取魚經을 읽는다 : 豊漁를 기원한다.

출항날자를 받는다.

칠산바다(법성포 바깥)와 연평에서 각각 1달씩 어로한다.

(칠산바다는 "갯벌이 가라앉았다"고 하여 '칠메골'이라고 부른다.)



자료 4-⑤ : 漁家の 고사옹 佛經(필사본) 표지
소장자 : 김중기(子 김동윤)

伏說船王經

龍王初王本王神、龍王初王初王神、龍王歲初王柔神、
 龍王歲破初王神、龍王歲養蕃初王神、龍王羅末如王神、
 龍王天友初王神、龍王歲四神位初王神、龍王月主神、
 位初王神、龍王月德神位初王神、龍王月宮神位初
 王神、龍王月柔神位初王神、龍王日柔神位初王神、
 龍王天柔神位初王神、龍王地柔神位初王神、龍
 王歲柔神位初王神、龍王年柔神位初王神、龍王
 年主土木神位初王神、奉又劫柔神位初王神、奉又

青龍神位 祈王神、李又來雀神位 祈王神、李又白序
 神位 祈王神、李又玄、武神位 祈王神、李又勝上神位
 祈王神、李又白、陳神位 祈王神、李又土公神位 祈王神、
 李又伏社神位 祈王神、李又五行神位 祈王神、李又年
 主土公神位 祈王神、建誦 共下 祈王經 外 如傳、合、安、安、安、訶

船王經

奉又東方有行安宅地、奉又東方有行安宅地、
 奉又西方有行進福地、奉又北方有行厄患地、
 奉又咸造黃帝神、奉又有丑多丑、奉又
 多福多助、奉又王神、奉又多水多貴、奉又王神、奉又
 小厄、小除、地下、變冠、奉又王神、奉又水出、可、行、奉
 王神、奉又水甲、生、濟、奉又王神、奉又水曲、奉又進、奉
 王神、奉又水曲、前、逢、奉又王神、奉又奉帝、木、旺、奉

자료 4-⑧ 同前 : 船王經

王神、有又赤帝火照王神、有又白帝光照王神、
 有又黑帝水旺王神、有又黃帝土旺王神、
 有又東方青帝花王神、有又南方赤帝光王神、
 有又西方白帝光王神、有又北方黑帝光王神、
 有又中央黃帝光王神、有又東方王神、
 有又坤方王神、有又庚方王神、有又
 辰方王神、有又兌方王神、有又柔神、
 有又木火土神、有又六甲將軍王神、
 有又六乙將軍王神、有又六丙將軍王神、
 有又六丁將軍王神、有又六戊將軍王神、
 有又六己將軍王神、有又六庚將軍王神、
 有又六辛將軍王神、有又六壬將軍王神、
 有又六癸將軍王神、

자료 4-⑨ 同前 계속

有又甲子將軍、永王神、有又甲戌將軍、永王神、有又
甲申、甲寅將軍、永王神、有又太乙將軍、永王神、有又
太陽將軍、永王神、有又出門解懸神、有又友付
解懸神、有又在波海神、婆娑女司。

取魚經

青帝龍王取魚神。赤帝龍王取魚神。白帝龍王
 取魚神。黒帝龍王取魚神。蒼帝龍王取魚神。有又
 東方取魚神。有又東方取魚神。有又西方取魚神。有又
 北方取魚神。有又中央取魚神。有又南方取魚神。有又
 西方取魚神。有又北方取魚神。有又中央取魚神。有又
 東方取魚神。日中。月中。時中。食神。才取魚神。四海

자료 4-① 同前：取魚經

八才取妻神。一雙幽王母。一雙鬼神母。皆多歡喜。古
 音且未嘗坐前。如飲如食。然後外水中。與物引外
 裁。可重。是如積山。古且如東山。古所以與之。則
 耳音上付

伏說今受經。消大海。特和中。誦此經。純淡。則

有又及世音。甫產。有又佛。有又法。有又升。汝不由人。
 汝不由然。不法。世人。常落我前。朝念及世音。念
 念及世音。念二後身已。念二佛而神。傳羅神。然
 我神。人外羅。雖而神。一燈。在共何為真。有又馬下年
 也半羅。靈。大海地。甫產。風落甫產。

雨水甫產

취어경(取魚經)

청제용왕취어신(靑帝龍王取魚神), 적제용왕취어신(赤帝龍王取魚神), 백제용왕취어신(白帝龍王取魚神), 흑제용왕취어신(黑帝龍王取魚神), 황제용왕취어신(黃帝龍王取魚神), 나무동방취어신(南又東方取魚神), 나무남방취어신(南又南方取魚神), 나무서방취어신(南又西方取魚神), 나무북방취어신(南又北方取魚神), 나무중앙취어신(南又中央取魚神), 나무남해취어신(南又南海取魚神), 나무서해취어신(南又西海取魚神), 나무북해취어신(南又北海取魚神), 나무중해취어신(南又中海取魚神), 나무동서남북강취어신(南又東西南北江取魚神), 일중월중시중식신방취어신(日中月中時中食神方取魚神), 사해팔방취어신(四海八方取魚神), 일체유왕(一體幽王)과 일체귀신(一體鬼神)께서는 모두 다 기쁘게 길러주시옵고 자리에 임하시어 마시고 드신 후에 물속의 어물(魚物)이나 수만 마리의 고기를 산처럼 쌓아주시고 동산처럼 많이 마련하여 주옵소서.

불설몽수경(佛說夢受經)

대해(大海)를 건널 때 밤중에 이 경을 읊으면 순조롭게 건널 수 있다. 나무관세음보살(南又官世音甫薩), 나무불(南又佛), 나무법(南又法), 나무승(南又升)이여!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인연을 좇지도 마소서. 남을 따라가는 것을 본받지 말고 늘 내 앞에 이르소서.

조념관세음(朝念官世音), 모념관세음(暮念官世音), 염념종신기(念念從身己), 염념불이신(念念佛而神), 전라신(傳羅神), 찬아신(贊我神)이니라. 난이신(難而神), 일체재앙하위진(一體在央何爲眞), 나무마하반야바라밀(南又馬下半也半羅蜜), 대해지보살(大海地甫薩), 우수보살(雨水甫薩), 풍락보살(風落甫薩).

安宅經

有又東方安宅神 有又南方之神 有又西方之神 有又中央之神
 有又北方之神 有又上界之神 有又下界之神 有又乾方之神
 有又坤方之神 有又艮方之神 有又巽方之神 有又明堂之神
 有又青龍之神 有又白虎之神 有又朱雀之神 有又玄武之神
 有又不動之神 有又安宅神 有又四羽之神 有又
 道安宅神 有又不動安宅神 有又四羽之神 有又
 引美安宅之神 有又地之神 有又律令之神 有又波阿

자료 4-③ 同前：安宅經

佛說龍王經

他牙世界、月光瑠璃、明文山佛、無相光明、勒光
 明、善、善、清、淨、光、明、文、殊、室、校、善、善、善、善、東、牙
 鷄、頭、懶、蛇、天、王、有、牙、有、牙、毗、瑠、勒、六、天、王、有、西、牙
 毗、瑠、博、火、天、王、有、北、牙、毗、沙、門、龍、王、大、善、龍、王、賴
 木、龍、王、祭、皇、山、龍、王、須、彌、山、龍、王、伽、藍、王、老
 夫、波、善、龍、佛、值、龍、王、定、木、龍、王、迦、智、龍、王、君、心、龍、王
 善、中、龍、王、風、小、龍、王、毗、瑠、龍、王、善、皇、山、龍、王、祭、七、龍、王
 味、赤、龍、王、月、角、龍、王、史、白、龍、王、沙、彌、羅、龍、王、火、赤、龍、王
 水、攝、龍、王、德、义、加、龍、王、曳、日、阿、波、多、伍、仁、內、三、浦、多、
 曳、瑠、摩、伍、曳、瑠、毗、率、善、善、善、善、提、於、頭、尼、頭、耶、於、頭

仁一耶安 禪^年多根、三^足額、三佛頭、瑠頭、瑠^信提、信提、
娑婆 者、娑婆訶、

(6) 水里 : 김충일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30 동원빌딩 가동 401호

면담일자 : 1998년 8월 28일

전 화 : 02 924 3233

인적사항 : 黑山 水里 初等學校 3년 修學後 上京

* 미역바위 記錄(1)

: 朝鮮王朝實錄(金郎廳傳)

郎廳할아버지 史記 번역을 추진중이다.

조선왕조실록중 “金郎廳傳” : 건륭 47년 定宗大王 卽位7년

正祖實錄 제32권 正祖15년 辛亥5月 丙申條 22日卯時(221面)

(成均館 권오호씨(안동)가 번역중 1998년중 탈고예정)

實錄에 중죽도件에 관한 명문기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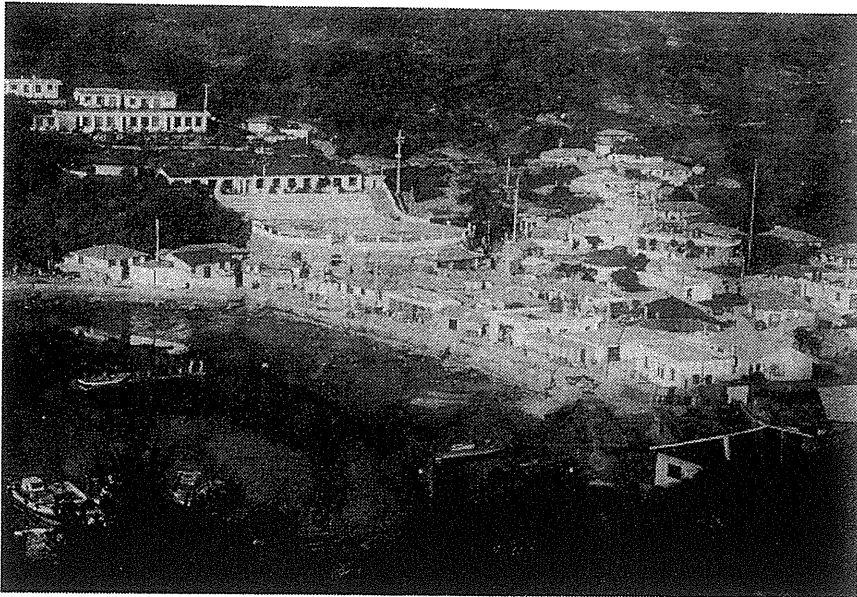


사진 4-⑥ 수리 전경

(수리 포구와 다물도 포구는 좁은 해협을 마주보고 있다.)

朝鮮王朝實錄 <正祖 卷三十二>

신해(辛亥 正祖10년 西紀 一七九一)년 五월 二十二일 丙申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과 약원제조(藥院提調)와 호혜당상(戶惠堂上)과 형조판서(刑曹判書)와 사폐(辭陞)하는 수령들을 불러 보셨다. 좌의정 채계공(蔡濟恭)이 계하여 말하기를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가 흑산도의 주민들이 양향청(糧餉廳)의 저폐(楮弊) 때문에 신문고를 울린 사실을 논계하였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그 섬은 토박하고 딱나무 뿌리가 질증이 되어 항상 지역(紙役)때만 되면 장점이나 노약을 막론하고 남정의 수자만 계산하여 八세로부터 四十세까지 딱나무 껍질 一萬二千九百근을 대금으로 환산하여 오백량씩 항상 정해놓고 거두어 드리는데 이것이 잘못된 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절해고도의 민폐를 통변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종이를 만드는 딱나무 껍질에 대한 부역은 영원히 혁타하고 양향청에서 쓰이는 비용을 호조에서 지급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상감께서 그대로 따르시었다.

* 미역바위 記錄(2)

: 承政院日記

承政院日記(1690策 89卷)에 郎廳할아버지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있다.

(個人 史記에는 '격징'제도를 이용하여 곤장30대를 맞고 음소하였다고 적혀 있다.)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조대 김이수 할아버지

흑산에는 딱나무가 많이 자생하였다.

종이를 많이 쓰다보니 딱나무도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관원들은 계속 세금을 부과하였다.

보리 사이에 심은 콩까지도 세금을 부과하였다.

관원들의 횡포에 육지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유지 6~7명이 상소하였다.

나중에는 낭청 할아버지 혼자 상경하여 여러 달만에 임금을 알현하였다.

임금에게 비리혁파를 건의하였다.

임금은 전라감사 정시민에게 보고를 명하였다.

정시민이 실정을 보고하자 左議政 채제공도 동의하였다.

「선원록 서사 낭청」(비서실 서기관에 해당한다)의 직위를 받았다.

承政院日記 1690冊 八九卷

신해(辛亥) 오월 이십이일 묘시(卯時)에 상감께서 회정당(熙政堂)에 계셨다. 약방(藥房)과 시임(時任)대신과 원임(原任)대신과 각신(閣臣)들이 문안차 입시를 하였고 여러 승지(承旨)들이 공사(公事)를 처리하기 위해 함께 입시했다. 당시 입시한 사람은 좌승지 이조승(李祖承), 우승지 유문양(柳文養), 좌부승지 홍의영(洪義榮), 우부승지 서미수(徐美修), 동부승지 이익운(李益運), 기사관 이해린(李海隣), 가주서 정상우(鄭尚愚), 기사관 홍락유(洪樂游), 서유문(徐有聞) 원임직제학 서호수(徐浩修), 이병모(李秉模), 박우원(朴祐源), 원임직각(直閣) 서정수(徐鼎修), 정동준(鄭東浚), 검교직각 이만수(李晩秀), 직각 서영보(徐榮輔), 검교대교(待敎) 심상규(沈象奎), 판부사(判府事) 이복원(李福源),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약방제조 오재순(吳載純), 부제조 홍명호(洪明浩) 등으로 차례로 문후하였다. - 중략 -

제공(濟恭)이 아뢰기를 흑산도의 거민 김이수(金理守)가 신문고를 울려서 진정한 사건으로 도감(都監)에 바치는 본도(本島)의 종이와 부역에 대한 폐단에 관한 것이운데 도신(道臣)에게 처결하게할 뜻으로 형조로부터 복계(覆啓)라 하는 분부에 따른 것이옵니다.

곧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의 장계(狀啓)를 본즉 나주목사 이우규(李禹圭)의 보고서를 하나 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본도(本島)는 토지가 척박하고 딱나무가 근절되었으므로 항상 지역(紙役)을 바칠 때가 되면 장정과 노약을 막론하고 그 남자에게는 모두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팔세에서 십세까지는 세전(歲錢)이 사전, 십일세에서 십사세까지는 세전 육전, 십오세에서 십구세까지는 세전 팔전, 이십세에서 사십세까지는 세전 일량육전으로 합하면 피저(皮楮=딱껌질) 일만 이천 구백오십오근의 값으로 오백십팔량 이전을 항시 징수토록 정하였는바 이것이 잘못된 예가 되어 도민들이 탕석(蕩析=유랑하여 떠돌아다님)하였으므로 도감에 납부하는 벽지(一

千五百속을 특별히 제감(除減)해 줄 것을 장문(狀聞=보고)하면서 변통(變通=조치)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섬이 한 번 정청(京廳)에 둔속(屯屬=예속)된 뒤에 지역이 창출(擲出=시작)된 것인데 그 이유로는 이 땅에 처음부터 딱나무가 생산되어 세금으로 대채납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근래에 딱나무가 절종이 되어 실물이 없는 것을 부락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되었으나 집마다 거두고 인구마다 수납하여 다른 지방에서 사다가 바치게 하니 이러한 일은 다른 섬에서는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둔세(屯稅)와 신역(身役=몸으로 떼우는 부역)밖에도 또 이러한 쓸 때 없는 부역이 있으니 그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려는 정책을 하려면 반드시 개혁할 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청의 수용 때문에 본도(本道)로부터 곧 바로 감면하거나 폐지하기는 어렵다고하여 해당관청에 그 뜻을 분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해고도의 거민들이 문득 호소할 곳이 없어 그 폐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록 이 보다 큰 일이라하더라도 성조께서 적자(赤子)를 보호하듯 하시는 선정에는 변통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이거늘 하물며 백지 천여속이 매우 요긴하거나 정치를 좌우하는 관건은 아니지 않습니다. 흑산도에서 양향청(糧餉廳)에 납부하는 지지(紙地=종이의 원료, 딱)를 영원히 폐지토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양향청(糧餉廳)에서도 쓰이는 경비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와서 없어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오니 종이 一千五百 속의 값 三百량을 탁지부(度支部)로 하여 해마다 지급하도록 정하여 영구히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상감께서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시었다. - 하략 -

* 미역바위 記錄(3)

: 住民贈與記錄 · 黑山面長保管

‘세금혁파’ 공로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水里 인근의 섬(간데대섬)을 증여하였다.

증여관련 문서가 있었다.

日帝때 黑山面長이 ‘간데대섬’ 관련기록을 빌려갔었다는 보관증이 있다. 현재에는 본기록은 소실되고 보관증만 김씨문중에 전해진다.

해방후 黑山(本)島 眞理 李氏들이 가지고 있던 증여기록을 마저 분실

하였다.

간데대섬(中竹島)은 長孫 김민안(김충일의 친형)氏가 관리하였다.

뒤에 김근택·정옥 형제가 미역을 채취하였다.

당초에는 섬 전체의 해산물 채취권을 부여받았다.

해방후 흑산초등학교를 세울 때 미역이외의 채취권을 육영회에 양여하였다.



사진 4-⑦ '간데대섬'(中竹島) : 섬 전체가 흑산도 유일의 사유 미역바위이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리 山1번지 소재)

(7) 多物島里 : 김완식

주 소 : 흑산면 다물도리 182번지
나 이 : 48세
면담일자 : 1997년 8월 17일·18일·19일
인적사항 : 里長

* 당 집

단군왕검을 모신다.

주변에는 동백숲과 후박나무가 울창하다.

당집의 구조

벽 = 흙 + 벽돌

지붕 = 기와집

방 = 3칸

담 = 이중 돌담

堂山에는 사람의 출입과 소매기를 금지한다.

현재 당집이 많이 퇴락하였다.

신안군 공보실에 문화시설(유적·유물) 보수를 건의하였지만 반응이 없다.



사진 4-⑧ 다물도 당집

(동백나무와 후박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3년마다 당제를 지냈다.)

* 宗教生活

: 解夢 · 惡夢回避 · 禁忌 · 運勢

제보자의 모친 사례 : 神氣가 있다.

중중 아픈데 그럴 때면 자식(제보자)에게 “너, 개고기를 먹었구나”라며 책망한다.

칠성님을 극진히 모신다.

황재 · 만선 꿈 : “집에 불이 났다.”

“배 안에 물이 찼다.”

“인분을 밟았다.”

“(낙엽 등을) 이고 그 집에 들어 갔다.”

損財 꿈 : “배가 물에 걸었다.”

“이를 드러낸다.”

악몽 회피방법 : 칼을 베개 밑에 넣어 둔다.

개고기 먹고 한 달 안에는 산소를 못 만진다. 집도 못 고친다.

‘왼쪽으로 자빠진 소’의 고기를 먹었으면 음력으로 그 달이 지나야 한다.

(소는 왼 쪽으로 자빠지면 스스로 못 일어난다.)

따라서 고기를 먹을 때에도 ‘이상이 있는 고기’인지 ‘죽은 소를 잡았는 지’를 확인한다.

집도 자기 運이 맞을 때에 지어야 한다.

* 공동우물

마을 전체에 3개의 공동우물이 있다.

큰 샘은 식수용이다.

약 60년전에 증축하였다.

물관리 : 물이 귀할 때는 30가구가 한 班이 되어 하루씩 교대로 물을 지켰다.

밤을 새워 하루를 지키면 오후에 양철동이로 약간의 물을 퍼서 분배하였다.

파수순번 : 동구 ‘뚝’ → 서구 뚝 → 남구 뚝 → 북구 뚝

빗물을 받아 쓰지 않았다.

산 너머에서 물을 길거나 전마선을 타고 남의 섬에 가서 물을 길기도 하였다.

제사 때 등에는 특별히 배려하였다.

地下水를 파서 1998년 개설 예정으로 上水道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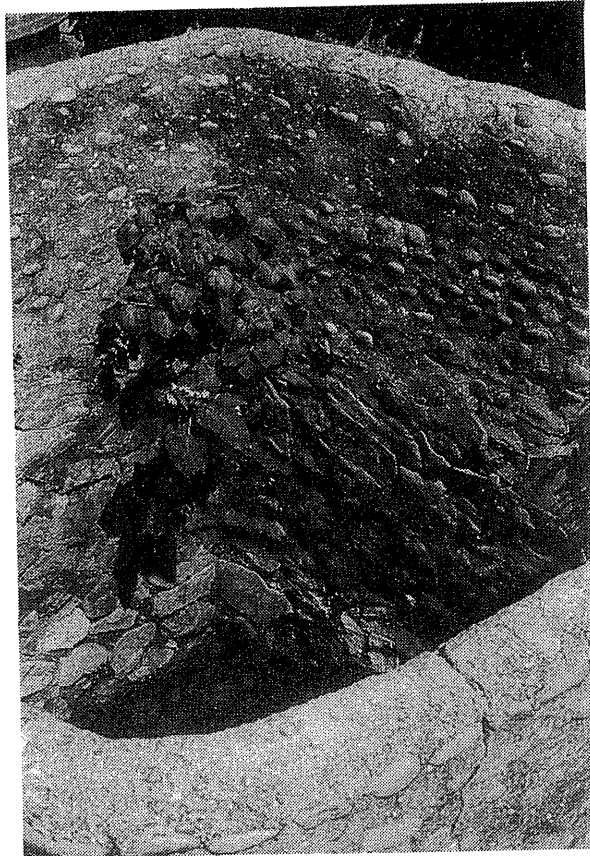


사진 4-⑨ 다물도 큰 샘
(공동우물)

* 땀감관리

: 先占·마을산

나무가 귀하여 고생을 많이 하였다.

부녀들은 절벽에서도 나무를 채취하곤 하였다.

나무를 사서 쓰기도 하였다.

黑山(本)島 인근의 '멍섬'에 가서 나무나 일년초를 채취하였다.

무인도에 가서 먼저 한 줌 베어서 先占하였다.
마을에 공동산이 있었다.
구역분할은 없었고 나무가 남아 있지 않아 분할의 실익도 없었다.
마을 공동산은 사유림에 비하여 1할도 안된다.
석유 곤로와 연탄의 등장으로 연료난이 해소되었다.

* ‘지’(契)

‘보리꽂이’라고 불리는 계가 있었다.
1960년대까지 계원 5~6명으로 행해졌다.
이른 봄에 쭉이 돌을 때 쌀로 쭉떡(25cm×25cm 내외의 크기)을 만든다.
일반인들에게 쭉떡을 외상으로 판다.
보리 수확 때 쭉떡 2개당 걸보리 1말을 받는다.
걸보리를 모아 1가마니가 되면 이자(利殖)놀이를 한다.

* 판심(판셈)

‘빛잔치’의 일종이다.
배 사업으로 파산한 당사자는 배·어구·어망 등 전재산을 내놓는다.
전체 채권자들이 모여 빛가림을 한다.

* 慣 習

: 불‘지’(불契)

‘불’은 벌(罰)에 해당하고 ‘지’는 계(契)에 해당한다.
일종의 금연契이다.
누가 “담배 하나 주소”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불지여”라고 답하고 담배를 준다.
담배를 얻는 사람은 담배를 준 상대방에게 ‘불 때마다’ 대가로 담배 한 대씩을 준다.

* 연안어업 概況

: 黑山群島·魚種變遷·해바리·地域感情·漁謠·漁法

黑山群島 : 황해도 구월산맥의 연장선에 있다. 바다 밑은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홍어가 많이 잡혔다. 바다 밑에서 닻에 빨간 진흙이 묻어 나온다('紅魚'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다).

活魚漁業의 등장 : 1980년대 초반(15~16年前)

魚種의 變遷 : 홍어→상어·조기·부서→가리비→홍어·부서(부새기)
→우럭→우럭 活魚

(黑山島 産 홍어는 7년전부터 잡히지 않는다.)

멸치잡이는 기선 건영망을 이용한다.

멸치잡이는 海岸線이 단조로우면 안된다.

멸치는 리아시스式 해안에 서식한다.

[操業方法] 선박 두 척이 潮流를 거슬러 가면서 投網하여 잡는다.

예전에는 햇불(봉수망)로 멸치잡이를 하였다.

전북채취 때에도 햇불을 이용한다. : 「해바리」

바다에도 지역감정이 있다.

慶南에 비하여 全南이 뒤져 있다.

慶南은 日本에서 漁法을 먼저 도입하여 법에 먼저 신고하고 앞서게 되었다.

조업할 때 漁謠를 부른다.

[漁法] (1) 안강망 : 양자강의 안강어에서 유래

갈치·조기류를 잡는다.

사리 때 조업한다.

6시간 마다 교대한다.

(2) 저인망 : '쌍끌이'와 '외끌이'가 있다.

가오리·홍오 등을 잡는다.

(3) 유자망 : 조류에 그물처럼 친다.

조기류를 잡는다.

(4) 기선건영망 : 두 척이 그물을 끈다.

그물이 물 위에 떠 있다.

멸치류를 잡는다.

(5) 선 망 : 그물을 빙 둘러친다.

'뜯 고기'(고등어·오징어·전갱어 등 회유류)를 잡는다.

(8) 多物島里 : 박빙옥

주 소 : 多物島里 161번지

나 이 : 40세

면담일자 : 1997년 8월 18일

* 漁村契

[加入] 외지인은 1,000만원을 내고 호를 들어야 미역, 김, 가시리를 분배받는다.

마을 漁村契는 빈약한 자금사정으로 어장관리능력이 없다.

흑산水協도 자금사정이 빈약하여 어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전복 商權(3천만원 내지 7천만원 상당)을 넘겨 마을에서 분배한다(호당 年30만원).

입찰 어장의 낙찰자는 작은 전복까지도 잡아 어자원이 고갈된다.

[提案] 대복(큰 전복)만 잡게 하여야 한다.

* 漁場管理

魚資源의 급속한 고갈로 고기잡이가 점점 힘들어진다.

6~7년 전부터 우럭 치어(자연산/방류어)를 포획하여 가두리에 양식한다.

10만수 내지 20만수를 뜬다.

이를 양식하면 半은 죽는다.

산란(산란기 6월~7월)후 1개월 간은 포획을 피하여야 한다.

集魚燈을 사용하여 포획하거나 海草에 붙은 것을 건진다.

전복도 잘 만나와 해녀들이 안온다.

오더라도 빨리 벌어 육지로 뜨려고 한다.

* 가두리 養殖場

: 바다오염 · 정책모순

5~6년 전부터 黑山(本)島 예리항의 가두리 양식장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 양식장은 黑山水協에서 허가하고 漁村契에서 관할한다.
 우럭을 3년 동안 양식하여 출하한다.
 예리港에서는 중선배등의 입항으로 과도한 人糞등이 유입되어 오염이
 가중된다.
 태풍 때 배들이 모여들면 예리항의 물건은 2~3일만에 바닥이 난다.
 바다오염을 둘러싸고 가두리 업주와 항구내 유흥업주 간에 갈등이 있다.
 양식장에는 糞養劑외에 마이신(항생제)까지 투여한다.
 예리港 약국에서 양식장 물고기에 투입할 약품을 사 간다.
 양식장의 물고기에서는 때로 기름 냄새가 나기도 한다.
 양식장 물고기를 어항에 넣으면 눈 색깔이 희미해지고 빨리 죽는다.
 물고기 몸통에 허영게 꽃이 피어 오르기도 한다.
 수질오염으로 인근 '꿀끼미' 해수욕장의 피서객들은 눈병에 자주 걸린다.
 抗生劑를 안 주면 물고기가 피부병에 걸린다.
 麗水 수산당국에서 조사를 나오면 가두리를 이동시켰다가 가고 나면
 원위치로 옮긴다.
 1996년 해저 오염물질을 준설하여 흑산수협 앞에 매립하여 예리항을
 확장하였다.
 양식장을 항만 외곽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적합한 위치가 없다.
 黑山水協은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 양식장의 문제점을 묵인한다.
 양식을 금지시키는 것이 옳다.
 관광지 개발과 가두리 양식 사업은 처음부터 서로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쉽다.
 多物島의 가두리 사업은 10년전부터 중매인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 宗教生活

: 天主教徒減少 · 靈性 · 改新教分裂

[現 況] 多物島에는 해방이후 교회가 들어왔다.
 약15년전부터 융성하기 시작하였고 10년전부터는 활성화되었다.
 현재 2개의 교회와 1개의 성당(공소)이 있고 절은 없다.
 현재 천주교인은 30여명 정도이다.
 성당(공소)에 다니고 싶은데 분위기가 거북하다.
 흑산 본당에서 신부가 잘 오지 않는다.
 구호물자가 감소하자 성당의 신자들이 줄어들었다.

토착 만신(보살)들의 텃세가 있다.

외부 무속인들은 토착 무속인들과 수입의 일부를 나누거나 함께 일을 한다.

[靈 性] “재앙이 있는 집에서는 피비린내를 느낄 수 있다.”

[教會分裂] 3년전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교회의 장로는 목사를 자주 바꾸었다.

결국 교회는 분열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도들도 상처를 입었다.

長老는 목사와 집사를 고발하였다.

고발사유는 (예배당) 무허가 건축과 문서위조이다.

목사 측은 장로가 인감을 떼 주고도 “안 떼줬다”고 우긴다며 誣告罪로 맞고소하였다.

송사비용으로 2,500만원이나 썼다.

최長老는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목포 장로회에서는 황牧師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황목사와 교인 50명은 합심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비교인들은 고향사람인 최장로 측을 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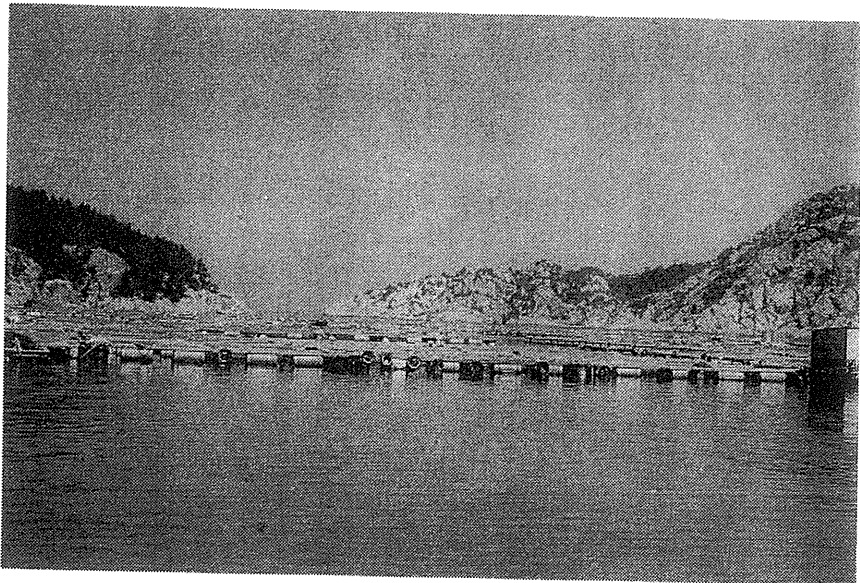


사진 4-⑩ 가두리양식장
(다물도포구)

(9) 多物島里 : 문상금

주 소 : 흑산면 다물도리 198번지

나 이 : 女98歲

면담일자 : 1997년 8월 19일

인적사항 : 남평 文氏 / 多物島 태생 / 동네결혼 / 마을 最高齡 / 姑婦 同居

* 뜰

: 漁村契 · 錢主 · 個別採取

다물도에는 뜰이 있었다.

뜰은 東西南北으로 나누고 4년마다 돌아가며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제보자는 '남구 뜰'에 속하였다.

'漁村契'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日帝 초기에는 각 뜰에 '錢主'가 있었다.

錢主 집에 미역을 캐서 날랐다.

[전복] 日本 잠수부들이 대마도에서 10톤 내외의 (돛대를 2개 단) 범선 「낙판」을 타고 왔다.

뒷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못오게 하자 "面에서 되돌려 보냈다."

해산물량이 풍부하였다.

개별적으로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전복은 꽃대에 끼워서 팔았다.

김은 개별적으로 채취하였다.

성게[구살]는 잡지 않았다.

툰은 뜯지 않았다.

가사리[진포 : 진갈색이다]는 자기 구역에서 뜯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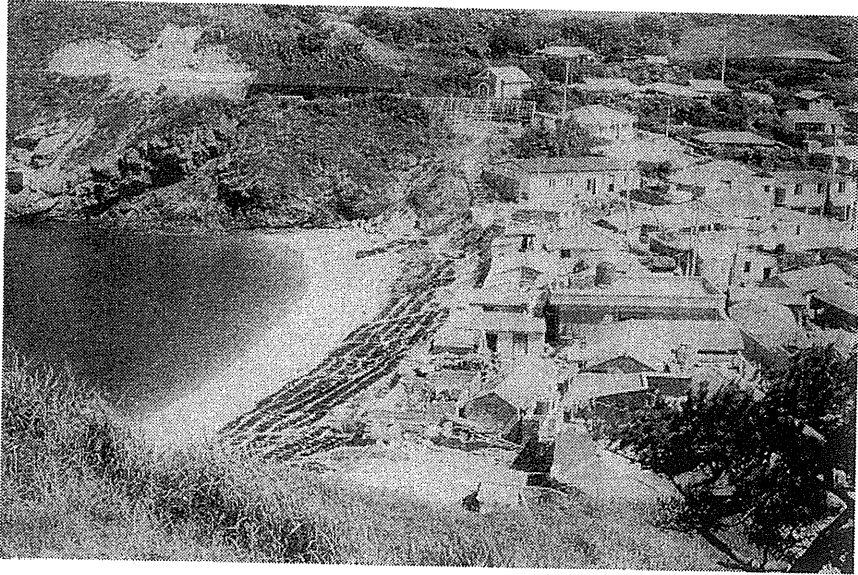


사진 4-① 해초건조
(자갈 해변에 다시마·미역 등의 해초를 널어 말린다.)

* 미역바위

: 간데대섬 [中竹島]

多物島 山 2번지이다.

(水里의) “郎廳 할아버지”를 안다.

道에서 山 하나 떼어 췌다.

뒤에 ‘재판’ 있었다.

두 쪽으로 나누었다.

山을 뺏기면 이웃의 「슬픈여」(옛이름 : 설픈여)도 넘어간다.

(‘여’는 물 밑에 있는 커다란 (너럭) 바위를 말한다.)

* 堂 祭

: 검줄·굿·허채비

‘당지’(堂祭)는 3년마다 음력 5~6월에 지냈다.

당집은 처음에는 초집(초막)이었다.

90년전에 기와로 고쳤다.

'생기' 맞는 남자 3명을 골라 1명은 제주로 2명은 들러리로 세웠다.
 당에 빌면 영험을 보았다.
 당영감은 '상당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상당할머니와 별방도련님 그리고 며느리를 모셨다.
 ('단군'을 모시지는 않았다.)
 당제를 지내는 사흘 동안은 아무 것도 잡지 않았다.
 祭需 자금은 동네 돈으로 썼다.
 집집마다 막거리 1동이 씩 냈다.
 (못사는 집은 2~3집이 한동이를 냈다.)
 동네사람들이 모여 제삿날[생기]를 받았다.
 '생기' 맞는 남자 3명을 골랐다.
 1명은 祭主이고 2명은 들러리이다.
 검줄(금줄)을 쳤다.
 당골네를 불렀다.
 (당골네에게는 그 나이가 많아도 '하계' 하였다.)
 뒷짜기에 하당 막을 쳐서 굿을 하기도 하였다.
 당제후 허재비(허수아비)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기도 하였다.
 허재비는 "멀리 떠나가야 좋다"고 믿었다.

* 기맞이

: 기내림 · 막음 · 굿 · 禁忌

일종의 告祀이다.
 어떤 중선은 기맞이를 앓았다가 침몰하였다.
 없는 사람에게도 추렴하였다.
 지방배나 유력자들은 기맞이를 서로 하려고 다투기도 하였다.
 [樣式] 제사 후 배에 꽂았던 旗를 하당 부근에서 내린다.
 '기내림'은 당골이 주관하였다.
 광목을 펴 놓고 길을 닦았다.
 船主들은 돈을 바쳤다.
 개인을 위한 發福이나 祈願은 없었다.
 日本人 선주들도 참여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름을 적은 '燒紙'를 올렸다.

소지가 올라가다 주저앉는 사람은 그 집에 흉있다고 믿었다.

(못살고 죽기도 한다고 믿었다.)

(‘막음’(액땀)은 못한다.)

굿할 때에는 아이들도 옷차림을 단정히 하였다.

주변나무에 검줄을 달았다.

당꿀네와 제주에게는 동네에서 따로 ‘시공’(畝)을 주었다.

굿은 사흘간 정성들여 하였다.

첫날 : 청소한다.

이튿날 : 음식을 준비한다. 저녁에 제사를 지낸다.

사흘날 : 굿과 기맛이를 한다.

굿을 할 동안 제주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3일 동안은 우물에서 빨래도 할 수 없었다.

‘소매’(밭에 인분 뿌리기)도 못 뿌렸다.

* 동네조리

: 상투치기

‘동네조리’를 들었다.

‘덕석몰이’는 못 봤다.

제보자가 어렸을 때(6~7세 무렵)의 일이다.

부자지간에 싸워서 아들을 ‘상투쳤다’.

상투에는 붉은 천을 묶어 죄인임을 표시하였다.

복을 등에 매게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게 하였다.

동네조리를 겪은 아들은 배에 가서 죽어버렸다.

* 풍속일반

잠질(물질)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제보자는 잠질을 못했다.

고기는 ‘물 죽었을 때’(조금)에 잡았다.

[契] ‘지’(契)가 있었다.

10명 내지 13명으로 구성된 상두계가 있었다.

(제보자) 중년 이전에는 쌀기(契)가 없었다.

[망재]('망재'라고 발음한다) 마을 뒷산 언덕이다.

6·25사변 때('人共' 때라고 부른다) 병역을 피하던 사람들이 망을 봤던 곳이다.

黑山(本)島 진마을(眞理)에서 단속 배가 올라오는가 보다가 도망쳤다. 처음에는 재만 있었다.

(10) 多物島里 : 金明仁

주 소 : 黑山面 多物島里 161番地

나 이 : 女70歲

면담일자 : 1997년 8월 20일

* 안심주기

: 어장배 거래 관습

어장 배를 거래하는 경우에 안심준다.

매수인이 매도인(船主)의 부인에게 성의 표시로 돈을 준다.

서운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에서 돈을 준다.

보통 배 가격의 5%를 준다.

요즘에도 준다.

* 덕석몰이

일제 때까지 멍석말이(덕석'몰이'라고 한다)가 있었다.

객지인과 지방인을 불문하고 적용하였다.

나쁜 짓하는 사람들을 덕석에 말아 동네 한 가운데에서 몽둥이로 쳤다.

중선배 선원이 마을 여성을 간음하여 몰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효로 덕석몰이한 사례는 못봤다.

주로 성범죄자들을 징치하는 데 이용되었다.

* 禁 忌

: 不淨·불씨·損가는 날·액맥이

부정한 사람을 '개린다'(가린다 : 구별한다).

임신녀

3년상 이전의 상주("천상입었다"·"복입었다"고 한다) - 당제를 못 지낸다.

출산후 3·7일(세이레) 이전의 여성과 남편 - 배에 못 오른다

"재수가 없다"고 하여 부인들은 일반적으로 배에 신지 않았다.

특히 출항 때나 고사 때에 그러하였다. (옛날에는 더욱 엄격하였다.)

짐승 잡을 때 “임신녀가 오면 짐승이 얼른 안 죽는다”고 하여 임신녀 참여를 금지시켰다.

개고기(추육)먹은 사람은 배에 못 오른다. 제사 참석도 불가하다.

반면에 상여를 댔던 사람이 배에 오르면 선주가 재수를 본다

금 줄 - 産苦가 들면 이레까지 친다.

告祀날 받았을 때에도 친다.

(부정한 사람 못 들어오게 막는다.)

損가는 날

1일·2일 - 東으로 손이 간다

3일·4일 - 南으로 손이 간다

5일·6일 - 西로 손이 간다

7일·8일 - 北으로 손이 간다

9일·10일 - 손 없다

11일·12일 / 21일·22일 이후 - 되풀이된다.

초대새 - 패일이다 - 나쁘다 - 출항·고사 안 한다.

함평의 習俗 : 提報者의 故鄉

娠娠女 - 말고삐를 안 넘는다 / 밟고 넘어라.

안 그러면 12달(말의 임신일수)만에 애기를 낳는다.

장날 오전에는 여자가 장사 집(가게)에 안 들어간다.

성냥 귀한 시절에는 아침·저녁에 불씨를 얻으러 가면 “재수가 나간다”고 말하였다.

불씨를 얻는 것은 실례가 되기 때문에 성냥으로 준다.

* 액막이

: 사자밥

밥 3 그릇·돈 3 군데·노물(나물) 3 군데·술 3 군데 놓는다.

글귀(生·死 등)를 적은 종지와 땀 냄새나는 당사자의 옷을 태운다.

(몸 때가 묻은 옷이라도 된다.)

산 닭을 같이 묻는다(“대신 죽었다”는 뜻이다).

제물에 고기는 안 쓴다

運 나쁜 사람의 이름을 써서 損 없는 곳으로 가서 3 거리 길(가운데)에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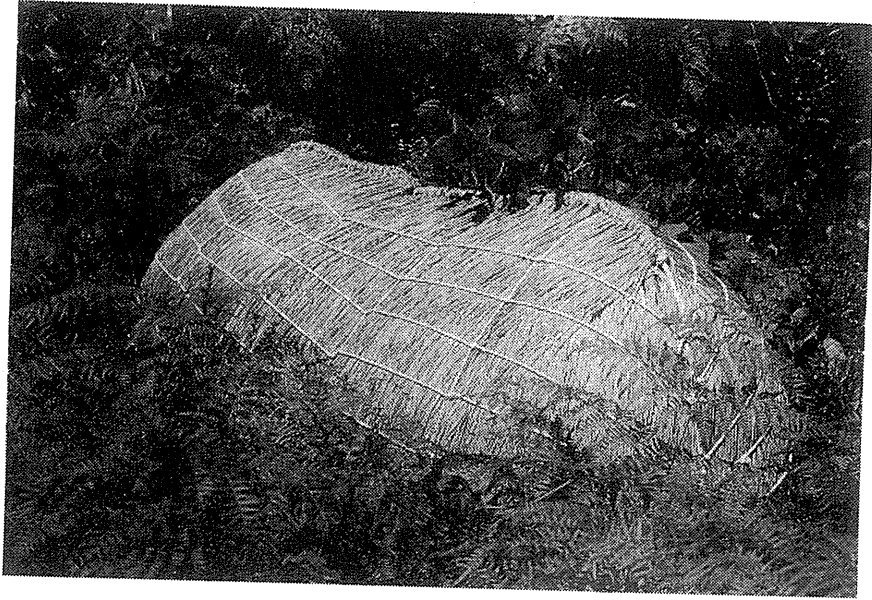


사진 4-⑫ 초 분

(도초도등 신안섬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초분은 다물도에 아직 3~4基가 있다.)

(11) 多物島里 : 박남순

주 소 : 黑山面 多物島里
나 이 : 女71歲
전 화 : 0631 246 3864
인적사항 : 보살(占아줌마)

* 報告祀

: 不淨가시기

黑山에는 報告祀가 많았다.

약 3시간 정도 걸린다.

낮에 '들 물'에 지낸다.

(1) 소금물 · 황토 · 고춧가루 · 된장 · 썩으로 부정을 가신다.

(2) 다시 소금 · 향 · 물로 부정을 가신다

(3) 고치대에 불을 붙여 부정을 가신다.(징을 두드린다.)

船王外에는 다 물러가라.(객귀 · 잡신을 배척한다.)

초혼들인다.

진언 : 「어장이 잘 되라」 + 「대주의 가문이 잘 되라」

마친 후에 내려가서 '갓告祀'를 지낸다.

(배에서 쫓아낸 잡귀들을 달랜다는 뜻이다).

逐鬼經

天生万民外必守之職外亦正天為是我父地為是我母日月是為我兄弟星辰是為我朋友動者我喜視之李朱雀避口舌西白帝避虎狼北玄武除疾病三台六庚九位諸星四維五撥二十八宿天丑將軍地丑將軍人丑將軍吾道殊非常之道吾劍殊常之劍九年成賦十年成綱日後自即三同二後多江自退三後思鬼鬼神自去除木无偽千速千里四方血榮一節千里永不回顧啞吸自如律令安澄例

无符引言本外引心中中斷至何不厭言引息一日天生二日
文灵三曰永弄引引助念則言言外引

* 占

: 도독占 · 신수占

四海龍王 할아버지를 부른 후 雜鬼들을 불러들인다.

엽전('算돈')을 상에다 풀고 그 돈의 모양에 따라 읽는다.

다른 신들의 방해는 없다.

占은 글 귀로 풀어 먹는 것이 아니다.

鬼神('구신'이라고 한다)이 시킨대로 한다.

사람이나 귀신이 알아 먹을 말만 한다.

'도독점'을 잘 보아 도독 맞은 것을 잘 잡아냈다.

45세 때 黑山(本)島 예리에서 나무 숲에서 장물을 찾아 소문이 났다.

도독점은 그러나 보기가 두렵다.

도독占은 되도록 피한다.

마음이 무겁고 몸이 피로우면 결과가 안 좋아 '방침'을 해 준다.

신수점(병낫기점)도 본다.

내 점(自己占)은 내가 못본다.

* 굿

: 外地巫堂

하루 저녁 내내 굿을 한다.

저녁 6시에 시작하여 아침 6시에 마친다.

'12석'을 한다.

'비손'한다.

굿놀음(춤)한다.(3명이 1조를 이룬다.)

사설은 글 읽듯이 한다. 저절로 - 신이 시키는대로 - 한다.

다른 무당들이 이곳에 오면 제보자에게 신고한다.

* 堂

: 豐漁

堂일하면 漁場이 잘 났다.

밥을 해 놓고 燒紙만 해도 된다. (굿 안 해도 된다.)

당일은 '출출한' 사람들이 말아야 한다.

어느 동네든 들어가면 堂을 보고 동네 형세를 살펴야 한다.
多物島에서는 堂에도 빈다.
이 마을의 堂은 현재 靈驗이 떨어졌다.
생기를 받고 당제를 올려 새로 신을 모셔야 마을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다.

* 宗教摩擦

가톨릭 聖堂(신부)은 숨이 된다.
천주교와는 친근하다. 은퇴 후에는 천주교로 갈 예정이다.
교회와는 숨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어머니·아버지도 잡귀로 취급한다.
기독교인들은 점일을 많이 방해하였다.
점일을 바꾸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믿는 이들 중에 도둑도 많고 말도 많다”고 대꾸하였다.
교인들이 堂의 물건들을 설거지하여 팔아 먹었다.
교인들은 점풀이가 막힌다.
佛敎徒도 점을 본다.

* 參考事項：提報者 來歷

친정은 목포이다. 38세에 入島하였다.
木浦 유달산 절에서 山神을 받았다. 모신 神은 七星堂(七星神)이다.
부처님을 모신다. 안 모시면 절로 다시 보낸다.
'맹두'[仙女] :
이미 죽은 큰 딸(순임 : 7살)과 아들(광남 : 5살)의 魂이 실린다.
1년간 신병으로 아파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 신을 모셨다.
남편의 고향인 목포에서 32세에 보살 일을 시작하였다.
여기에 와서는 그만 두었다.
집을 작게 지었더니 神의 노여움을 샀다.
42세 때에 다시 신병을 얻어서 神굿을 하였다.
가족들의 운세가 기구하였다.
시어머니는 아들 형제를 낳고 24세에 요절하였다.
시아버지는 60세에 죽을 때까지 再娶를 못 했다.

“다른 여자와 합방하면 부자지(壘丸)가 크게 부었다.”

친정 동생은 軍 입대후 사고로 죽었다.

집 안에 다른 神歷은 없었다.

친정어머니도 ‘기척’이 있어서 성당에 나갔다.

이 일을 말아 버리면 새끼들이 다칠까 봐 계속하였다.

3년전부터 神들이 많이 떠났다.

여태 飮을 안 해봤다.

(12) 多物島里 : 안육림

주소 : 흑산면 다물도리 180번지

나이 : 女70歲

면담일자 : 1997년 8월 19일

인적사항 : 다물도 태생 / 동네결혼

* 共同採取

: 터버리기 · 해녀몹

미역은 '뜸' 별로 공동채취후에 분배한다.

공동으로 따고 난 나머지는 '터버린다'(구역의 구분 없이 자유로이 채취한다.)

깊은 곳에 것은 해녀가 채취한다.

깊은 곳의 마지막 미역(1할안팎)은 '해녀몹'으로 남겨 놓는다.

[해산물채취]

전복 : 개인별 · 능력별로 채취하였다. 열은 곳에서 땀다.

공동채취는 훗날의 일이었다.

김 : 자기구역(뜸) 안에서 개인들이 능력대로 땀다.

(요즘은 잘 채취하지 않는다.)

톳 : 옛날에는 내버려두었다.

가사리 : 처음에는 매지 않았다.

성게 : 잡질해서 잡지 않았다.

사리 때면 철사 쪽받이로 각자가 채취하였다.

현재는 '전복' 관리자가 알아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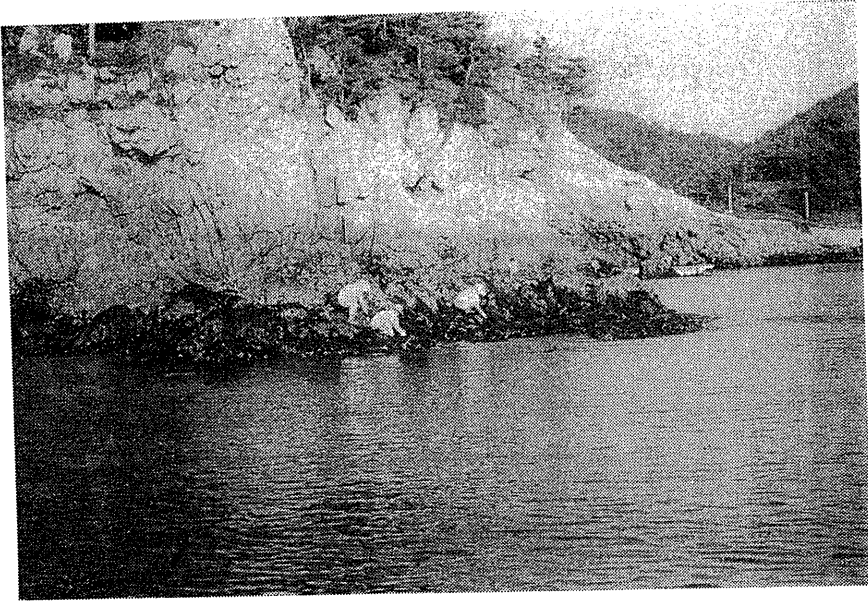


사진 4-⑬ 툃채취(다물도 포구 입구)

* 海 女

1960년대에 제주해녀들이 유입되었다.

흑산도내 다른 섬에서 시집은 처녀들은 이 마을에 와서 잠질을 하지 않았다.

해녀들은 잠수병을 앓는다.

제주해녀들보다 이 곳 해녀들의 식생활 수준이 높았다.

다물도 해녀들은 외지로 원정가지 않았다.

딸은 재산분배時에 홀대받았다.

4. 참조판례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인락조서

사 건 : 72추합227
판행에 의한 어업권 확인 및 입어관행 보존등록절차이행

원 고 : (별지기재와 같음)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수 호

피 고 : 영일 어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최 정 화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

1974. 1. 10. 14 : 0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공개한 법정에서

재판장	판사	김완석
	판사	강봉수
	판사	정성욱
	법원주사보	허동준 열석

원 고 대리인 변호사 유 수 호
피 고 대표자 조합장 최 정 화 각출석

원고 등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인락하였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등에게 별지와 같이 제1종 공동어업에 관하여 관행에 의한 입어권이 있음을 각 확인하고 그 입어관행 보존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1. 청구원인

원고등은 1965.4.26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청구취지와 같이 각 주거지에 동리 지선해면에서 그 수면을 이용하여 해조류등을 채취하여 각 가구의 생계를 유지해 오므로써 수산업법 제40조의 관행에 의한 입어권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위 원고등의 입어구역은 위와 같이 모두 피고 조합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1종 공동어업의 면허를 받아 그 어업권을 취득한 어장에서 속하는 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원고등의 입어 및 그 보존등록절차를 거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등은 위 관행에 의한 입어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함과 동시 어업등록령 제60조의 등록의무자인 피고에게 그 보존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는 바입니다.

1974. 1. 10

법원주사보 허 동 준
재판장 판사 김 완 석

당사자(원고) 표시

1. 서 춘 ○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구만리	59번지
2. 김 만 ○ 위 같은 곳	118번지
3. 서 정 택 위 같은 곳	80번지
4. 서 봉 덕 위 같은 곳	70번지
5. 홍 만 덕 위 같은 곳	91번지
6. 김 용 석 위 같은 곳	115번지
7. 서 성 보 위 같은 곳	16번지
8. ○ ○ 기 위 같은 곳	202번지
9. 서 두 만 위 같은 곳	21번지
10. 고 창 선 위 같은 곳	80번지
11. 고 창 행 위 같은 곳	80번지
12. ○ 유 봉 위 같은 곳	65번지
13. 정 형 택 위 같은 곳	21번지
14. 김 복 순 위 같은 곳	42번지

- | | |
|---------------------------------|-------|
| 15. 김 만 석
위 같은 곳 | 132번지 |
| 16. 정 인 하
위 같은 곳 | 27번지 |
| 17. 김 ○ 광
위 같은 곳 | 62번지 |
| 18. 서 ○ 이
위 같은 곳 | 317번지 |
| 19. 서 도 군
위 같은 곳 | 374번지 |
| 20. 이 상 응
위 같은 곳 | 219번지 |
| 21. 서 천 석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대보리 | 893번지 |
| 22. 권 동 조
위 같은 곳 | 882번지 |
| 23. 서 복 인
위 같은 곳 | 895번지 |
| 24. 서 원 수
위 같은 곳 | 885번지 |
| 25. 서 상 윤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구만리동 | 65번지 |

별 지

- (1) 입어하려는 어업권의 면허번호 : 841호
- (2) 입어하려는 수면의 구역 : 각 원고 주거지 동리지선
(구만1리 어촌계 구역)
- (3) 입어하려는 어업의 방법 기타 어선 어구 : 도수 ○ ○ ○
나 잠
종업자의 수 : 27명
- (4) 입어하려는 해조물의 종류 : 미역
- (5) 입어하려는 시기 :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약 식 명 령	
사 건 번 호	71 고 (약) 1669
피 고 사 건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의 성명 생 년 월 일 직 업 주 거 본 적	○ ○ ○ 1935. 9. 25. 생. 어 업 영일군 동해면 대동배리 54
주 형 과 부 수 처 분	피고인을 벌금 2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유치할 것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음
적 용 법 령	형법 제366조 동제257조 1항 (벌금형선택)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형법 제69조 동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p>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의 송달받은 날로부터 7 일안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1971년 10월 28일</p> <p>대 구 지 방 법 원 경 주 지 원</p> <p>판 사 권 연 상</p>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71. 5. 9. 16:00경 영일군 구룡포읍 구만동앞 속칭 큰바위 해변 모래사장에서 구만동41번지 김영난(21세) 및 구만동 317번지 김정열(20세)등 구만동 어민 200여명이 대동배동 어촌계 공동소유에 속하는 제1종 공동어장내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하여 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지개작대기로 위 김영난 소유의 미역 따 담아놓은 비니루다라이 1개 (씻가미상)을 후려쳐 이를 손괴한 다음 동녀의 오른쪽 발목과 등을 1회씩 구타하고 발로 동녀의 가슴을 1번 밟은 다음 넘어져 있는 동녀의 멍살을 잡고 자갈밭에서 끌다가 그경 동소에서 김정열이가 피고인의 행패를 보고 만류하자 주먹으로 김정열의 얼굴을 1회 강타하면서 그곳 지면에 넘어뜨려놓고 구둑발로 가슴을 1회 강축하여 김영난에게 요치 약 10일간의 전흉부타박상등의 김정열에게 요치 약 10일간의 전흉부타박상등의, 각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1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 결

1970. 8. 18. 판결선고
1970. 8. 18. 원본영수
1970. 8. 26. 상소기간경과확정

사 건 70 고 620,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 고 인 ○○○ (어업)
 1934. 10. 6. 생
 주거 및 본적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동 400

검 사 안 상 조

주 문 피고인을 징역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위 본형에 산
 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의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울릉군 어업협동조합 총대인바, 태
 하동어촌계원의 공동 화포채취장인 같은 동 북면
 해변 화포암(미역바위) 일부에 대한 화포채취권을 매도하라는 어촌계장
 안은호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9. 12. 14. 오전
 10시경 같은 군 남면 도동 43번지 최종덕의 집에서 양면패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란에 “화포행사권 매도계약증서”, 금액란에 “일금 125,000
 원정”, 화포구역란에 “별첨 도면과 같음”, 행사기간란에 “1970년 1월부
 터 동년 6월까지”, 작성일자란에 “1969. 12. 14.”, 매도란에 “울릉군 서
 면 태하1동 어촌계장 안은호”, 매수란에 “울릉군 남면 도동1동 최종덕”,
 입회인란에 “울릉군 서면 태하1동 박성호(改名)” 이라 각 기재하고 동월
 15일 오후 4시경 같은 군 남면 도동에 있는 동광여관 15호실에서 안은

호의 성명후단에 울릉어업협동조합 태하어촌계장 직인을 압날하여 사문서인 화포행사권 매도계약증서 2통을 위조하고,

2. 동월 15일 오후 4시경 위 동광여관 15호실에서 위 화포행사권 매도계약증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최종덕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동월 14일 오전 10시경 위 최종덕의 집에서 울릉군 어업협동조합 태하동어촌계원의 공동소유인 같은 동 북면 화포암에 대한 화포채취권을 매도하라고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임받은 것처럼 최종덕에게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속이고 동인으로부터 동 채취권의 매수대금의 일부조로 금 55,000원을 교부받고 1970. 1. 20.경 포항시 학산동 옥호불상 주점에서 그 잔금조로 금 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 거 1. 피고인이 당 공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최종덕 당 공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안은호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최종덕, 안은호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적 용 법 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7조, 제62조

1970. 8. 18.

판 사 권 연 상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 결

1971. 7. 9. 판결선고
1971. 7. 9. 원본영수
1971. 7. 17. 상소기간경과확정

사 건 71 고단 430,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 고 인 ○ ○ ○ (어업)
1927. 9. 13. 생
주 소 영일군 동해면 흥환동 286
본 적 영일군 동해면 발산동 342

검 사 김 인 환

주 문 피고인을 징역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4일을 위 본형에 산
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67. 7. 25.경부터 포항어업협동조합
영일군 동해면 흥환동 총대로 종사하는 자인바,
1969. 7. 14.자로 동 총대임기가 만료되고 동년 7. 15.경 그 후임 총
대선거가 실시되게 되자, 자기의 지지자수를 증가시켜 재선임될 방도를
궁리중 행사의 목적으로

1. 1969. 5. 20.경 자기집 마루에서 기히 입수해둔 포항어업협동조합
가입신청서 용지 2매 및 기히 위조입수해둔 김치국 및 김순곤의 목인장
2개를 사용하여 흑색볼펜으로, 동용지 1매의 본적란에 "영일군 동해면
발산동 342", 주소란에 "영일군 동해면 흥환동 286", 성명란에 "김순곤",

생년월일란에 “1935. 3.24.”, 어업의 종류란에 “기선 저인망 신흥보”, 어업의 시기란에 “자 1월 지 12월”, 면허어업명란에 “동0-08”, 신고어업란에 “임봉출”, 제출년월일란에 “1969. 5. 1.”, 제출인란에 “김순곤”으로 각 기입하고 그 명하에 전시 위조한 김순곤의 타원형 목인장을 압날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동인명의의 동년월자 사문서인 포항어업협동조합 가입신청서 6통을, 그경 동소에서 동용지 1매의 본적란에 “경북 영일군 동해면 중흥리 184”, 주소란에 “영일군 동해면 흥환동 180”, 성명란에 “김치국”, 생년월일란에 “1952. 6. 5.”, 어업의 종류란에 “조어업”, 어업의 시기란에 “자 1월 지 12월”, 면허어업명란에 “일본조”, 고용수란에 “4명”, 고용주성명란에 “정방구”, 제출연월일란에 “1969. 5.”, 제출인란에 “김치국”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명하에 전시 위조한 동인명의의 원형 목인을 압날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동인명의의 동년월자 사문서인 동조합 가입신청서 1통을 각 위조하고,

2. 그 익일인 동월 21. 12:00경 동시 동빈로 2가 소재 포항어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동위조 사문서 2통을 진정히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관계 부속 서류와 일괄하여 동조합 서무계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각 제출행사한 것이다.

증 거 1. 피고인이 당 공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의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김성득, 이 문이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하재선, 임봉출, 유성준, 권병찬 등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적 용 법 조 형법 제231조, 동제234조, 동제37조, 동제38조제1항, 동제50조, 동제57조제1항, 동제62조제1항

1971. 7. 9.

판 사 이 현 우

5. 어장관리규약

영일 수산협동조합 강사2리50) 어촌계
1997년 7월 1일 시행5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어촌계에서 면허받은 총유어업권의 합리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약에서 총유어업권이라 함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어촌계에서 면허받은 어업권을 말한다.

②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총유어장이라 함은 총유어업권으로 면허받은 수면을 말하며 어업별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어업'이라 함은 마을어업 면허수면을 말한다.
2. '협동양식어업'이라 함은 협동양식어업 면허수면을 말한다.
3. '양식어업'이라 함은 양식어업 면허수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총유어업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약은 본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에서 면허를 득한 총유어업권에 적용한다.

제4조 (어장관리자) ①총유어장은 어촌계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다만, 리단위로 구획하여 어장을 행사할 경우에는 리단위별로 어장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구획된 어장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어장관리 책임자는 어촌계 지역내 거주하는 어촌계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중에서 선임한다.

제5조 (입어의 관행)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50) 영일 수산업협동조합 관할내 다른 마을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들과 동일하다.

51) 1997년 6월 27일 (영일 수산업협동조합 관할내) 漁村契總會議 의결
1997년 7월 1일 浦項市長 승인

어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활동은 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입어자의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제6조 (표지의 설치) 어장관리는 어장의 기점표시 시설과 어장구역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행사

제7조 (행사의 정의) 이 규약에서 행사라 함은 계가 총유어장에 대한 어업권자로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원으로 하여금 또는 계 스스로 총유어장에서 어업활동을 전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8조 (행사의 자격) 본계 총유어장의 행사는 본계원 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제9조 (행사방법 및 행사구역) ①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이 행사구역은 면허구역으로 하며 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특정계원과 행사계약을 금한다. 다만, 어촌계가 공동행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계가 어장을 직영할 수 있다.

1. 자원관리선
2. 해녀고용

②계가 직영할시에는 생산장비를 계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행사)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전체계원에게 균등한 기획을 부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계원에 대하여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할 수 없다.

제11조 (자원관리선의 사용 및 관리) ①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에 자원관리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본계가 사용승인 받은 자원관리선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이외 구역에서 사용을 금한다. 다만, 사용승인된 관리선이 다른 어업허가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원관리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잠수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잠수기 허가어선의 사용)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에 잠수기 어선을 사용하고자 할 시는 미리 시장에게 어선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포괄위임 금지등)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을 계가 직영할 경우에는 계가 생산활동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하여야 하며 승선원이나 해녀에게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제14조 (행사계약) ①양식어장의 행사계약은 다수계원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행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계원이 다수인일 때에는 계원중 3인 이상 협동 행사를 희망하는 자들로서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며 우선순위는 종래에 행사실적이 있는 계원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노동조건의 부합여부
2. 당해어업의 경험정도, 자본, 행사능력
3. 당해어업에 대한 계원의 생계의존도
4. 기타 계의 이익정도

③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한 계원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외의 자로 하여금 당해어장의 행사를 대행할 수 없다.

④행사계약기간은 2년이상 3년이내로 한다.

⑤행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하며 계약을 결정하였을 때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행사증표를 교부한다.

제15조 (행사료 및 입어료 징수방법) ①총유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에 대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와 그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하며 그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어업권별 품종, 어종 및 예상되는 수획량
2. 어장의 위치와 생산시기

제16조 (행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총유어업권은 행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본계 계원으로서 당해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본계 계원으로서는 행사를 희망하는 자

3. 본계 공익성과 수산자원 조성에 일익을 더할 수 있는 자

제17조 (입어에 관한 사항)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에 입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어장관리자에게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제18조 (입어, 시기방법등) ①총유어장의 입어기간은 어업 면허된 어업 시기와 같다 단 행사자의 입어기간은 행사계약기간으로 한다.

②총유어장의 입어방법은 어업면허된 어업의 방법, 양식품종은 멸된 양식품종과 같다.

제19조 (어업별 어선수 및 행사자수등) 총유어업권의 행사자수 및 사용 어선수 등은 다음과 같다.

어업별	행사자의 수	사용어선의 수	입어자의 수	비고
마을어업	본계의 계원수	1척 이내	본계의 계원수	사용어선의 수는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통합척수임
협동양식어업	본계의 계원수	1척 이내	본계의 계원수	
양식어업	3인이상	ha당 2척 이내	행사자수와 같음	어촌계 직영시는 1ha당 2척 이내

제3장 자원관리

제20조 (종묘살포)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의 자원 증식을 위하여 어장여건에 맞는 수산종묘를 살포하여야 한다.

제21조 (어장의 보호와 관리) ①마을어업 어장과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서식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바위닦기등 어장 환경조성을 하여야 한다.

②마을어업 어장과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각종 산업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전체계원이 참석하여 어장오염제거 및 해안청소를 실시하며 양식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청소를 실시한다.

③유용 수산동식물의 번식을 해치는 유해 생물없애기를 매년 2회이상 실시한다.

제22조 (채포 금지기간, 채포금지채장)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채포금지기간이 정하여진 수산동식물은 그 기간중에 채포할 수 없으며 채포금지기간이 정하여진 수산동식물은 그 체장이하의 것을 채포하지 못한다.

제23조 (불법어업의 금지) ①마을어업 어장내에서는 다음 각호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낚, 호미, 칼, 팽이 또는 삽
2. 해조틀이 또는 칼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경우에는 어선을 사용할 수 있으나 5톤이상 동력어선의 사용을 금한다.

③마을어장에서는 스쿠버 다이버의 수산동식물 채포활동을 금한다.

제24조 (불법어업의 감시고발) ①제22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전체 계원이 공동으로 감시한다.

②불법어업 행위를 발견한 계원은 그 사실을 즉시 어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어장관리자는 불법어획된 어획물을 회수하여 방류하므로 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어획물을 방류하고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계원이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유어장 입어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행위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명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계획생산) 총유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사항을 고려한 생산체계를 유지한다.

1. 생산량의 적정화 유지 및 일시다획 행위 지양
2. 윤채생산(돌려잡기)체계 확립

제4장 회 계

제26조 (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정하는 회계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료 : 공동행사시 또는 행사계약 관리시 행사계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어장수입금
2. 입어료 : 입어관행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3. 생산물 판매대금 : 어장직영시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대금
4. 직영비용 : 어장 직영시 생산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어선입찰료, 노임, 기타비용일체
5. 생산물 판매비용 : 어장직영시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6. 직영수입금 : 생산 판매대금에서 직영비용과 생산물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7. 어장수입금 : 행사료, 입어료 및 직영
8. 자원조성비 : 어장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어장측량비, 표지설치비등 어장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자원조성비를 제외한 비용

제27조 (회계의 기록유지) ①총유어장의 행사중 발생하는 수입, 지출내용은 별지 3호의 어장관리 회계장부 서식에 따라 정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조장부(별지 4호 내지 6호참조)를 사용할 수 있다.

②리(자연부락)단위로 구획하여 어장을 구획할 경우에는 리(자연부락)단위로 수입금을 분배한다.

제28조 (행사료의 징수기준) ①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경우에는 자원조성 및 어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사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행사계약 된 총유어장의 경우에는 생산성과 비교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행사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어장수입금의 처리) 총유어장에서 징수한 행사료와 입어료 또는 직영수입금은 자원조성비 및 어장관리비에 최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액은 계원에게 분배한다.

제30조 (자원조성기금적립) 본계는 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어장수입금의 일정비율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원조성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1조 (어장수입금의 분배원칙) ①어장수입금을 분배할시는 모든 계원

에게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입금의 유용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2조 (수입금의 관리) ①행사료 입어로 및 수산물 판매대금등 총유어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수입당일 여수신을 관장하는 금융기관등에 예치한 후 지출 사유가 발생할시 인출하여 지출한다.

②수입금의 유용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3조 (회계의 공개) 총유어장 행사관리중 발생한 모든 수입, 지출내용은 전체 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 (결산) ①계장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총유어장 관리에 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 및 소속수협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리(자연부락) 단위로 구획하여 어장을 행사할 경우 어장관리 책임자 제1항에 준비하여 리(자연부락)단위 결산절차를 행하고 그 결과를 계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결산 절차는 계의 총회 개최이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35조 (수익금이 분배시기) 어장 수익금의 계원에 대한 분배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결산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36조 (장부의 비치) ①계는 총유어장 관리 및 행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부 및 관계기록(작업일지등)
2. 어장관리 및 행사에 관한 회의록
3. 결산서류
4. 각종 영수증 및 증빙서류

②제1항에서 정한 장부 및 서류와 회계장부는 작성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 (총회 의결사항) 총유어장 관리 및 행사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사방법의 결정
2.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 양식의 행사자 선정
3. 행사료의 결정
4. 자원관리를 위한 계의 기본방침
5. 수입금의 처분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약의 시행이전에 본계가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체결한 공동어장 행사계약은 이 규약에서 의거 체결한 것으로 본다.

어업권 행사계약서

일 금 : 원장(W)

단, 어업권 행사에 관한 포항면허 제 호 어업권의 년간 행사료 보증금임.

상기 어업권 행사에 관한 어촌계장을 "갑"이라 칭하고 행사자를 "을"이라 칭하여 하기 조항을 계약함.

제1조 어업권의 행사는 년으로 한다.

제2조 "을"은 행사료를 하기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회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전체 행사료의 1/2이상)

2회분 : 년 월 일까지(1회 납부한 잔액 전액)

제3조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본계약에 의한 행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대치, 전대할 수 없다.

제4조 "을"이 전 각조 1에 위반하거나 취소코저할시 "갑"은 본계약을 해약하며 기납부한 보증금 및 행사료에 대하여 "갑"의 소득이라할지라도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갑"은 "을"의 행사상의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 "을"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을"은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인은 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을"과 연대로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포항시 구 읍·면·동 리어촌계 어촌계장 (인)

“을” 포항시 구 읍·면·동 리어촌계
어촌계장 ①인

보증인 포항시 구 읍·면·동 리어촌계
어촌계장 ①인

행 사 증 표

제		호
	주 소	
	성 명	
	어업의 명칭	
	어구의 명칭 또는 어업(양식) 방법	
	사 용 어 선	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체포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유효 기 간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리 어촌계 계장 인</p>		

<p>주 의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표는 상시 휴대하여야 한다. 2. 본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불허한다. 3. 본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오손하였을시 즉시 신고하여 재교부한다. 4. 수산 동·식물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행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행사료를 납부하지 아니할시 행사를 정지 또는 계약을 취소한다. 6. 어업권 행사에 대하여 어업권자의 지시 및 방침을 불응할시 정지 또는 계약을 취소한다. 7. 본 행사증표를 휴대하였다고 하여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법령 위반으로 야기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어업권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어장관리 회계장부

연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행사료 및 입어료 징수부

연 월 일	적 요	집 행 액	
		당 일	누 계

직영 어장 회계장부

연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자원조성 및 어장관리비 집행장부

연 월 일	적 요	집 행 액	
		당 일	누 계

행사료 및 입어료 산출근거

구 분	행사료 및 입어료	비 고
마을어업 및 협동 양식어업	총회의결에 의거 통생산고에 대하여 어촌계 지분 : 30% 생산자 지분 : 70% 공식 : 최근 3년간 생산고 ÷ 3년 = 년 평균 생산고	

연구보고 97-9 漁村社會의 法律關係

1997년 12월 25일 印刷

1997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朴 松 圭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洋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1-190호

값 6,4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65-7 93360

